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감면 신설,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46호)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21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06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33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80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38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39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455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47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575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24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38호)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78호)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31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27호)
▣ 조승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25호)
▣ 복기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08호)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41호)
▣ 김은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12호)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13호)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63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81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46호)
▣ 임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59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04호)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11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25호)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02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466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55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74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733호)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16호)
▣ 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37호)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62호)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10호)
▣ 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11호)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160호)
▣ 모경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66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 목 차

Ⅰ. 개요

【문진석의원안】

1. 제안 경위 ·····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이병진의원안】

1. 제안 경위 ·····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

【서영교(Ⅰ, 2201306)의원안】

1. 제안 경위 ·····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

【서영교(Ⅱ, 2201333)의원안】

1. 제안 경위 ····· 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

【서영교(Ⅲ, 2201380)의원안】

1. 제안 경위 ·····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

【서영교(Ⅳ, 2201438)의원안】

1. 제안 경위 ····· 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6

【한병도(Ⅰ, 2201439)의원안】

1. 제안 경위 ·····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7

【서영교(Ⅴ, 2201455)의원안】

1. 제안 경위 ····· 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8

【서영교(Ⅵ, 2201547)의원안】

1. 제안 경위 ····· 1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0

【서영교(Ⅶ, 2201575)의원안】

1. 제안 경위 ·····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1

【서영교(Ⅷ, 2201624)의원안】

1. 제안 경위 ·····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2

【서영교(Ⅸ, 2201738)의원안】

1. 제안 경위 ····· 1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3

【서영교(Ⅹ, 2201778)의원안】

1. 제안 경위 ····· 1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4

【조인철의원안】

1. 제안 경위 ····· 1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5

【김선교의원안】

1. 제안 경위 ·····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7

【조승환의원안】

1. 제안 경위 ····· 1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8

【복기왕의원안】

1. 제안 경위 ····· 1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9

【백혜련의원안】

1. 제안 경위 ·····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1

【김은혜의원안】

1. 제안 경위 ····· 2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3

【위성곤의원안】

1. 제안 경위 ····· 2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4

【정성국의원안】

1. 제안 경위 ····· 2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5

【윤준병(Ⅰ, 2203081)의원안】

1. 제안 경위 ·····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6

【윤준병(Ⅱ, 2203146)의원안】

1. 제안 경위 ····· 2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8

【임미애의원안】

1. 제안 경위 ·····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29

【윤준병(Ⅲ, 2203204)의원안】

1. 제안 경위 ·····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1

【박용갑의원안】

1. 제안 경위 ····· 3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4

【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1. 제안 경위 ····· 3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6

【배준영의원안】

1. 제안 경위 ····· 3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39

【이수진의원안】

1. 제안 경위 ····· 4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1

【한병도(Ⅱ, 2203655)의원안】

1. 제안 경위 ····· 4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3

【한병도(Ⅲ, 2203674)의원안】

1. 제안 경위 ····· 4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4

【한병도(Ⅳ, 2203733)의원안】

1. 제안 경위 ····· 4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5

【조경태의원안】

1. 제안 경위 ····· 4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7

【신성범의원안】

1. 제안 경위 ····· 48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48

【인요한의원안】

1. 제안 경위 ····· 50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0

【임광현의원안】

1. 제안 경위 ····· 5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1

【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안】

1. 제안 경위 ····· 5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3

【황정아의원안】

1. 제안 경위 ····· 54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4

【모경종의원안】

1. 제안 경위 ····· 5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55

## Ⅱ. 검토의견

1.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윤준병(Ⅰ)의원안 제6조제4항) ····· 56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Ⅰ)의원안 제10조제2항) ····· 61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국가 등에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의 재산세 면제 연장(윤준병(Ⅰ,2203081)의원안 제13조제3항) ····· 64

4.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윤준병(Ⅰ)의원안 제16조제1항) ····· 69

5.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요건 완화 및 일몰기한 연장 등
(서영교(Ⅳ,2201438), 윤준병(Ⅲ,2203204), 이병진의원안 제17조제1항) ····· 73

6.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연장(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17조의2제1항) ····· 86

7.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서영교(Ⅲ, 2201380), 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Ⅰ,2201439)의원안 제19조제1항·제2항) ···· 90

8.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Ⅰ,2201439)의원안 제22조제8항) ··· 96

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윤준병(Ⅱ)의원안 제22조의2) ····· 102

10.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김선교의원안 제22조의4) ····· 106

11.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서영교(Ⅹ,2201778)의원안 제26조) ····· 110

12. 지방세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안 제29조제4항) ····· 113

13.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일몰기한 연장 등(서영교(Ⅳ,2201438), 윤준병(Ⅲ,2203204), 이병진의원안 제29조제4항) ·· 118

14.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0조제2항제1호) ····· 127

15.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신설 (문진석의원안 제31조제6항) ····· 134

1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경감

(문진석·복기왕의원안 제31조제8항 신설) ····· 141

17.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

(서영교(Ⅰ,2201306), 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3조제2항) ····· 147

1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연장(황정아의원안 제35조) ····· 151

19.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Ⅰ)의원안 제35조의2) ····· 157

20.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Ⅰ,2201306), 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6조) ····· 160

21.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설**(이수진의원안 제36조의6 신설) ····· 164

22.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7조제1항) ····· 168

23.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한병도(Ⅳ,2203733)의원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4항) ···· 181

24.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Ⅳ,2203733)의원안 제38조의2제1호) ····· 189

25.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Ⅳ,2203733)의원안 제40조제1항) ····· 193

26. **기숙사용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등의 감면 연장**(서영교(Ⅸ, 2201738)의원안 제42조제1항, 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제42조제1항·제2항) ····· 197

27. **평생교육단체의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연장**(정성국, 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제43조제3항) ····· 206

28.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연장**(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제44조제1항제2호, 제2항, 제4항, 정성국의원안 제44조제1항제2호, 제2항) ····· 210

29. **산림교육체육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특례 신설**(인요한의원안 제44조의3 신설) ····· 223

3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정성국의원안 제45조제1항, 제2항) ····· 228

31.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연장(서영교(Ⅷ, 2201624), 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제47조의4제3항) ····· 235

3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김선교의원안 제57조의2) ····· 240

33. 해운항만 등의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연장(위성곤의원안 제64조제1항, 윤준병(Ⅰ, 2203081)의원안 제64조제1항·제2항·제3항) ····· 257

3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 연장
(배준영의원안 제65조) ····· 272

35.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서영교(Ⅵ,2201547), 윤준병(Ⅱ,2203146), 조인철, 한병도(Ⅱ,2203655)의원안 제66조제3항·제4항, 박용갑의원안 제66조제4항) ····· 277

36.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박용갑의원안 제66조의3 신설) ····· 288

37.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한병도(Ⅱ, 2203655)의원안 제67조제1항) ····· 294

38.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연장 및 감면 취득세 상한을 300만원으로 증액(모경종의원안 제68조제1항,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 301

3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취득세 감면 연장(윤준병(Ⅱ,2203146)의원안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 308

4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서영교(Ⅱ,2201333), 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제74조의2) ····· 317

41.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Ⅶ,2201575), 윤준병(Ⅳ,2203225), 한병도(Ⅲ,2203674), 조승환의원안 제75조의3제1항) ····· 327

4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조승환의원안 제75조의5) ····· 335

43. 안전조치 등을 이행한 빈집 및 철거명령을 이행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신성범의원안 제75조의3제1항) ··· 340

44. 지방 이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Ⅴ,2201455), 윤준병(Ⅳ,2203225), 임미애, 한병도(Ⅲ,2203674)의원안 제79조제1항·제2항) ····· 347

45. 지방 이전 공장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Ⅴ,2201455), 윤준병(Ⅳ,2203225), 임미애, 한병도(Ⅲ,2203674)의원안 제80조제1항) ····· 353

46.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제83조제1항·제2항) ····· 358

47. 수도권 외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조경태의원안 제83조의2 신설) ····· 366

48. 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정 시 과세표준 특례 (김은혜의원안 제84조의2 신설) ····· 370

49.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제85조의2제1항) ····· 375

50. 개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요건인 자산 상실 비율을 소상공인은 10%로 완화(이수진의원안 제96조제1항) ····· 380

51.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특례에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추가(임광현의원안 제97조의4제3항) ····· 383

52. 수도권 밖에서 지사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임미애의원안 제124조의2 신설) ····· 391

53. 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특례 마련 (백혜련의원안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 신설) ····· 396

## Ⅰ. 개요

### 【문진석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2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공급의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동일수준(취득세 25%, 재산세 50%)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부여하고(안 제31조제6항·제7항),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초기 자금부담을 낮추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1조제8항).

【이병진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병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

다. 회부연월일 : 2024. 7. 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서영교(Ⅰ, 2201306)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2.

다. 회부연월일 : 2024. 7. 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합산소득과 취득가격을 고려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주택 그리고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및 제36조).

【서영교(Ⅱ, 2201333)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3.

다. 회부연월일 : 2024. 7. 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과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등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하여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

【서영교(Ⅲ, 2201380)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4.

다. 회부연월일 : 2024. 7. 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서영교(Ⅳ, 2201438)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5.

다. 회부연월일 : 2024. 7. 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한병도(Ⅰ, 2201439)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5.

다. 회부연월일 : 2024. 7. 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 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위해 취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를 꼽는 응답자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으며,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응하려면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유치원 등의 부동산 취득,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 용도의 부동산 취득 및 사용,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의료기관 설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서영교(Ⅴ, 2201455)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의 분산 및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법인과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 및 제80조).

【서영교(Ⅵ, 2201547)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9.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 확산이 우려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등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을 확산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며, 국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서영교(Ⅶ, 2201575)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0.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서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위기지역의 고용안정을 저해하고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위기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위기지역의 고용안정 및 경제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의3제1항).

【서영교(Ⅷ, 2201624)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 【서영교(Ⅸ, 2201738)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5.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기숙사로 사용되는 학교등의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대학생 주거 여건이 열악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대학생 주거 여건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서영교(X, 2201778)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서영교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6.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조인철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 ’21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 목표를 수립했음. 이를 위해 미래차 3강전략 수립(’22.9월), 미래차 분야 국가전략기술 지정(’23.5월), 미래차법 제정(’23.12월) 등 미래차 전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은 전체 차량 대비 2.3% 수준(누적기준, 약 60만대)에 불과하며, ’24년 상반기 신차판매 기준으로도 8.2%(약 6만7000대)로 본격적인 보급 활성화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더군다나, ’24년 상반기 전기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16.5% 감소, 수소차 판매는 전년동기비 38.7% 감소를 기록 중임.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일몰될 경우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 지연 및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 위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정적 영향 끼칠 우려가 매우 큼.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김선교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선교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18.

다. 회부연월일 : 2024. 7. 19.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기업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이러한 지방세 감면 특례는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설정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및 제57조의2).

## 【조승환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환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29.

다. 회부연월일 : 2024. 7. 3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복기왕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복기왕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7. 3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분양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2~30년에 걸쳐 소유권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정책임.

청년·신혼부부 등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주택의 소유권지분 상당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지분만큼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이는 20년 이상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운영해야 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큰 납세 부담으로 느껴져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사다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정책이니만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공을 위해 취득한 공공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25%를 감면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해주려는 것임. 또 현재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전국 다른 시도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신설).

【백혜련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7.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7. 31.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말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 102.5조원 중 정상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인 “정리보류” 체납액은 86.9조에 달하며 약 84.8%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하여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함.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길이 없음. 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동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

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함.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특례를 신설하고, 그 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은혜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은혜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주택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등의 사유로 철거·멸실된 주택과 달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러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에 비하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형폐기물이나 투기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위성곤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3.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정성국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14.

다. 회부연월일 : 2024. 8. 1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윤준병(Ⅰ, 2203081)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2.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감면 정책 등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농업인과 귀농인 등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 그리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림·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1)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 조성을 위한 임야,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6조제4항).

2) 농어업인이 영농·영림·가축사육·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조제2항).

3)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3조제3항).

4) 주택개량 대상자가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제1항).

5)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5조의2).

6)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윤준병(Ⅱ, 2203146)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3.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함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모두 202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하지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누적등록률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자동차 대비 9.2%에 불과한 수준이고, 수소자동차의 2023년 등록대수는 전년 대비 54.64% 감소한 4,635대에 그침. 이런 상황에서 관련 세제 혜택이 일몰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이 지연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미래차로의 산업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등).

【임미애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임미애의원 등 17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3.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의 본사 또는 공장을 매각 또는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본점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기업도 기여하는 바가 있으므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1)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2)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의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7년간 법인지방소득세 100%를, 그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함(안 제124조의2 신설).

【윤준병(Ⅲ, 2203204)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한센인, 어린이집 및 유지원과 사회복지법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회적기업과 국가유공자, 무주택자 및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의료와 보훈, 주택공급 등의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사회적 약자 및 의료·보훈·주택공급 등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1)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2) 한센인이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항 및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의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3)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

4)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 및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22조제8항).

5)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6)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29조제4호).

7)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0조제2항제1호).

8)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3조제2항).

9)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6조).

10)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7조제1항).

11)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38조의2제1호).

12)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0조제1항).

【박용갑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박용갑의원 등 15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6.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7.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친환경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촉진과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액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될 예정임.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지속적인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자동차의 가격이 여전히 일반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지속적인 폭염과 기상이변이 점차 빈번해 지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점차 시급해 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으로 탄소중립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농어

촌, 용달・택배・개인화물 등 화물운수사업자(이하 ‘소상공인 등’이라고 한다.)등은 필수 생계수단인 화물차가 노후화되어도 생계 부담으로 차량을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작 소상공인 등은 여전히 가격부담으로 인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구입 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상공인 등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생계를 위해 화물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차량 교체 부담을 줄이고 경유자동차 퇴출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서민경제와 내수를 활성화하려는 것 임(안 제66조의3 신설 등).

【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4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27.

다. 회부연월일 : 2024. 8. 28.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교 등의 기숙사와 평생교육시설, 법인과 공장의 지방이전, 위기 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두고 있음.

해당 규정들은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1) 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1항).

2) 학교 등이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2조제2항).

3) 평생교육단체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3조제3항).

4)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5)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44조제4항).

6)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 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47조의4제3항).

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 재생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

득세와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4조의2 제1항 및 제3항).

8) 위기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5조의3제1항).

9)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79조제1항 및 제2항).

10)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제1항).

11)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입점 상인 등이 사업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안 제83조제1항 및 제2항).

12) 지방공기업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각각 4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2제1항).

【배준영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배준영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재산세 감경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항공운송사업은 국방·외교·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감면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이수진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8.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신종 감염병 확산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는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설 복구와 경영 안정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는 기존의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된 경우 대체취득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시설과 장비 등의 피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현행 제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피해 상황에 기초하여 당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을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도 감면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피해, 감염병 대응조치로 인한 영

업손실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정부의 기후위기 및 감염병 대응체계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으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 자산을 가진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의 사업자보다 낮은 비율로 자산을 상실했더라도 그로 인한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자산상실비율 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소상공인이 자산상실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의6 신설 등).

## 【한병도(Ⅱ, 2203655)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4.

다. 회부연월일 : 2024. 9. 5.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음. 또한 경형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및 승합·화물자동차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소형일반버스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최근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도모하는 한편,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66조 등)

## 【한병도(Ⅲ, 2203674)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5.

다. 회부연월일 : 2024. 9. 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아울러 대도시 내 법인 및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법인등기 및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을 개선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비수도권 대도시는 1.3%p 상승하는 반면 수도권은 1.1%p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국내 30대 기업의 수도권 비중이 95.5%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9조 및 제80조).

## 【한병도(Ⅳ, 2203733)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5.

다. 회부연월일 : 2024. 9. 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가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 격차가 2015년 0.31명에서 2021년 0.45명으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족한 의료 접근성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중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 법인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법인·재단법인·지방의료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한국건강관리협회·대한결핵협회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하여 의료기관 설립의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등).

【조경태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9.

다. 회부연월일 : 2024. 9. 1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문제에 더해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음. 지방도시 소멸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절대적 인구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정부에서는 지방도시 살리기의 일환으로 비수도권 지역 등에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하여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비수도권 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신성범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신성범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11.

다. 회부연월일 : 2024. 9. 12.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하며 0.2~0.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경우 철거 이후에도 별도합산과세 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이 최근 3년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 정비사업 시행 대상이 아닌 빈집의 경우에는 여전히 안전조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유인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

치, 개축, 수리 및 철거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으로써 빈집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신설).

【인요한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인요한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19.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0.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법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조세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문이 부재한 상황임.

그러나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된 상황 속에서 기한 내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기후위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는 목표를 가진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를 203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임광현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2022년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지

급한 교육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 재학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현재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다른 교육기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4제3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광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용태, 천하람, 민병덕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김용태, 천하람, 민병덕의원 등 27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0.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3.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등록면허세등의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그 설립단체로 추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관한 현행 규정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제1호가목).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황정아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3.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4.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모경종의원안】

## 1. 제안 경위

가. 발 의 자 : 모경종의원 등 10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25.

다. 회부연월일 : 2024. 9. 26.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한편,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세액의 100분의 15를 부담하게 하는 최소납부세제를 두고 있음.

그런데,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매매 거래의 상품으로서 거래를 위한 일시적·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불과하며, 사용이나 소유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 판매를 위한 행위, 즉 실질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모든 취득세 감면 규정은 감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1회성 취득에 해당하나,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 반복적 취득의 상품으로 자동차 본연의 운행 목적이 아님에도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최소납부세제 적용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 Ⅲ. 검토의견

## 1.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윤준병(Ⅰ, 2203081)의원안 제6조제4항]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3]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현행법 제6조제4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 현 행 | 윤준병(Ⅰ)의원안 |
|---|---|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1]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 | ④ ---------- |

| | |
|---|---|
| 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br>-----2029년 12월 31일 -------<br>------. ----------<br>----------<br>----------<br>----------<br>----------<br>----------. |
| 1. ~ 4. (생 략)[2] | 1. ~ 4.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생 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안 제6조제4항은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2억 7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2,119 | 1,972 | 2,137 | 2,002 | 1,478 | 1,942 |
| | 감면 금액 | 2,646,464 | 2,600,452 | 2,942,254 | 2,995,085 | 2,203,304 | 2,677,512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귀농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2,570명에서 2021년 14,461명으로 증가한 이후 2022년 12,660명, 2023년 10,54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귀농가구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세)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귀농가구원 수 | 17,447 | 19,776 | 16,906 | 13,680 |
| 귀농인 수 | 12,570 | 14,461 | 12,660 | 10,540 |
| 동반가구원 수 | 4,877 | 5,315 | 4,246 | 3,140 |
| 귀농가구 수 | 12,489 | 14,347 | 12,411 | 10,307 |
| 평균 가구원 수 | 1.40 | 1.38 | 1.36 | 1.33 |
| 귀농인 평균연령 | 55.3 | 55.8 | 56.4 | 56.2 |

자료: 통계청, 2021년·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보도자료

구체적으로 2023년 귀농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귀농인은 10,540명, 동반가구원은 3,140명이고, 귀농가구는 10,307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33명임. 귀농가구주는 남자가 66.4%, 평균연령은 56.3세임. 시도별로는 경북이 1,911가구로 가장 많았고, 전남 1,781가구, 충남(1,299가구), 경남(1,193가구) 등의 순임.

[2020년～2023년 시도별 귀농가구]

(단위 : 가구, %, %p)

| 구분 | 전국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2020년 | 12,489 | 35 | 58 | 121 | 77 | 71 | 1,117 | 933 | 930 | 1,492 | 1,503 | 2,347 | 2,234 | 1,341 | 230 |
| 2021년 | 14,347 | 26 | 71 | 170 | 108 | 90 | 1,281 | 1,015 | 1,068 | 1,800 | 1,507 | 2,564 | 2,710 | 1,689 | 248 |
| 2022년 | 12,411 | 23 | 62 | 114 | 73 | 78 | 1,172 | 929 | 942 | 1,562 | 1,216 | 1,966 | 2,530 | 1,502 | 242 |
| 2023년 | 10,307 | 35 | 158 | 87 | 72 | 47 | 1,000 | 698 | 714 | 1,299 | 1,076 | 1,781 | 1,911 | 1,193 | 236 |

자료: 통계청, 2021년·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 보도자료

통계청의 2023년 귀농어·귀촌인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는 6,542가구이고, 평균재배면적은 0.33ha(3,268$m^2$)이며,

작물재배면적 규모가 0.5ha(5,000m$^2$) 미만 가구가 85.2%를 차지했고, 작물별로는 채소를 재배하는 가구 비중이 43.5%, 과수 31.1%, 논벼 30.7%, 특용작물 27% 순임.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가구 6,542가구 중 자기 소유의 농지에서만 작물을 재배하는 가구는 4,255가구임(65%).

그리고, 개정안 제6조제4항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의 내역사업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39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을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하의 세대주는 동 사업에 신청하여 농지 등 영농기반 구입을 위한 융자를 받을 수 있음.

개정안 제6조제4항을 통한 일몰기한 연장 심사 과정에서는 기존의 지방세 특례 지급 현황, 정부의 융자 지원 사업 및 귀농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귀농 장려를 통한 농가인구 확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144억원(연평균 2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4].

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2.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Ⅰ,2203081)의원안 제10조제2항]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10조제2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현 행 | 윤준병(Ⅰ)의원안 |
|---|---|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생 략)[5]<br>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6]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 2029년 12월 31일----------.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여건 악화와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 등을 감안할 때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통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7]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감면액은 연평균 21억 8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주민세 | 감면 건수 | 3,590 | 4,625 | 5,005 | 5,923 | 3,341 | 4,497 |
| | 감면 금액 | 1,624,457 | 1,945,755 | 2,351,440 | 2,841,278 | 2,160,388 | 2,184,664 |

자료: 행정안전부

---

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 **「지방세법」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7) 참고로, 주민세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부과되므로 소규모 영세 농어업인은 면세 사업장임.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여건 악화 등으로 농어업인의 영농사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나, 올해(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8]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농어업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2025~2029년간 총 323.5억원(연평균 6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9]

8)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8~9월), 국회 논의(10월~12월)
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국가 등에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의 재산세 면제 연장[윤준병(Ⅰ,2203081)의원안 제13조제3항)]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 현 행 | 윤준병(Ⅰ)의원안 |
|---|---|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br>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생략)<br>1. ~ 3. (생 략)<br>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

| | |
|---|---|
|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br>4의2. (생 략)<br>5. (생 략)<br>③ 제2항제4호[10]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2029년----------.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안의 감면대상인 생활환경정비사업[11]의 주요 사업에는 산업(농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단서 생략)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공)단지 조성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이 포함됨. 산업단지 조성산업은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및 시설용지 등을 조성 후 분양하는 사업이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의 설치 및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및 분양·임대하는 사업임[12].

개정안은 현행법 제13조제3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13]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감면 건수는 96건, 연평균 감면액은 6억원 수준임.

---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2) 출처: 한국농어촌공사 자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요)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재산세 | 감면 건수 | 86 | 92 | 98 | 92 | 113 | 96.2 |
| | 감면 금액 | 297,833 | 315,668 | 408,920 | 936,328 | 1,044,630 | 600,675 |

자료: 행정안전부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자구 측면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단지조성사업지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동 개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서만 사용되고 있으며[14], 그 의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15]는 점을 고려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제3호[16]에서 인용

1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단지조성사업지구" 검색 결과

15) 조세심판원의 조심2018지2006(20190122) 결정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의 전제가 되는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주거단지·산업단지·유통단지 및 복합단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지조성사업지구'에서의 단지 또한 위 개발사업과 관련된 단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개발사업의 목적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주거단지(공동주택 및 행정타운) 및 복합단지(공동주택 및 상업시설)를 조성하는데 있고 이 건 토지는 그 사업부지 중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https://www.olta.re.kr/explainInfo/judgeDecisionDetail.do?num=60084482

16)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생략)

1. ~ 2. (생 략)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

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등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과 ‘단지조성사업지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 단지 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기간산업인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될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5억원(연평균 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7].

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1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4.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Ⅰ, 2203081)의원안 제16조제1항)]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18]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280만원 한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16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 현 행 | 윤준병(Ⅰ)의원안 |
|---|---|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br>----------<br>---------- |

18)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개량·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
|---|---|
| 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2029년 12월 31일 ---. |

| | |
|---|---|
|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br>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 1. ~ 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19] | ②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 및 빈집 증가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개량에 따른 감면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 주택개량을 통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농·어촌 주택의 신축·증축·대수선 등을 촉진하여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59억원임.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4,888 | 4,038 | 3,339 | 2,724 | 2,190 | 3,436 |
| | 감면 금액 | 7,537,267 | 6,758,015 | 5,850,757 | 5,105,860 | 4,290,972 | 5,908,574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촌주택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의 빈집 해소와 노후주택 개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취득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3억원(연평균 3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0)]

2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5.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 및 감면요건 완화

[서영교(Ⅳ,2201438), 윤준병(Ⅲ,2203204), 이병진의원안 제17조제1항]

### (1)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 등

개정안은 대통령령[21]으로 정하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고, 윤준병(Ⅲ)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이병진의원안은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 현 행 | 이병진의원안 |
|---|---|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은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22) 2009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 | |
|---|---|
| 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br>----------<br>----------<br>----------<br>----------<br>----------<br>----------면제한다.<br>**※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17①)**<br>**- 서영교(Ⅳ)의원안 : 3년(~2027년)**<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br>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br>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br>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2](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1. ----------<br>가. -------3천시시---------<br>나.·다. (현행과 같음) |
|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2. ~ 4. (현행과 같음) |

| | |
|---|---|
|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br>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

**부 칙**

[서영교(Ⅳ)의원안, 윤준병(Ⅲ)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병진의원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임[23].

현행법에서는 취득세·자동차세의 감면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동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필요성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감면 대상의 자동차 종류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4]에서 규정한 차량으로 한정하

---

갤로퍼밴, 코란도밴, 다마스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 16종이 있음.
* 출처: 경북도민일보 2009년 12월 1일자 기사,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 변경된 차량” https://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092)

23)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238면, 삼일인포마인, 2022

24) ① 제1호가목: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② 제1호나목: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

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25]은 장애인용 자동차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이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 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명의로 공동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용 자동차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서영교(Ⅳ), 윤준병(Ⅲ), 이병진의원안을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자동차세와 취득세 납부 부담 없이 차량을 보유·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26]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건수는 연평균 35,717

---

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2호: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제3호: 적재적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⑤ 제4호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등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26)「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건이고, 면제 금액은 연평균 564억이며, 자동차세 면제 건수는 연평균 71만건이고, 면제 금액은 연평균 900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43,288 | 39,898 | 34,595 | 29,518 | 31,287 | 35,717 |
| | 감면 금액 | 60,458,435 | 60,394,376 | 54,399,095 | 50,248,007 | 56,650,673 | 56,430,117 |
| 자동차세 | 감면 건수 | 777,240 | 749,908 | 708,228 | 669,326 | 647,813 | 710,503 |
| | 감면 금액 | 100,858,833 | 96,078,961 | 90,079,278 | 83,772,751 | 79,049,028 | 89,967,770 |

자료: 행정안전부

통계청의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 수 자료[27]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978,634명이고, 2023년에 신규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9,720명[28]임.

[장애등급별 등록 장애인수]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명) | 1,633,515 | 1,648,061 | 1,659,887 | 1,666,086 | 1,663,262 | 1,654,162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명) | 985,403 | 984,965 | 984,813 | 982,338 | 978,634 | 983,231 |

27) 통계청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4

28)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 건수는 신규 등록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수는 취득세 면제 건수보다 높은데 이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는 자동차를 최초 취득시의 감면(최초 감면) 뿐만 아니라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신차를 다시 취득(대체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 | | | | |
|---|---|---|---|---|---|---|
| 신규등록 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명) | 68,046 | 56,472 | 58,642 | 53,249 | 56,567 | 58,595 |
| 신규등록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명) | 29,653 | 26,825 | 28,315 | 26,508 | 29,720 | 28,204 |

자료: 통계청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일몰기간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감면은 정책 환경 변화,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년 단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대전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이병진의원안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안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타 감면과의 형평성 및 시재정감소 등 측면에서 특례일몰기한의 경우 3년의 기간을 설정하여 재설계시마다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판단하여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Ⅳ)의원안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935억원(연평균 1,3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9],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2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15.)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6,255억원(연평균 1,2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0].

### (2)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기준 배기량을 2,000시시에서 3,000시시로 상향(이병진의원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이병진의원안은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승용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3천시시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은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 대상으로 배기량이 2,000cc 이하인 승용차를 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2,000시시 이상인 경우 대형자동차로 구분되고, 다른 감면과 달리 그 동거가족까지 감면이 확대 적용되고 있어 현재도 동거가족이 사실상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에 직접 공여하는지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31]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요건을 배기량 3,000시시로 상향하면, 장애인용 자동차로 승용자동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3000시시 이하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철장구의 운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3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31)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243면, 삼일인포마인, 2022

다만,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감면되는 금액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 등의 영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대형 승용차로 분류되는 2,000시시 이상의 차량을 보철·생업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현행 감면 규모를 고려할 때 감면 요건을 완화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임[32].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 이하에서 30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849억원(연평균 1,7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3].

32) 또한, 전라남도 순천시는 고가의 고급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자산가의 감면 혜택 확대하는 것은 약자의 이동권 보장·생업 활동 지원 목적의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정부의 환경 보호 정책에 위배되며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 우려된다는 의견임. 또한, 현재 자동차세 과세 체계 개편(배기량→차량가격 등)이 논의 중이므로 추후에 과세 체계와 함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3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 참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2)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4)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8)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9)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3)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5. 언어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

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12. 간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 6.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연장[윤준병(Ⅲ, 2203204)의원안 제17조의2제1항)]

개정안은 한센인 농원 내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 현 행 | 윤준병(Ⅲ)의원안 |
|---|---|
|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br>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br>2. 축사용 부동산<br>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 |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br>----------<br>----------<br>----------<br>----------<br>----------<br>----------<br>----------<br>----------<br>----------<br>----------<br>----------2029년----------.<br>1. ~ 3. (현행과 같음) |

| | |
|---|---|
| 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br>----------<br>----------<br>----------<br>----------<br>----------<br>----------<br>----------2029년----------<br>--------. |
| 부 칙<br>[윤준병(Ⅲ)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한병도(Ⅰ)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 및 [별표]에서 헌인마을, 구평마을, 부평마을 등 86개의 장소를 정하고 있음.

한국한센복지협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81개 정착마을에 한센사업대상자 2,02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한센사업대상자의 7,644명[34]의 26.4% 수준임.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사업대상자의 평

34) 한센사업대상자(7,644명)는 한센병환자(요치료자) 3,946명과 한센서비스대상자(치료종결자) 3,698로 구성됨

균연령은 81.4세이고, 80세 이상이 55.7%를 차지하고 있음[35].

**[한센사업대상자 거주 형태별 현황]**

(단위: 세, 명)

| 구분 | 합계 | 재가 (시·군·구 258개소) | 정착마을 (81개소) | 생활시설 (5개소) | 입원시설 (국립소록도병원) |
|---|---|---|---|---|---|
| 사업대상자 | 7,644 | 5,040 | 2,021 | 213 | 370 |
| 평균 연령 | 80.6 | 79.9 | 81.4 | 81.8 | 79.5 |
| 80세이상 백분비 | 3,913 (51.2%) | 2,474 (49.1%) | 1,125 (55.7%) | 145 (68.1%) | 169 (45.7%) |

자료: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사업 현황 및 주요지표”, 2024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제1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한센인이 한센인정착농원에서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해 집단으로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거주와 관련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억 3천만원(19건)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10억 4천만원이며,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액은 956만원임.

35) 한국한센복지협회, “한센사업 현황 및 주요지표”, 20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27 | 22 | 19 | 22 | 6 | 19 |
| | 감면 금액 | 546,968 | 54,902 | 54,404 | 19,474 | 6,516 | 136,453 |
| 재산세 | 감면 건수 | 4,249 | 4,340 | 4,183 | 3,928 | 3,638 | 4,068 |
| | 감면 금액 | 930,276 | 1,077,274 | 1,080,227 | 1,140,002 | 973,971 | 1,040,350 |
| 지역자원 시설세 | 감면 건수 | 2,284 | 2,231 | 2,105 | 1,987 | 1,908 | 2,103 |
| | 감면 금액 | 9,980 | 9,933 | 10,071 | 9,434 | 8,406 | 9,565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방세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한센인 정착농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7.5억원(연평균 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6].

3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7.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서영교(Ⅲ,2201380), 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Ⅰ,2201439)의원안 제19조제1항·제2항]

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위탁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 및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Ⅲ), 한병도(Ⅰ)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 현 행 | 서영교(Ⅲ), 한병도(Ⅰ)의원안 |
|---|---|
|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 2027년 12월 31일----------<br>----------<br>----------<br>----------<br>----------<br>----------<br>---------- |

| | |
|---|---|
| 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 2027년 12월 31일----------.<br>**※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19①, ②)**<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2027년 12월 31일----------. |
|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1.·2. (현행과 같음) |
|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 |
| **부 칙**<br>[서영교(Ⅲ)의원안, 윤준병(Ⅲ)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한병도(Ⅰ)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최근 출생률 저하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수, 유치원 및 원아수가 감소하고 있음. 어린이집은 2020년 35,352개에서 2023년까지 28,954개로 6,398개(△18.2%)감소했고, 보육아동은 2020년 1,244,396명에서 2023년 1,011,813명으로 232,583명(△18.7%) 감소함.

[어린이집 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2020년~2023년)]

| 구분 |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어린이집 수 | 합계 | 35,352개 | 33,246개 | 30,923개 | 28,954개 |
| | 전년대비 증감률 | △5.4% | △6.0% | △7.5% | △6.4% |
| | 국공립 | 4,598개 | 5,437개 | 5,801개 | 6,187개 |
| | 사회복지법인 | 1,316개 | 1,285개 | 1,254개 | 1,206개 |
| | 법인단체 등 | 671개 | 640개 | 610개 | 551개 |
| | 민간 | 11,510개 | 10,603개 | 9,726개 | 8,886개 |
| | 가정 | 15,529개 | 13,891개 | 12,109개 | 10,692개 |
| | 협동 | 152개 | 142개 | 132개 | 124개 |
| | 직장 | 1,216개 | 1,248개 | 1,291개 | 1,308개 |
| 보육아동 수 | 합계 | 1,244,396명 | 1,184,716명 | 1,095,450명 | 1,011,813명 |
| | 전년대비 증감률 | △8.8% | △4.8 | △8.1 | △7.6 |

자료: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37]

유치원은 2019년 8,837개에서 2023년 8,441개로 396개(△4.5%)감소했고, 원아는 2019년 633,913명에서 2023년 521,794명으로 112,119명(△17.7%) 감소함.

37) 출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

[유치원 및 원아 현황(2020년~2023년)]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유치원 수 | 합계 | 8,837 | 8,705 | 8,660 | 8,562 | 8,441 |
| | 전년대비 증감률 | △2.0% | △1.5% | △0.5% | △1.1% | △6.2% |
| | 국립 | 3개 | 3개 | 3개 | 3개 | 3개 |
| | 공립 | 4,856개 | 4,973개 | 5,058개 | 5,113개 | 5,130개 |
| | 사립 | 3,978개 | 3,729개 | 3,599개 | 3,446개 | 3,308개 |
| 원아 수 | 합계 | 633,913 | 612,538 | 582,572 | 552,812 | 521,794 |
| | 전년대비 증감률 | △6.2% | △3.4% | △4.9% | △5.1% | △5.6% |

자료: 통계청, 유치원 개황[38)]

2023년까지는 어린이집의 감소비율이 유치원의 감소비율보다 높은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에 따른 보육시설 감소 추세에 따라 부모가 정작 아이를 맡길 때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4년 총 540개소를 확충할 예정임[39)].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경감의 일몰기간 연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38) 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4&tblId=DT_1963003_001&checkFlag=N

39) 보건복지부 2024년 1월 13일 보도참고자료,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필요한 곳에 어린이집을 늘려나갑니다"-적재적소에 540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공공보육 접근성 확대-- 인센티브 도입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인프라 유지·확충 도모 -

를 통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인프라 유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향후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85억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315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668 | 628 | 538 | 297 | 225 | 471 |
| | 감면 금액 | 9,967,005 | 10,986,031 | 9,502,783 | 6,974,448 | 5,301,401 | 8,546,334 |
| 재산세 | 감면 건수 | 45,648 | 42,881 | 40,563 | 37,608 | 34,613 | 40,263 |
| | 감면 금액 | 31,158,412 | 31,040,288 | 32,444,802 | 33,770,173 | 29,049,309 | 31,492,597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자녀 양육 가정의 보육부담 경감과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 및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Ⅲ)의원안 및 한병도(Ⅰ)의원안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285억원(연평균 42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40],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취득 및 소유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206억원(연평균 441.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41].

40) 서영교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9.), 한병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6.)
4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8.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경영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Ⅰ,2201439)의원안 제22조제8항]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40) 경감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60)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한병도(Ⅰ)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윤준병(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 현 행 | 한병도(Ⅰ)의원안 |
|---|---|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생 략)<br>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br>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br>⑧ ----------<br>----------<br>----------<br>----------<br>----------<br>----------.<br>1. ----------<br>----------<br>2027년----------<br>----------<br>----------<br>----------<br>---------- |

| | |
|---|---|
|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한다.<br>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 ----------.<br>2. ----------<br>----------<br>2027년----------<br>----------<br>----------.<br>**※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22⑧1.2.)**<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부 칙**<br>[윤준병(Ⅲ)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한병도(Ⅰ)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023년 말 기준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은 68개 기관이 있고, 약 1만 1천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연간 입원환자는 9만 6천명, 외래환자는 73만 6천명이 진료를 받고 있음.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

(단위: 개, 명)

| 요양기관 종별 | 기관수 | 허가 병상수 | 근무 인원 | 환자 현황(2023년) | |
|---|---|---|---|---|---|
| | | | | 입원환자 | 외래환자 |
| 상급종합병원 | 1 | 1,973 | 7,571 | 85,815 | 614,460 |
| 종합병원 | 1 | 200 | 174 | 2,037 | 26,336 |
| 요양병원 | 12 | 1,992 | 731 | 3,093 | 7,357 |
| 정신병원 | 10 | 2,250 | 588 | 848 | 2,611 |
| 병원 | 12 | 1,274 | 1,181 | 4,580 | 46,670 |
| 의원 | 28 | 49 | 269 | 61 | 32,977 |
| 치과의원 | 1 | - | 9 | - | 1,703 |
| 한의원 | 3 | 26 | 15 | 20 | 3,683 |
| 합계 | 68 | 7,764 | 10,538 | 96,454 | 735,797 |

자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 보건을 증진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당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8,589만원이고, 재산세 감면액는 연평균 4억 2,232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8 | 10 | 8 | 6 | 12 | 9 |
| | 감면 금액 | 73,823 | 210,103 | 89,288 | 19,653 | 36,565 | 85,886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74 | 189 | 38 | 80 | 91 | 116 |
| | 감면 금액 | 850,981 | 916,050 | 42,725 | 94,951 | 206,895 | 422,320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4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율을 10%포인트씩 상향하여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현재 기준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 중에는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43]된 의료기관은 없음.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는 국립대학병원, 보훈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은 취득세 감면율이 50%이고,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

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감염병병원)** ① 국가는 감염병의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인력 및 연구능력을 갖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국가는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권역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상(음압병상 및 격리병상을 포함한다)을 갖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인구 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는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43) 참고로, 정부는 5대 권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1개소씩 지정하고 있음

| 권역 | 호남권 | 충청권 | 경남권 | 경북권 | 수도권 |
|---|---|---|---|---|---|
| **의료기관명** | 조선대병원 | 순천향대천안병원 | 양산부산대병원 | 칠곡경북대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
| **지정일자** | 2017. 8. 21. | 2020. 7. 31. | 2020. 7. 31. | 2021. 7. 26. | 2022. 4. 13. |

자료: 황민화, 김환희, 박지영(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 의료대응지원과), “2023년 권역완결형 의료대응체계 구축 시범사업 소개), 정책보고Public Health Weekly Report Vol17, No 34, 2024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취득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15%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그리고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산세 감면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재산세 감면율이 75%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세 감면율이 25% 등으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재산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25%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료 등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병도(Ⅰ)의원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3년간 총 4.2억원(연평균 1.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44],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경영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총 5년간 총 7.0억원(연평균 1.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45].

4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6.)
4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9.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Ⅲ, 2203204)의원안 제22조의2)]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22조의2).

| 현 행 | 윤준병(Ⅲ)의원안 |
|---|---|
|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 |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br>----------<br>----------<br>----------<br>----------<br>----------<br>----------<br>----------2029년 12월 31일까지----------<br>----------<br>----------<br>----------<br>----------<br>----------<br>----------<br>---------- |

| | |
|---|---|
|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br>----------<br>----------<br>----------<br>----------<br>----------<br>----------<br>----------<br>----------<br>----------<br>-----. |
| 1. ~ 4. (생 략)[46] | 1. ~ 4. (현행과 같음) |
|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②----------<br>----------<br>----2029년 12월 31일까지 ----<br>----------<br>----------<br>----------<br>----------. |
| 1. ~ 3. (생 략)[47] | 1. ~ 3. (현행과 같음)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4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현행법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최근 출생아 수의 지속적인 감소 및 이에 따른 인구절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응 지원 및 다자녀 양육자의 양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

| 항목 | 2014 | 2015 | 2016 | 2017 | 2020 | 2021 | 2022 | 2023 |
|---|---|---|---|---|---|---|---|---|
| 출생아수(명) | 435,435 | 438,420 | 406,243 | 357,771 | 272,337 | 260,562 | 249,186 | 230,000 |
| 자연증가건수(명) | 167,743 | 162,525 | 125,416 | 72,237 | -32,611 | -57,118 | -123,753 | -122,800 |
| 조출생률[48](천명당) | 8.6 | 8.6 | 7.9 | 7.0 | 5.3 | 5.1 | 4.9 | 4.5 |
| 자연증가율(천명당) | 3.3 | 3.2 | 2.5 | 1.4 | -0.6 | -1.1 | -2.4 | -2.4 |
| 합계출산율[49](명) | 1.205 | 1.239 | 1.172 | 1.052 | 0.837 | 0.808 | 0.778 | 0.720 |
| 출생성비(명) | 105.3 | 105.3 | 105.0 | 106.3 | 104.8 | 105.1 | 104.7 | 105.1 |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48)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CBR):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49)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며, 출산력 수준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558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 | 감면 건수 | 39,811 | 39,333 | 34,928 | 27,747 | 28,891 | 34,142 |
| | 감면 금액 | 57,584,244 | 62,954,779 | 59,732,968 | 48,074,173 | 50,826,965 | 55,834,626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248억원(연평균 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50)]

5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10.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김선교의원안 제22조의4)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 50 경감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 현 행 | 김선교의원안 |
|---|---|
|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br>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br>가. ~ 다. (생 략)[51]<br>2. 삭제 <2021. 12. 28.> |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br>1. ~ 3. (현행과 같음) |

| | |
|---|---|
|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및 개정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대상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받은 기업임[52].

사회적기업은 2022년 4월 기준으로 3,266개임[53]. 사회적 목적 실천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업이 237개, 일자리제공형 기업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생 략)
1. (생 략)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5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고령자/장애인/사회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명단 https://www.moel.go.kr/info/publict/publictDataView.do?bbs_seq=20220600039

이 2,173개, 지역사회 공헌형 기업이 264개, 기타(창의·혁신)형 기업이 328개, 혼합형이 204개임.

**[유형별 사회적 기업 현황]**

|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 |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공헌 | 기타 (창의·혁신) | 혼합 | 합계 |
|---|---|---|---|---|---|---|
| 개수(개) | 237 | 2,173 | 264 | 328 | 204 | 3,266 |

자료: 고용노동부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적극적,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운영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5년 동안 취득세는 연평균 16억원, 재산세는 연평균 9천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11 | 129 | 145 | 91 | 127 | 121 |
| | 감면 금액 | 1,391,905 | 1,309,435 | 1,923,879 | 1,420,608 | 2,010,257 | 1,611,217 |
| 재산세 | 감면 건수 | 439 | 547 | 668 | 717 | 775 | 629 |
| | 감면 금액 | 58,045 | 78,493 | 94,224 | 105,767 | 107,153 | 88,736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김선교의원안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6,854.0억원(연평균 2,284.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54].

5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6.)

## 11.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X,2201778)의원안 제26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 행 | 서영교(X)의원안 |
|---|---|
|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br>----------<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55]에 따른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

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임.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모여서 만든 단체로서 사용자에 교섭요구를 하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56].

개정안을 통해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함으로써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금액은 연평균 1억 3천만원이고, 재산세 감면금액은 연평균 7억 4,900만원임.

---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6)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 | 2 | 3 | 2 | 1 | 2 |
| | 감면 금액 | 24,528 | 31,836 | 287,627 | 231,888 | 64,501 | 128,076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23 | 125 | 120 | 125 | 138 | 126 |
| | 감면 금액 | 145,507 | 138,122 | 145,376 | 161,447 | 158,555 | 149,801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2022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수는 6,005개이고, 조합원 수는 2,722,484명이며,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노동조합조직률=전체 조합원수 2,722,484명÷조직대상 근로자수 20,707천명×100)임[57].

행정안전부는 근로여건 및 근로자의 지위 향상, 노사간 관계조정 및 분쟁 예방·해결 등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취지에 공감하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X)의원안에 따라 노동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2.1억원(연평균 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58].

57) 고용노동부, “2022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7면·8면, 2023. 12.

## 12. 지방세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추가(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안 제29조제2항)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12) 발의된 것을 고려하여, 지방세(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 행 | 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안 |
|---|---|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대상 단체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가.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5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16.)

| | |
|---|---|
| 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 ---------- ---------- ------ |
|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나. ~ 마. (현행과 같음) |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
| 2. 면제 내용 | 2. (현행과 같음) |
|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
|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

| | |
|---|---|
|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br>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전몰군경 외에 순직군경을 포함하고 있음[59].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인 반면,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59)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생 략)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 참고로, 연혁적 측면에서 (구)「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법률 제1389호)이 1963. 8. 7. 제정되었고, 같은 해 8. 12.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설립이 승인되었음.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성격에 차이가 있음[6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12)은 국가유공자등단체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유공자인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는 개념 정의상 국가유공자등 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측면이 있으므로 설립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단체와 동일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인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가 설립되는 경

6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례를 신속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중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12)의 심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은 ‘순직군경’ 유족을 ‘전몰군경’ 유족 단체와 구분하여 별도의 단체로 설립하고 예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서, 현재도 ‘전몰군경유족회’에 ‘순직군경 유족’이 포함되어 이미 지방세 감면 중이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순직군경 유족 단체 별도 설립 시 지방세의 지원이 타당하지만, 함께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112, 2024.9.20.)의 의결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13.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일몰기한 연장 등(서영교(Ⅳ,2201438), 윤준병(Ⅲ,2203204), 이병진의원안 제29조제4항)

### (1)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 등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Ⅳ)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을 연장하고, 윤준병(Ⅲ)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을 연장하며, 이병진의원안은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임.

| 현 행 | 이병진의원안 |
|---|---|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61]으로 정하는 사람(이 | ④ ---------- |

| | |
|---|---|
| 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br>----------<br>----------<br>----------<br>----------<br>----------<br>----------<br>----------<br>----------<br>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br>----------<br>----------.<br>**※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29④)**<br>**- 서영교(Ⅳ)의원안 : 3년(~2027년)**<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 1. ---------- |

| | |
|---|---|
| 당하는 승용자동차<br>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br>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br>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br>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br>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br>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br>가. -------3천시시---------<br>---------<br>나.·다. (현행과 같음)<br>2. ~ 4.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서영교(Ⅳ)의원안, 윤준병(Ⅲ)의원안]<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br>[이병진의원안]<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br>제2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 등에는 ① 국가유공자[62], ② 보훈대상자[63], ③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64], ④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함.

국가보훈부 훈령인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및 국가보훈부의 2024년 9월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자료[65]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의 적용대상은 약 13만명임. 구체적으로 ① 국가유공자인 애국지사[66](5명), 전상군경(56,072명), 공상군경(13,225명)[67],

---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가 있음.

6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이 있음.

64)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을 의미함.
출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지원대상자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9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5)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현황·통계 > 보훈대상자 항목
https://www.mpva.go.kr/mpva/selectBbsNttView.do;jsessionid=GUTAgPj-TzVRToUf-m8dXzH0.node20?key=181&bbsNo=54&nttNo=260291&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integrDeptCode=&pageIndex=1

66)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국가보훈부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19혁명부상자(135명), 공상공무원(3,233명), ② 보훈대상자인 재해부상군경(6,005명), 재해부상공무원(212명), ③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지원공상군경(1,739명), 지원공상공무원(493명), ④ 5·18부상자(2,098명),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48,305명) 등이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의 적용 대상 및 인원]**

| 연번 | 대상 | 인원 |
|---|---|---|
| ①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애국지사: 5명<br>○ 전상군경: 56,072명<br>○ 공상군경: 13,225명<br>○ 4·19혁명부상자: 135명<br>○ 공상공무원: 3,233명 |
| ②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재해부상군경: 6,005명<br>○ 재해부상공무원: 212명 |
| ③ |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지원공상군경: 1,739명<br>○ 지원공상공무원: 493명 |
| ④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5·18부상자: 2,098명 |
| 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8,305명 |

자료: 국가보훈부의 2024년 9월말 보훈대상자 기본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

---

는 다음과 같다.

1. "상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67) 공상군경 49,016명 중 고연제후유의증환자 35,791명을 줄인 수치

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의 성격을 가짐.

동 조항은 1973년에 지방자치단체 개별 조례로 국가유공상이자 1급 내지 2급 대상으로 4기통 이하 승용차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으며, 1998년에는 국가유공상이자 3급에서 6급까지로, 2000년에는 국가유공상이자 7급까지로, 2003년에는 5·18민주부상자(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고·중·경도)까지 감면대상자가 확대됨[68].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삭제함으로써 부상을 입고 법률에서 정하는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보유하는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연평균 183억원, 자동차세 감면액은 연평균 247억원임.

68)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378면, 삼일인포마인, 2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1,519 | 11,164 | 9,677 | 8,023 | 8,581 | 9,793 |
| | 감면 금액 | 18,571,159 | 19,927,008 | 18,174,713 | 16,449,369 | 18,508,802 | 18,326,210 |
| 자동차세 | 감면 건수 | 197,046 | 193,083 | 184,445 | 174,762 | 168,455 | 183,558 |
| | 감면 금액 | 26,903,652 | 26,087,415 | 24,872,971 | 23,347,989 | 22,046,740 | 24,651,753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예우 및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일몰기간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세 감면은 정책 환경 변화,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년 단위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며,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의원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007억원(연평균 33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69], 윤준병의원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98억원(연평균 32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70].

6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15.)

### (2)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 상향

이병진의원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요건을 배기량 3,000시시로 상향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로 승용자동차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3000시시 이하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보철 장구의 운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법률 규정의 연혁적 측면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용 승용차의 요건에 대한 심사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대형 승용차로 분류되는 2,000시시 이상의 차량을 보철·생업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현행 감면 규모를 고려할 때 감면 요건을 완화하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병진의원안에 따라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현행 2000cc 이하에서 3000cc 이하로 상향조정하

7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고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061억원(연평균 41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71].

7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 14.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 [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0조제2항제1호]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경감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1호).

| 현 행 | 윤준병(Ⅲ)의원안 |
|---|---|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br>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br>2. 삭제<br>③ (생 략)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br>----------<br>----------<br>----------.<br>1. 2029년----------<br>----------<br>----------<br>----------.<br>2.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의학적·정신적 재활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72],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국비진료, 국가유공자 유·가족 및 참전군인 등에 대한 감면진료, 신체기능 보완을 위한 보장구 제작, 공급 및 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73].

보훈병원에는 중앙보훈병원(서울 강동구에 위치),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이 있음.

이 중 중앙보훈병원의 2023년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보훈병원은 10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대지 65,765$m^2$, 건축면적 26,496$m^2$, 연면적 152,163$m^2$) 973개 병상과 232개 병실을 운영하며, 2,560명의 직원이 연인원 기준 입원환자 259,321명(일평균 710.5명), 외래환자 1,122,981명(일평균 4,491.9명)를 진료하고 있음[74].

---

7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73) 중앙보훈병원 2023년 연보의 "개요 및 현황" 중 "가. 개황" 부분
보훈병원 연보 자료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 > 사전정보공개목록> 병원 연보 (https://www.bohun.or.kr/030manage/manage0206_04.php)

74) 중앙보훈병원 2023년 연보

[중앙보훈병원 2023년 현황]

| 구 분 | 내 용 |
|---|---|
| 건물<br>(대지, 건물 면적) | 중앙관, 제3관, 제2관, 종합재활센터, 별관, 치과병원, 성당, 장례식장, 보훈의학연구소, 수위실<br>(대지 65,765m$^2$, 건축면적 26,496m$^2$, 연면적 152,163m$^2$) |
| 병상현황<br>(병상, 병실) | 병상: 973개, 병실 232개<br>일반병실(622, 148), 간호간병(181, 44) 완화의료(28, 8),<br>정신과폐쇄(60, 12), 중환자(54, 2), 격리병실(21, 11),<br>무균치료실(2, 2), 음압격리실(5, 5), 응급실(25, 1),<br>수술실(15, 15), 분만실(1, 1), 신생아실(6, 1), 인공신장실(25, 1) |
| 주요실적 | 입원환자 연인원 259,321명(일평균 710.5명)<br>외래환자 연인원 1,122,981명(4,491.9명)<br>퇴원환자 연인원 250,081명(685.2명) |
| 근무인원 | 정원: 2,436명, 현원: 2,560명<br>(현원 내역) 별정직 1명, 의사직 250명, 사무직 83명, 보건직 318명, 간호직 815명, 약무직 49명, 기술직 36명, 의공직 40명, 연구직 3명, 일반기능직 305명, 기타(인턴, 계약직, 무기계약직, 청년인원) 660명 |

자료: 중앙보훈병원 2023년 연보

참고로, 보훈병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순이익은 4년 연속 손실을 기록하면서 누적 적자가 1,320억원을 기록하고 했는데, 적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에 △283억 원, 2021년 △110억 원, 2022년 △419억 원, 2023년 △508억 원 등을 기록함[75].

75) 서울경제신문 2024년 7월 22일 기사 “[단독] ‘보훈’ 못하는 보훈공단…4년간 누적 적자 1320억 원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BU7PL9AJ
동 언론보도는 유영하의원실이 국가보훈부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23년 보훈공단 사업 부문별 당기순이익 현황’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2억 9천만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9억 2천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6 | 12 | 14 | 10 | 3 | 9 |
| | 감면 금액 | 57,917 | 73,673 | 452,971 | 612,325 | 229,653 | 285,308 |
| 재산세 | 감면 건수 | 31 | 30 | 9 | 18 | 21 | 22 |
| | 감면 금액 | 1,503,000 | 1,465,524 | 136,734 | 748,942 | 752,995 | 921,439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통해 보훈병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행법 및 개정안의 감면 요건 중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정하는 경우 중앙보훈병원의 ‘보훈의학연구소’가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데[76], ‘보훈의학연구소’의 경우에도 환자의

76)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를 환자를 직접 치료, 간호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보훈의학연구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보임. 참고로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정의되어 있고(법 제2조) 의료업은 의료·조산의 업을 약칭한 개념임(법 제3조).

치료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이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제1항[77]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78].

**[중앙보훈병원 사진]**




자료: 보훈병원 연보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78)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감면율이 75% 등으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취득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15%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그리고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산세 감면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재산세 감면율이 75%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세 감면율이 25% 등으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

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재산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25%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료와 보훈 등 사회 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유사 대상과의 형평성 및 지방세 감면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재설계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은 3년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8.5억원(연평균 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79].

## 15.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신설(문진석의원안 제31조제6항 신설)

개정안 제31조제6항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80]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축물과 같이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 행 | 문진석의원안 |
|---|---|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br>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중략…]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이하 생략)<br>1. ~ 3. (생 략)<br>⑤ (생 략)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

7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80)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8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⑤ 법 제31조제6항

| | |
|---|---|
|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81]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⑥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주택공사”라 한다----------. |
| 1.·2. (생 략)[82] | 1.·2. (현행과 같음) |
|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 ⑦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주택공사----------.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⑥ (생 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주택공사”라 함)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제1항[83]에 따른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6,621호, 지방주택공사는 6,300호에 대해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음[8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등을 매입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6항(취득세 감면율 25%)이 적용되고, 지방주택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취득세 감면율 50%)가 적용됨. 재산세 감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과 제6항 중 감면율이 높은 조항이 적용되고, 지방주택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85]이 적용됨.

---

83)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등 매입)**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84) **2022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매입) 현황 (단위: 호)**

| 지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주택공사 | 지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주택공사 |
|---|---|---|---|---|---|
| 서울특별시 | 2,505 | 4,317 | 강원도 | 612 | 0 |
| 부산광역시 | 1,214 | 244 | 충청북도 | 327 | 0 |
| 대구광역시 | 593 | 122 | 충청남도 | 299 | 0 |
| 인천광역시 | 2,274 | 699 | 전라북도 | 633 | 13 |
| 광주광역시 | 379 | 0 | 전라남도 | 217 | 1 |
| 대전광역시 | 526 | 45 | 경상북도 | 628 | 150 |
| 울산광역시 | 108 | 0 | 경상남도 | 700 | 0 |
| 세종특별자치시 | 83 | 0 | 제주특별자치도 | 137 | 102 |
| 경기도 | 5,386 | 607 | 합계 | 16,621 | 6,300 |

자료: 국토교통 통계누리 임대주택통계 (https://stat.molit.go.kr/portal/cate/statView.do?hRsId=37)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근거]

|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주택공사 | 비고 |
|---|---|---|---|
| 취득세 감면 | ○법 §31⑥, 시행령§13⑤[86] · (25% 감면) |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 ·감면율 50% (50% 이내 조례 규정 비율) × 지방공사에 대한 투자 비율 | *지방공사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감면율 변동 |
| **재산세 감면** | ○ 법 §31④<br>· (면제) 40m² 이하의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br>· (50% 감면)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br>· (25% 감면)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br>*(오피스텔 가액 제한) | ○ 법 §31④<br>· (면제) 40m² 이하의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br>· (50% 감면) 전용면적 60m²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br>· (25% 감면)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br>*(오피스텔 가액 제한) |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중략…]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 | | |
|---|---|---|---|
| | ○ **법§31⑥**, 시행령§13⑤ · (50% 감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 |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에 대해 감면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등을 매입임대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의 경우 한국주택공사의 취득세 감면율은 25%이고, 지방주택공사의 취득세 감면율은 50%에 지방공사에 대한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공공준주택)** 법 제2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준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4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87]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율에 따라 경감율이 달라짐.

재산세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6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재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등에 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됨. 지방주택공사의 경우 재산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기존주택등의 범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한정되어 상대적으로 범위가 좁음.

개정안 제31조제6항을 통해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임대 하는 경우에 재산세가 감면되는 기존주택 등의 범위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이 확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주택공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복지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개정안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지방세수의 감소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주택공사가 공공매입임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LH에 대해서만 취득세 25%, 재산세 50% 감면 중인데, 감면대상에 지방주택공사를 포함하여 과세형평성 제고 및 주로 취약계층이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급될 공공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88].

8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7. 15.)

## 16.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산세 경감 신설(문진석·복기왕의원안 제31조제8항 신설)

개정안 제31조제8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지분을 공유하는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분양자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지분을 공유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복기왕의원안은 주택의 지분 공유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 현 행 | 문진석의원안 | 복기왕의원안 |
|---|---|---|
| <신 설>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⑧「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 |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⑧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항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여 공급받은 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 |

| | | |
|---|---|---|
| | 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 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br>**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하다.<br><br>**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89]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20년 또는 30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공급받은 주택의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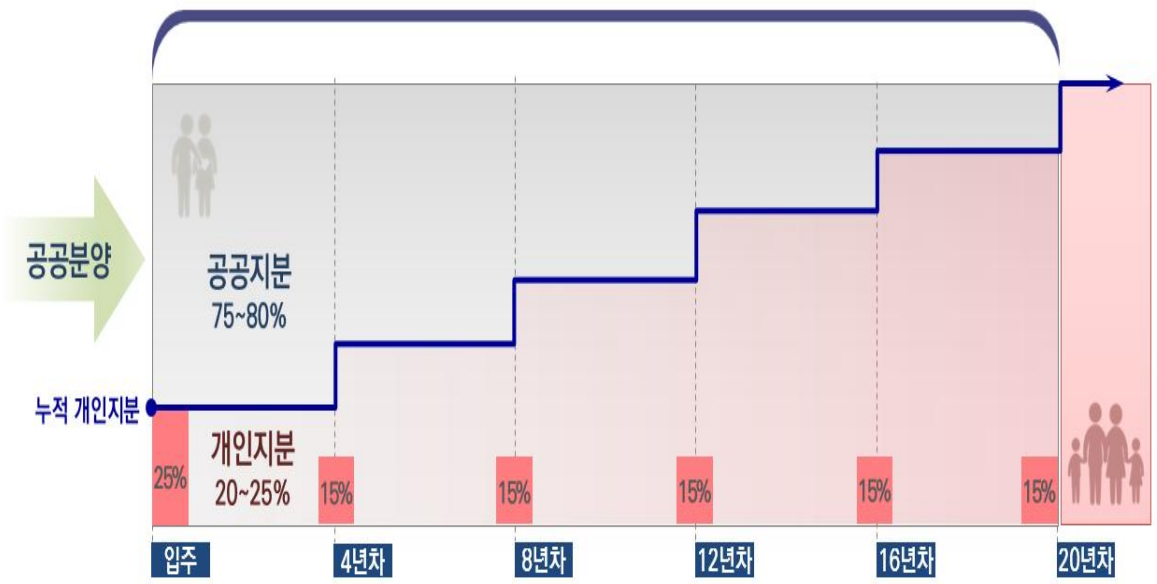
수분양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지분 일부(약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분양자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여[90] 주

89)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90)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는 동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

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분양자가 보유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됨.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운영예시 >**




자료: 국토교통부 2021년 6월 10일 보도자료 "11일부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참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을 준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2023년 9월 5일 보도자료[91] 등에 따르면, 최초분양가가 5억원인 경우 수분양자는 최초지분(25%)에 해당하는 분양대금 약 1.25억원 및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 입주하고, 이후 거주기간 20년 동안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예금이자를 가산한 추가 지분취득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최초분

---

**한 지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6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임대료)** ①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란 제44조제5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임대보증금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급은 그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예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그 일부를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료 전환의 기준과 구체적인 임대료 지급 방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다.

91) 경기주택도시공사 2023년 9월 5일 보도자료, "GH,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양가가 5억원인 경우 20년 동안 총 지분취득액은 5.9억원 수준임[9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어 소득이 있으나 자산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대금을 모두 납부받는 일반 분양 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자의 경우 해당 전체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 임대인의 지위에서 건물을 관리해야 하며, 주택 소유지분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93]을 지게 됨.

이로 인해 2020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계획이 발표[94]된 이후 동 주택을 공급계획을 발표한 곳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소수에 머무르고 있음.

---

92) 경기주택도시공사 2023년 9월 5일 보도자료
< 수분양자 지분취득 시뮬레이션(안) : 최초 분양가 5억원, 예금이자율 2%/년 가정 >

| 구 분 | | | 연도별 지분취득액 | | | | | | |
|---|---|---|---|---|---|---|---|---|---|
| | | | 합계 | 입주 | 4년~ | 8년~ | 12년~ | 16년~ | 20년 |
| 지분 적립형 | 지분율 | 수분양자 | - | 25% | 40% | 55% | 70% | 85% | 100% |
| | | 공 공 | - | 75% | 60% | 45% | 30% | 15% | - |
| | 최초분양가(억) | | 5.00 | 1.25 | 0.75 | 0.75 | 0.75 | 0.75 | 0.75 |
| | 가산이자(억) | | 0.90 | - | 0.06 | 0.12 | 0.18 | 0.24 | 0.30 |
| | 합 계(억) | | **5.90** | **1.25** | **0.81** | **0.87** | **0.93** | **0.99** | **1.05** |

93)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5.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주택지분의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말한다)

94) 인터넷뉴스 DE데일리경제 2020년 10월 28일 기사, "홍남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토지 건물 지분 20~25% 취득 입주 20년후 100% 소유 가능"

개정안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재산세를 경감함으로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대상에 있어서 문진석의원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복기왕의원안은 공급 일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감면기간에 대해서도 문진석의원안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복기왕의원안은 감면기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이 발표된 사례는 소수인 반면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가 일정 기간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복기왕의원안과 관련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산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장기간 지원의 필요성과 주기적인 평가를 위해 일몰기한의 설정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리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잔여지분에 대해서는 수분양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점 및 공공분양주택이나 민간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될 때까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당 20~30년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주택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할 경우 재산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산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95].

95) 복기왕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8. 8.)

## 17.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연장[서영교(Ⅰ,2201306), 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3조제2항]

개정안은 상시 거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Ⅰ)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 현 행 | 서영교(Ⅰ)의원안 |
|---|---|
|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생 략)<br>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 ------<br>----------<br>----------<br>----------<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 |

| | |
|---|---|
| | ※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33②)<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서민주택의 요건을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음[96].

통계청이 2023년 11월 14일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일반가구 2,177.4만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223.2만 가구로 전년대비 1.4% 증가했고, 무주택 가구는 954.1만 가구로 조사됨. 2015년 이후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소유율은 56% 수준인데, 일반가구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수가 증가하면서 무주택가구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주택소유가구 현황]**

(단위: 천 가구, %)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주택소유가구 | 10,699 | 10,743 | 11,000 | 11,234 |
| 일반가구 | 19,111 | 19,368 | 19,674 | 19,979 |
| 무주택가구 | 8,412 | 8,624 | 8,674 | 8,745 |
| 주택소유율 | 56.0 | 55.5 | 55.9 | 56.2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주택소유가구 | 11,456 | 11,730 | 12,063 | 12,232 |
| 일반가구 | 20,343 | 20,927 | 21,448 | 21,774 |
| 무주택가구 | 8,887 | 9,197 | 9,386 | 9,541 |
| 주택소유율 | 56.3 | 56.1 | 56.2 | 56.2 |

*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가족과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1인가구,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가구 주택소유율 : 전체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비율

자료: 통계청, 2015년~2022년 주택소유통계 보도자료

개정안은 해당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또는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일정 규모 및 금액 이하의 서민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21억 6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4,908 | 5,016 | 3,310 | 2,000 | 1,342 | 3,315 |
| | 감면 금액 | 3,329,185 | 3,285,732 | 2,044,572 | 1,282,444 | 871,083 | 2,162,603 |

자료: 행정안전부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택공급 등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세 지원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Ⅰ)의원안에 따라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5.3억원(연평균 5.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97],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2.6억원(연평균 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98].

9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4.)
9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18.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연장(황정아의원안 제35조제1항, 제2항)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제2항).

| 현 행 | 황정아의원안 |
|---|---|
|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4년 12월 31일 |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2029년 12월 31일 |

| | |
|---|---|
| 까지 감면한다. | ----------. |
| 1.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1.·2. (현행과 같음) |
|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 |
| 가.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
| 나. 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25만원을 공제한다. | |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 ② ----------2029년 12월 31일----------. |
| 1.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1.·2. (현행과 같음) |
| 2.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 | ③ (현행과 같음) |

| | |
|---|---|
| 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br>③ (생 략) |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계약을 등기하고 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것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구조]**




자료: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부부 중 1인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종신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자의 평균 월지급금은 약 116만원 수준임(수도권 132만원, 비수도권 80만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66세 이상 인구의 소득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노인 빈곤율인 14.2%의 3배 수준임. 미국의 노인빈곤율은 22.8%, 일본의 노인빈곤율은 20.2%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임[9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가입률을 높이는 경우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약 717만 가구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건은 2014년 약 2만건에서 2023년 약 9만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잔액 현황]**

(단위: 건, 억원)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건수 | 20,314 | 25,611 | 34,444 | 43,099 | 51,080 |
| 연금지급액 | 11,699 | 15,187 | 20,561 | 26,969 | 34,286 |
| 보증공급액 | 266,547 | 324,659 | 416,492 | 504,324 | 576,818 |
|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건수 | 59,775 | 66,121 | 71,791 | 82,941 | 94,406 |
| 연금지급액 | 43,407 | 52,484 | 62,811 | 78,860 | 98,466 |
| 보증공급액 | 666,366 | 734,914 | 829,866 | 1,046,243 | 1,235,333 |

자료: 주택금융공사

99) 중앙일보 2024년 4월 24일 기사, "'OECD 1위' 노인 빈곤율, 부동산 연금화 땐 14~16%P 낮아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633

개정안을 통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등기 절차에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하는 인원이 확대되고, 소득 기준 빈곤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연평균 111억원이 감면되었고, 재산세는 연평균 29억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등록면허세 | 감면 건수 | - | 10,749 | 8,672 | 8,236 | 8,751 | 9,102 |
| | 감면 금액 | - | 10,404,094 | 11,433,364 | 11,746,367 | 10,862,496 | 11,111,580 |
| 재산세 | 감면 건수 | 55,711 | 60,732 | 49,541 | 52,874 | 56,012 | 54,974 |
| | 감면 금액 | 2,497,705 | 2,711,463 | 3,256,418 | 3,284,218 | 2,652,861 | 2,880,533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노인의 빈곤율을 낮추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중 신탁 연금 가입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25%)을 신설하되, 가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을 축소(75% → 50%)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일몰기한을 연장(3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19.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윤준병(Ⅰ, 2203081)의원안 제35조의2]

개정안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100]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4조제1항[101]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토지공시가격등”) 6억원까지 재산세액을 면제하고,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현행법 제35조의2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 현 행 | 윤준병(Ⅰ)의원안 |
|---|---|
|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br>----------<br>----------<br>----------<br>---------- |

10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공사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농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 |
|---|---|
|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br>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br>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 ---------- 2029년 12월 31일 ----------.<br>1. ~ 2. (현행과 같음) |

2023년 농가고령인구가 처음으로 50%를 넘어 농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102]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이어야 하므로 고령층 농민들이 노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계 안정을 지원할 필요가 인정되는 점,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그 요건이 제한되고 있는 점[103] 등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따른 재산

102)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농가 52.6%, 임가 52.8% (통계청, ‘2023년 농림어업조사’)

10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기준)** ①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0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세 감면액은 연평균 12억 9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재산세 | 감면 건수 | 8,027 | 9,776 | 10,590 | 11,763 | 13,616 | 10,754 |
| | 감면 금액 | 895,363 | 1,111,969 | 1,295,876 | 1,511,468 | 1,618,345 | 1,286,604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소득 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에 대한 소득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할 경우 재산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48억원(연평균 3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04)]

10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20.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Ⅰ,2201306), 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6조]

개정안은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Ⅰ)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

| 현 행 | 서영교(Ⅰ)의원안 |
|---|---|
|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 |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br>----------<br>----------<br>----------<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 ----------<br>----------<br>---------- |

| | |
|---|---|
| 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br>----------<br>--------.<br>**※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의 일몰기한(§36)**<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의미하는데[105], 한국해비타트는 정부 재정지원 없이 모금 및 후원으로 비영리 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주택 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해비타트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라 감면의 대상이 되는 무주택자에게 분양 목적으로 공급한 주택은 2019년 34세대, 2020년 28세대, 2021년 12세대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공급하지 않음.

---

105)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는 2010년 법인명을 ‘한국해비타트’로 변경하였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2019년～2023년 한국해비타트 국내 주택공급 현황]

(단위: 세대)

| 본부·지회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 본부 | - | 8 | - | - | - | 8 |
| 서울 | - | - | - | - | - | - |
| 전남동부 | 6 | - | - | - | - | 6 |
| 대구경북 | - | - | - | - | - | - |
| 충남세종 | 12 | 12 | 12 | - | - | 36 |
| 경기북부 | - | - | - | - | - | - |
| 군산 | 4 | - | - | - | - | 4 |
| 춘천 | 8 | 8 | - | - | - | 14 |
| 울산 | - | - | - | - | - | - |
| 충북청주 | - | - | - | - | - | - |
| 삼척 | 4 | - | - | - | - | 4 |
| 소계 | 34 | 28 | 12 | - | - | 74 |

자료: 한국해비타트

2022년과 2023년에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의 주택은 없었는데, 한국해비타트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사업의 준비기간으로 주택의 공급이 없었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3,500만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2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감면액 | 78,410 | 71,421 | 23,253 | - | - | 34,617 |
| 재산세 감면액 | 19,939 | 20,016 | 21,143 | 20,275 | 18,648 | 20,004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계속 부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세제지원을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Ⅰ)의원안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81억원(연평균 0.9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106],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을 위한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6.3억원(연평균 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07].

10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4.)

## 21. 재난피해 소상공인이 취득하는 차량,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설(이수진의원안 제36조의6)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6 신설).

| 현 행 | 이수진의원안 |
|---|---|
| <신 설> | 제36조의6(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소상공인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br>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소상공인이 1년 이내에 사망,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차량 및 기계장비의 소 |

10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 |
|---|---|
| | 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108]는 천재지변 등으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대체취득은 소유자가 종전과 동일한 종류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 규정은 종전에 본인이 취득했던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까지는 취득세 면제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임[109].

개정안에서는 취득세의 면제 대상을 재난[110]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종전의 생업활동 또는 새로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109)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451면, 삼일인포마인, 2022

1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는 태풍, 홍수, 지진, 한파,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이 있음

는 차량 및 기계장비로 규정하여, 동일한 종류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른 융자지원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지원이 실시될 수 있음[111]. 지원 등을 받은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해 영업에서 종전과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한 뒤 기존과 다른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재기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고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조문의 위치를 제2장 제2절(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의 제36조의6에 규정하기 보다는 연관된 조항인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가 포함된 제2장 제8절(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를 입은 건축물 등 물건을 정리·복구하거나 대체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이미 감면 중이고, 물건의 피해와 관계없이 모든 생업용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취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할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규모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112].

11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9. 13.),

## 22. 국립대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의원안 제37조제1항]

개정안은 서울대학교병원(제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2호), 국립대학병원(제3호), 국립암센터(제4호), 국립중앙의료원(제5호), 국립대학치과병원(제6호), 한국원자력의학원(제7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 현 행 | 윤준병(Ⅲ)의원안 |
|---|---|
|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br>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br>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 |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br>----------<br>----------2029년<br>----------.<br>1. ~ 7. (현행과 같음) |

| | |
|---|---|
| 병원<br>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br>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br>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br>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br>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 (1) 서울대학교병원(제1호) 및 국립대학병원(제3호)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강원대학교병원 등 9개)의 2023년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병상수의 합계는 15,276개(특수병상 1,896개)이고 근무하는 인력의 현원은 44,989명이며 입원환자는 연간 약 431만명, 외래환자는 연간 약 1,366만명으로 중증 환자 등 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023년에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2023년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현황]

| 병원명 | 허가병상 (특수병상) | 정원 (현원) | 환자(2023년) | | 2023년도 당기순이익 (백만원) |
|---|---|---|---|---|---|
| | | | 입원환자(명) | 외래환자(명) | |
| 강원대학교 병원 | 637 (61) | 1,894 (1,726) | 103,019 | 415,690 | -19,556 |
| 경북대학교 병원 | 1,845 (213) | 5,494 (4,681) | 253,203(본원)<br>242,790(칠곡) | 733,252(본원)<br>619,131(칠곡) | -40,792 |
| 경상국립 대학교병원 | 1,467 (349) | 4,102 (3,663) | 246,237(본원)<br>143,104(창원) | 556,154(본원)<br>390,849(외래) | -28,277 |
| 부산대학교 병원 | 2,472 (305) | 6,948 (6,164) | 302,939 (본원)<br>302,456(양산) | 916,758(본원)<br>753,642(양산) | -46,987 |
| 서울대학교 병원 | 3,126 (348) | 14,245 (12,620) | 563,221(본원)<br>447,980(분당) | 2,438,645(본원)<br>1,711,921(분당) | 2,144 |
| 전남대학교 병원 | 1,939 (194) | 5488.5 (4,756) | 330,940(본원)<br>197,595(화순) | 1,033,862(본원)<br>544,436(화순) | -22,803 |
| 전북대학교 병원 | 1,150 (163) | 3070 (2,802) | 338,562 | 930,937 | -8,732 |
| 제주대학교 병원 | 600 (53) | 1,927 (1,624) | 192,952 | 594,381 | -33,453 |
| 충남대학교 병원 | 1,236 (123) | 5,051.6 (4,391) | 325,658(본원)<br>90,222(세종) | 873,253(본원)<br>369,509(세종) | -83,964 |
| 충북대학교 병원 | 804 (87) | 2,665 (2,532) | 226,558 | 774,915 | -4,630 |

자료: 교육부

국립대학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사업에는 진료 외에도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의료 요원의 훈련,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113].

11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개정안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립대학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등이 진료, 교육, 연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증진 및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등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취득세 감면율이 75%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

---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의학계 관련 연구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취득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15%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그리고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과 동일하게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재산세 감면을 받는 지방의료원은 재산세 감면율이 75%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세 감면율이 25% 등으로 차이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재산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25% |

| | | | |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제2호)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제6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2023년 현황을 살펴보면, 환자수는 외래 약 2만 7천명, 외래환자는 약 85만명을 진료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등 경영현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국립대학치과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현황]**

| 병원명 | 허가병상<br>(특수병상) | 정원<br>(현원) | 환자 | | 2023년도<br>당기순이익 |
|---|---|---|---|---|---|
| | | | 입원환자 | 외래환자 | |
| **강릉원주대학교<br>치과병원** | 15<br>(0) | 202<br>(160) | 775* | 82,618* | -2,710 |
| **경북대학교<br>치과병원** | 15<br>(0) | 219<br>(206) | 4,701 | 169,685 | 661 |
| **부산대학교<br>치과병원** | 36<br>(0) | 272<br>(247) | 11,470<br>(추정) | 139,109<br>(추정) | 53 |
| **서울대학교<br>치과병원** | 40<br>(0) | 670<br>(611) | 10,727 | 462,336 | -7,352 |

*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의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는 2024년 1/4분기 환자진료 계획

자료: 교육부, 환자 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공시자료 등[114]

114)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주요사업 검색” > 2024년 1/4분기“진료사업.hwp”
https://alio.go.kr/item/itemReport.do?seq=2024040902797173&disclosureNo=202404090279717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홈페이지> 정보마당>정보공개3.0>사전정보공개>2024년도 사업계획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사업에는 진료 외에도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의료 요원의 훈련, 치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연구,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115].

개정안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립대학치과병원 등이 진료, 교육, 연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구강 보건의 향상 및 치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https://knudh.kr/content/05info/05_02.php?proc_type=view&a_num=9112504&b_num=36&rtn_url=%2Fcontent%2F05info%2F05_02.php%3Fa_num%3D9112504%26p_cate%3D4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홈페이지>병원소개>경영공시>주요사업>진료사업.pdf
https://alio.go.kr/item/itemReportTerm.do?apbaId=C0084&reportFormRootNo=31501&disclosureNo=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주요사업” 검색 >주요사업_진료(24년).hwpx
https://alio.go.kr/item/itemReport.do?seq=2024040902797329&disclosureNo=2024040902797329

11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6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 한다)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臨床敎育)
2. 전공의(專攻醫)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7. 그 밖에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3) 국립암센터(제4호)

국립암센터(경기도 고양시에 위치)는 「암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연구, 암환자의 진료, 암의 예방 및 암의 관리에 관한 홍보 등을 수행함[116].

2023년 국립암센터의 진료 환자수는 연환자수 기준으로 입원환자는 약 18만명, 외래환자는 약 41만명임.

**[국립암센터 현황(진료사업)]**

| 허가병상 | 진료인력 (명) | 환자(2023) | | 2023년 예산 (억원) |
|---|---|---|---|---|
| | | 입원환자 | 외래환자 | |
| 550 | 1,351 | 592,171 | 412,801 | 5,604 |

자료: 국립암센터 업무현황(2024. 1.), 2023년 국립암센터 연보

국립암센터의 사업에는 암환자의 진료 외에도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등이 있음[117].

---

116)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안을 통해 국립암센터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립암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암의 예방 연구 및 암의 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국립중앙의료원(제5호)

국립중앙의료원(서울 중구에 위치)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희귀난치질환의 관리,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118].

---

117) **「암관리법」 제30조(사업)** 국립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관리 및 암관리 정책 등에 관한 연구
2. 암환자의 진료
3. 제12조에 따른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4. 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암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암과 관련된 국내외 협력
7. 암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8.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대학을 통한 국내외 암전문인력 양성 및 훈련
9. 암 통합 데이터 구축
10. 제50조제2항에 따라 암에 관한 각종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그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설립)**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치료사업의 예산 규모는 2023년 결산 기준 557억원이고, 이를 통해 의약품, 진료재료 등을 구입함[119].

참고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한 데 따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3월 21일 비상경영에 돌입함[120].

개정안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면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희귀난치질환 등 국가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에 대한 관리
4. 감염병 및 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 등의 예방과 관리
5.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과 국제 보건의료 관련 국내외 협력
6. 민간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7. 진료 및 의학계, 한방진료 및 한의학계 관련 연구
8.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인력의 훈련
9. 삭제 <2018. 3. 13.>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업무의 지원
1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119) 국립중앙의료원 환자치료 사업 결산, 예산 금액 (단위: 건, 백만원)

| 2019년 결산 | 2020년 결산 | 2021년 결산 | 2022년 결산 | 2023년 결산 | 2024년 예산 |
|---|---|---|---|---|---|
| 44,031 | 45,765 | 53,551 | 46,451 | 55,659 | 65,480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공시 자료, “국립중앙의료원 주요사업”

120) 연합뉴스 2024년 3월 21일 기사, “국립중앙의료원, 비상경영 돌입…"집단행동으로 경영악화"(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40321062351530?input=1195m

### (5) 한국원자력의학원(제7호)

한국원자력의학원(서울 노원구 소재)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라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및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암병원 등에 대한 사업을 수행함[12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2023년 외래환자는 26만 7천명, 입원환자는 1만 6천명임.

**[한국원자력의학원 현황(진료)]**

| 구분 | 2021년 | | 2022년 | | 2023년 | |
|---|---|---|---|---|---|---|
| | 외래 | 입원 | 외래 | 입원 | 외래 | 입원 |
| 환자수(명) | 281,789 | 15,435 | 268,136 | 15,224 | 266,540 | 16,203 |

자료: 한국원자력의학원 2023년 연보(제47호)

개정안을 통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한국원자력의학

121)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의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에 관한 사업
2.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방사선 의학에 관한 정책 연구
4.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분배 및 연구
5.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와 이와 관련한 교육 및 연구·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성과 보급
7. 방사선 의학 연구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8. 방사선 의학 연구·개발 등의 국내외 협력
9.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
10. 그 밖에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방사선 의학에 관한 연구 및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의 의료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료 등 사회 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 필요성을 공감한다는 의견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26억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39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49 | 131 | 70 | 80 | 92 | 84 |
| | 감면 금액 | 6,892,919 | 4,493,793 | 951,643 | 147,765 | 541,929 | 2,605,610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52 | 312 | 55 | 193 | 185 | 179 |
| | 감면 금액 | 5,417,237 | 6,402,295 | 497,095 | 3,712,383 | 3,475,306 | 3,900,863 |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국립대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

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01.5억원(연평균 40.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22].

12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23.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한병도(Ⅳ, 2203733)의원안 제38조제1항제1호, 제4항]

### (1) 의료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 현 행 | 한병도(Ⅳ)의원안 |
|---|---|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br>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br>----------<br>----------<br>----------<br>----------<br>----------<br>----------<br>----------.<br>1. 2028년----------<br>----------<br>----------<br>----------<br>----------<br>----------.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세감면평가서[123]에 따르면,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는 2023년 8월 기준 상급종합병원 133개, 병원 269개, 요양병원 561개, 정신병원 111개가 있고, 그 밖에 의원급 의료기관, 한방병원 등이 있음.

의료법인이 개설한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190개, 경남 143개, 부산 133개, 경북 118개, 전북 62개, 전남 61개, 충남 58개, 충북 56개, 서울 52개 등임.

**[의료법인이 개설한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의 지역별 분포]**

|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
| 개수 | 36 | 190 | 143 | 118 | 21 | 34 | 27 | 133 | 52 |
| | **세종**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합계** |
| 개수 | 6 | 36 | 32 | 61 | 62 | 9 | 58 | 56 | 1,074 |

자료: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세감면평가서

의료법인은 1,00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으며, 해당 의료기관이 전국적인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면서 환자의 치료와 지역 주민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23) 출처: 대한병원협회 전국 병원명부 2023. 8. 기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69억 3,600만원, 재산세는 91억 4,000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79 | 283 | 42 | 263 | 250 | 243 |
| | 감면 금액 | 7,428,580 | 8,403,858 | 5,705,644 | 6,666,051 | 6,475,955 | 6,936,018 |
| 재산세 | 감면 건수 | 4,173 | 4,182 | 5 | 3,269 | 3,405 | 3,007 |
| | 감면 금액 | 13,230,822 | 13,497,876 | 1,809 | 9,434,753 | 9,538,632 | 9,140,778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며,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부족 등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

년까지 4년간 총 656억원(연평균 16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24].

### (2) 재단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 현 행 | 한병도(Ⅳ)의원안 |
|---|---|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③ (생 략)<br>④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③ (생 략)<br>④ ----------<br>----------<br>----------<br>----------<br>----------<br>----------<br>----------<br>----------<br>----------<br>----------<br>----------2028년--<br>----------. -<br>----------<br>---------- |

12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 | |
|---|---|
|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br><br>⑤ (생 략) | ----------<br>----------<br>----------2024년----------<br>.<br>⑤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023년 12월 29일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었으나, 2023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감면대상으로 확대됨.

개정안을 통해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2억 8천만원, 평균 재산세는 7억 6천만원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평균 |
|---|---|---|---|---|---|---|---|
| 취득세 | 감면건수 | 2 | 14 | 19 | 11 | 9 | 11 |
| | 감면금액 | 35,154 | 359,335 | 459,005 | 325,241 | 208,448 | 277,437 |

| | | | | | | | |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75 | 185 | 41 | 134 | 146 | 136 |
| | 감면 금액 | 631,539 | 738,574 | 149,221 | 1,115,957 | 1,187,193 | 764,497 |

* 재산세 평균은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4개년의 평균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개정안 제38조제4항은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유지한 채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및 국립대학병원 등이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취득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취득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15%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3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그리고 개정안은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25%로,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현행과 동일한 수준인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만을 연장하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및 지방의료원 등은 공통적으로 국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재산세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의 부동산 재산세 감면율]**

| 기관 | 지방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 요건 | 재산세 감면율 |
|---|---|---|---|
| **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25% |
| **사회복지법인** | 제22조8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의료법인** | 제38조제1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종교단체(재단법인)** | 제38조제4항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국립대학병원** | 제37조제1항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보훈병원** | 제30조제2항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50% |
| **한국건강관리협회** | 제40조제1항제2호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 50% |
| **지방의료원** | 제38조의2제1호 | 의료업에 직접 사용 | 75% |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단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지역 간 의료서

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며,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부족 등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30.4억원(연평균 7.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25].

12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 24.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Ⅳ,2203733)의원안 제38조의2제1호]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고, 윤준병(Ⅲ)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함.

| 현 행 | 한병도(Ⅳ)의원안 |
|---|---|
|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br>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br>2. (생 략) |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br>----------<br>----------<br>----------<br>----------<br>----------<br>----------<br>----------.<br>1. 2028년----------<br>----------<br>----------<br>----------.<br>2. (생 략)<br>**※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38조의2 제1호)**<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부 칙 |
| --- |
| [윤준병(Ⅲ)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한병도(Ⅳ)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의료원은 13개의 시·도에 총 35개소가 있고, 이 중 종합병원은 30개, 병원은 5개임. 지방의료원 35개소는 8~25개의 진료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병상수는 9,914개이고, 응급 환자를 위한 병상수는 총 568개임.

**[지방의료원 현황]**

| 시도 | 기관명 | 종별 | 병상수 | 진료과목 수 | 응급지정 (병상수) |
| --- | --- | --- | --- | --- | --- |
| 계 | | | 9,914 | - | 35개소(568) |
| 서울 | 서울의료원 | 종합병원 | 655 | 25 | 권역(50) |
| 부산 | 부산의료원 | 종합병원 | 543 | 21 | 기관(23) |
| 대구 | 대구의료원 | 종합병원 | 447 | 21 | 기관(20) |
| 인천 | 인천의료원 | 종합병원 | 305 | 20 | 기관(17) |
| | (백령병원) | 병원 | 30 | 8 | 기관(6) |
| 경기 | 수원병원 | 종합병원 | 167 | 15 | 기관(13) |
| | 의정부병원 | 종합병원 | 203 | 15 | 기관(11) |
| | 이천병원 | 종합병원 | 206 | 12 | 센터(20) |
| | 파주병원 | 종합병원 | 200 | 15 | 기관(20) |
| | 포천병원 | 종합병원 | 162 | 15 | 센터(20) |
| | 안성병원 | 종합병원 | 241 | 15 | 기관(15) |
| | 성남시의료원 | 종합병원 | 303 | 24 | 기관(29) |
| 강원 | 원주의료원 | 종합병원 | 234 | 17 | 기관(10) |
| | 강릉의료원 | 종합병원 | 155 | 13 | 기관(6) |
| | 속초의료원 | 종합병원 | 173 | 14 | 센터(20) |
| | 삼척의료원 | 종합병원 | 148 | 13 | 센터(20) |
| | 영월의료원 | 종합병원 | 184 | 18 | 기관(10) |
| 충북 | 청주의료원 | 종합병원 | 583 | 21 | 기관(16) |
| | 충주의료원 | 종합병원 | 294 | 21 | 기관(13) |
| 충남 | 천안의료원 | 종합병원 | 294 | 25 | 기관(13) |
| | 공주의료원 | 종합병원 | 292 | 24 | 기관(15) |
| | 서산의료원 | 종합병원 | 269 | 19 | 센터(21) |
| | 홍성의료원 | 종합병원 | 402 | 21 | 센터(22) |
| 전북 | 군산의료원 | 종합병원 | 388 | 23 | 센터(20) |
| | 남원의료원 | 종합병원 | 200 | 19 | 센터(20) |
| | 진안군의료원 | 병원 | 78 | 10 | 기관(6) |

| | | | | | |
|---|---|---|---|---|---|
| 전남 | 목포시의료원 | 종합병원 | 299 | 15 | 기관(10) |
| | 순천의료원 | 종합병원 | 278 | 14 | 기관(10) |
| | 강진의료원 | 병원 | 199 | 11 | 기관(10) |
| 경북 | 포항의료원 | 종합병원 | 298 | 17 | 기관(6) |
| | 김천의료원 | 종합병원 | 296 | 21 | 기관(18) |
| | 안동의료원 | 종합병원 | 246 | 19 | 기관(8) |
| | 울진군의료원 | 병원 | 169 | 17 | 기관(10) |
| 경남 | 마산의료원 | 종합병원 | 298 | 17 | 기관(15) |
| 제주 | 제주의료원 | 병원 | 397 | 10 | - |
| | 서귀포의료원 | 종합병원 | 278 | 18 | 센터(25) |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제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진료과목수)

지방의료원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하고, 응급환자를 치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35개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황과 관련하여 2019년에는 병상가동율이 80.5%, 일평균 외래환자수 789명으로 29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3년에는 병상가동율이 46.4%, 일평균 외래환자수 613명으로 3,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126].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2억 5천만원, 평균 재산세는 6억 9천만원 감면됨.

126) 조선일보 2024년 7월 23일 기사, "'코로나 병원' 낙인에 줄줄이 적자 지방의료원 붕괴 위기" 동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했고, 이후 지방의료원은 코로나 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외래 진료를 기존의 20% 수준으로 축소했으며, 병동 환자의 90% 이상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면서 경영 실적에 영향을 받음.
위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4. 7. 23.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 등 다각적 지원방안 마련·시행" 한다는 설명을 함(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76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5 | 10 | 23 | 39 | 33 | 22 |
| | 감면 금액 | 157,834 | 66,354 | 447,585 | 147,877 | 427,068 | 249,344 |
| 재산세 | 감면 건수 | 42 | 37 | 23 | 40 | 48 | 38 |
| | 감면 금액 | 1,045,363 | 811,960 | 85,177 | 708,366 | 785,372 | 687,248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료원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고, 감염병 대응 및 필수의료 부족 등 상황에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병도(Ⅳ)의원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9.6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127],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총 12억원(연평균 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28].

127) 한병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 25.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Ⅲ,2203204), 한병도(Ⅳ,2203733)의원안 제40조제1항]

개정안은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4년 연장하고, 윤준병(Ⅲ)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 행 | 한병도(Ⅳ)의원안 |
|---|---|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br>----------2028년-----<br>----------.<br>**※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40①)**<br>**- 윤준병(Ⅲ)의원안 : 5년(~2029년)** |
|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br>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 1. ~ 3. (현행과 같음) |

128)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 |
|---|---|
| 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br>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윤준병(Ⅲ)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한병도(Ⅳ)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모자보건법」 제16조제1항[129]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으로 13개 시·도에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며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반진료(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를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모성보호, 출산친화인식개선, 육아, 인구 연구 등을 수행함[130].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131]에 따라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지원하며,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 시책 상 필요로 하는 질환의 조기 발견,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건강검진과 치료, 역학적 조사연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132].

---

129) **「모자보건법」 제16조(협회)** 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30)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https://www.ppfk.or.kr/) 가족보건의원, 인구사업 항목

1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32) 건강관리협회 홈페이지 > 소개 > 설립목적
출처 https://www.kahp.or.kr/home/kahp_kor/assoIntro/assoIntroSub/estlPurpWrap.jsp

대한결핵협회는 「결핵예방법」 제12조제1항[133]에 따라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예방과 환자 발견, 균 검사, 환자 치료,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며 국내외 호흡기 감염병 퇴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대한결핵협회의 조직에는 본부 산하 결핵연구원, 글로벌협력원, 12개 지부, 9개 복십자의원 등으로 구성됨[134].

개정안을 통해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대한결핵협회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동 협회들이 모자보건사업, 건강검진, 호흡기 환자 치료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취득세 감면액은 9억 3천만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3억 9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2 | 10 | 7 | 15 | 16 | 12 |
| | 감면 금액 | 1,102,731 | 1,268,375 | 135,464 | 1,144,884 | 1,008,938 | 932,078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27 | 134 | 39 | 67 | 111 | 96 |
| | 감면 금액 | 573,727 | 610,829 | 110,989 | 280,189 | 353,112 | 385,769 |

자료: 행정안전부

133) **「결핵예방법」 제21조(대한결핵협회)** ①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결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34) 대한결핵협회 홈페이지 > 협회소개 > 핵심사업 https://knta.or.kr/about_us/business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민건강 증진사업자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등 공공성이 인정되고,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병도(Ⅳ)의원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40억원(연평균 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135], 윤준병(Ⅲ)의원안에 따라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0억원(연평균 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36].

135) 한병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136)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26. 기숙사용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감면 연장[서영교(Ⅸ, 2201738)의원안 제42조제1항, 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제42조제1항·제2항]

### (1) 기숙사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과세기준일 현재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Ⅸ)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Ⅳ)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br>----------<br>----------<br>----------<br>----------<br>----------<br>----------<br>----------<br>----------<br>----------<br>----------<br>----------<br>---------- |

| | |
|---|---|
| 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br>----------<br>----------<br>----------<br>----------<br>----------. ---------<br>----------2029년--------<br>----------. ----------<br>----------<br>----------<br>----------.<br>**※ 학교등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면제(§42①)**<br>**- 서영교(Ⅸ)의원안 : 3년(~2027년)** |
| 1.·2. (생 략)[137] | 1.·2.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적용대상은 사학진흥기금을 투입[138]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139]으로 기숙사를 건립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38)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기금의 사용) ① 사학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 3. (생 략)
4.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학기관의 학

하는 사업임. 사립학교 등은 사학진흥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기숙사를 건립하고, 융자를 모두 상환할 때 기숙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융자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적용됨.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사립대학 내에 사학진흥기금 등으로 기숙사를 건립하는 유형을 “행복기숙사(사립)”과 국립대 부지 등에 사학기금을 재원으로 건립한 “행복기숙사(연합)”가 있음[140].

행복기숙사(사립)은 40개교에 52개의 사업(수용인원 23,043명)이 있고, 이 중 6개 사업은 사학진흥기금의 융자를 모두 상환했음. 행복기숙사(연합)은 9개 사업(수업인원 7,988명)이 있음.

**[행복기숙사(사립)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천 원]

| 지원 연도 | 학 교 명 | 개관 (예정) 연도 | 수용인원 | 총 사업비 | 사학진흥기금 융자액(백만 원) | | | 기숙사비** (월, 메인실) |
|---|---|---|---|---|---|---|---|---|
| | | | | | 공자기금 | 주택기금 | 합계 | |
| 합 계 | | | 23,043 | 737,527 | 210,830 | 441,480 | 652,310 | |
| 2012년 (6개) | 경희대(운동장) | ‘17.09. | 926 | 29,437 | 15,101 | 10,442 | 25,543 | 236.0 |
| | 경희대(이문동) | ‘14.03. | 74 | 2,580 | 1,115 | 1,207 | 2,322 | |

---

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140)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사업소개>주요사업실적>행복기숙사(사립) https://www.happydorm.or.kr/ko/010301/board/businessperformance/

| 지원 연도 | 학 교 명 | 개관 (예정) 연도 | 수용인원 | 총 사업비 | 사학진흥기금 융자액(백만 원) | | | 기숙사비** (월, 메인실) |
|---|---|---|---|---|---|---|---|---|
| | | | | | 공자기금 | 주택기금 | 합계 | |
| 합 계 | | | 23,043 | 737,527 | 210,830 | 441,480 | 652,310 | |
| | 경희대(회기동) | '14.03. | 51 | 1,576 | 628 | 790 | 1,418 | 사업 종료 |
| | 단국대(천안) | '14.03. | 924 | 19,208 | 6,722 | 10,564 | 17,286 | 242.1 |
| | 대구한의대 | '14.03. | 402 | 10,540 | 2,685 | 6,800 | 9,485 | 255.8 |
| | 세종대 | '15.03. | 716 | 19,990 | 3,822 | 12,668 | 16,490 | 296.4 |
| | 소 계 | | 3,093 | 83,331 | 30,073 | 42,471 | 72,544 | |
| 2013년 (7개) | 경동대(문막-1) | '15.08. | 519 | 14,403 | 5,542 | 6,752 | 12,294 | 사업 종료 |
| | 광운대 | '17.09. | 977 | 31,490 | 11,963 | 15,927 | 27,890 | 282.6 |
| | 단국대(죽전) | '15.03. | 922 | 22,646 | 7,926 | 10,546 | 18,472 | 242.1 |
| | 서영대 | '14.03. | 102 | 3,247 | 1,221 | 1,700 | 2,921 | 289.5 |
| | 충북보건과학대 | '14.03. | 230 | 6,573 | 2,351 | 3,489 | 5,840 | 213.0 |
| | 경동대(양주) | '16.09. | 497 | 13,151 | 5,376 | 6,455 | 11,831 | 사업 종료 |
| | 동의대 1차 | '16.03. | 770 | 22,095 | 8,294 | 11,586 | 19,880 | 229.0 |
| | 소 계 | | 4,017 | 113,605 | 42,673 | 56,455 | 99,128 | |
| 2014년 (10개) | 고신대 | '17.03. | 744 | 21,090 | 10,877 | 8,103 | 18,980 | 207.4 |
| | 강릉영동대 | '18.03. | 501 | 12,150 | 4,038 | 6,896 | 10,934 | 245.0 |
| | 제주관광대 | '15.08. | 132 | 5,490 | 2,776 | 2,164 | 4,940 | 256.0 |
| | 동의대 2차 | '16.03. | 858 | 24,787 | 9,841 | 12,471 | 22,312 | 229.0 |
| | 경동대(문막-2) | '16.09. | 497 | 15,922 | 6,756 | 7,546 | 14,302 | 사업 종료 |
| | 성공회대 | '17.03. | 338 | 13,578 | 4,190 | 6,388 | 10,578 | 269.7 |
| | 한국국제대 | '16.09. | 580 | 11,790 | 4,906 | 5,704 | 10,610 | 사업 종료 |
| | 한동대 1차 | '17.03. | 434 | 13,842 | 5,703 | 6,754 | 12,457 | 204.3 |
| | 한양대(서울) | '17.03. | 398 | 16,990 | 7,641 | 7,649 | 15,290 | 295.0 |
| | 한양대(ERICA) | '17.03. | 788 | 24,750 | 9,998 | 12,277 | 22,275 | 252.0 |
| | 소 계 | | 5,270 | 160,389 | 66,726 | 75,952 | 142,678 | |
| 2015년 (5개) | 나사렛대 | '17.09. | 298 | 7,720 | 1,768 | 4,097 | 5,865 | 224.4 |
| | 대경대(경산) | '18.03. | 312 | 9,877 | 3,636 | 4,758 | 8,394 | 212.4 |
| | 영남이공대 | '17.05. | 304 | 9,669 | 3,571 | 5,130 | 8,701 | 246.0 |
| | 송원대 | '16.04. | 210 | 6,450 | 2,365 | 3,385 | 5,750 | 222.0 |
| | 신한대(의정부) | '17.09. | 196 | 6,490 | 2,494 | 3,346 | 5,840 | 241.7 |
| | 소 계 | | 1,320 | 40,206 | 13,384 | 20,716 | 34,550 | |
| 2016년 (6개) | 한동대 2차 | '20.03. | 286 | 8,900 | 3,650 | 4,360 | 8,010 | 204.3 |
| | 호서대 | '21.03. | 800 | 32,400 | 11,077 | 15,723 | 26,800 | 253.6 |
| | 상명대 | '17.03. | 164 | 3,907 | 1,716 | 1,791 | 3,507 | 240.0 |
| | 영남이공대(2차) | '20.03. | 602 | 20,874 | 7,914 | 10,872 | 18,786 | 246.0 |
| | 전주비전대 | '18.03. | 306 | 10,110 | 2,730 | 5,358 | 8,088 | 231.0 |
| | 한성대 | '19.03. | 326 | 10,184 | 4,289 | 4,876 | 9,165 | 254.7 |
| | 소 계 | | 2,484 | 86,375 | 31,376 | 42,980 | 74,356 | |
| 2017년 (4개) | 인천재능대 | '19.03. | 300 | 11,480 | 4,378 | 5,852 | 10,230 | 사업 종료 |
| | 원광보건대 | '18.03. | 350 | 10,859 | 4,877 | 4,896 | 9,773 | 208.0 |

| 지원 연도 | 학 교 명 | 개관 (예정) 연도 | 수용인원 | 총 사업비 | 사학진흥기금 융자액(백만 원) | | | 기숙사비** (월, 메인실) |
|---|---|---|---|---|---|---|---|---|
| | | | | | 공자기금 | 주택기금 | 합계 | |
| 합 계 | | | 23,043 | 737,527 | 210,830 | 441,480 | 652,310 | |
| | 신한대(동두천) | '19.03. | 398 | 9,090 | 4,090 | 4,090 | 8,180 | 198.0 |
| | 수성대 | '19.03. | 411 | 12,000 | 5,358 | 5,442 | 10,800 | 242.5 |
| | 소 계 | | 1,459 | 43,429 | 18,703 | 20,280 | 38,983 | |
| 2018년 (3개) | 대구한의대(2차) | '21.03. | 501 | 20,598 | - | 18,535 | 18,535 | 255.8 |
| | 대전보건대 | '20.09. | 164 | 7,100 | - | 6,390 | 6,390 | 237.0 |
| | 대구대 | '21.03. | 600 | 23,000 | - | 16,100 | 16,100 | 220.0 |
| | 소 계 | | 1,265 | 50,698 | - | 41,025 | 41,025 | |
| 2019년 (3개) | 상지대 | '23.03. | 902 | 30,634 | 3,064* | 27,570 | 30,634 | 239.8 |
| | 제주관광대(2차) | '21.09. | 316 | 10,946 | - | 9,851 | 9,851 | 256.0 |
| | 극동대 | '23.03. | 500 | 16,728 | 1,673* | 15,055 | 16,728 | 240.0 |
| | 소 계 | | 1,718 | 58,308 | 4,737 | 52,476 | 57,213 | |
| 2020년 (1개) | 대경대(남양주) | ('25.03.) | 252 | 8,906 | - | 8,015 | 8,015 | 240.0 |
| | 소 계 | | 252 | 8,906 | - | 8,015 | 8,015 | |
| 2021년 (2개) | 동아보건대 | ('24.03.) | 250 | 9,455 | - | 8,510 | 8,510 | 246.0 |
| | 대진대 | ('25.09.) | 700 | 27,080 | 2,708 | 24,372 | 27,080 | 288.0 |
| | 소 계 | | 950 | 36,535 | 2,708 | 32,882 | 35,590 | |
| 2022년 (3개) | 동남보건대 | ('24.09.) | 412 | 15,210 | - | 13,689 | 13,689 | 257.0 |
| | 경인여대 | ('25.03) | 403 | 20,940 | - | 16,904 | 16,904 | 260.0 |
| | 용인대 | ('25.03) | 400 | 19,595 | - | 17,635 | 17,635 | 270.0 |
| | 소 계 | | 1,215 | 55,745 | - | 48,228 | 48,228 | |
| 2023년 (2개) | 아주대 | ('27.03) | 990 | 53,009 | - | 47,708 | 47,708 | 320.0 |
| | 인하대 | ('27.03) | 1,810 | 86,194 | - | 86,194 | 86,194 | 333.0 |
| | 소계 | | 2,800 | 139,203 | - | 133,902 | 133,902 | |

자료: 행정안전부

## [행복기숙사(연합) 현황(2023년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천 원]

| 지원 연도 | 사업명 | 개관 (예정) 연도 | 수용 규모 | 총사업비 | 국고 보조금 | 사학진흥 기금 융자액 | 기숙사비 (월, 2인1실) | 비고 |
|---|---|---|---|---|---|---|---|---|
| 2012년 | 홍제 | '14.03. | 516 | 15,848 | - | 15,848 | 299.1 | 국유지 |
| 2014년 | 부경대 | '17.03. | 1,528 | 41,682 | 4,168 | 37,514 | 220.0 | 국유지(국립대) |
| 2015년 | 동소문 | '23.09. | 751 | 39,992 | - | 39,992 | 342.9 | 국유지 |
| 2016년 | 천안 | '20.03. | 593 | 16,359 | - | 16,359 | 267.0 | 공유지 |
| 2018년 | 대구 | '23.03. | 1,000 | 44,800 | 13,800 | 31,000 | 240.0 | 공유지 |
| 2019년 | 대구교대 | ('25.03.) | 900 | 32,006 | - | 32,006 | 240.0 | 국유지(국립대) |
| 2019년 | 부경대 2차 | ('24.03.) | 1,000 | 35,425 | - | 35,425 | 200.0 | 국유지(국립대) |
| 2020년 | 한국체육대 | ('25.03.) | 700 | 25,382 | - | 25,382 | 260.0 | 국유지(국립대) |

| | | | | | | | | |
|---|---|---|---|---|---|---|---|---|
| 2020년 | 서울과학기술대 | (‘25.03.) | 1,000 | 34,667 | - | 34,667 | 250.0 | 국유지(국립대) |
| 2022년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 | (‘24.09.) | 500 | 22,175 | - | 22,175 | 270.0 | 공유지 |
| | 인천대 | (‘25.09.) | 900 | 43,630 | - | 43,630 | 280.0 | 국유지(국립대) |
| **총 계** | | | **8,960** | **351,966** | **17,968** | **333,998** | |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복기숙사(사립) 및 행복기숙사(연합)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됨으로써 진행중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10억 3천만원, 연평균 재산세는 11억 1천만원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0 | 6 | 7 | 5 | 3 | 6.2 |
| | 감면 금액 | 1,693,298 | 771,125 | 1,706,340 | 61,448 | 917,709 | 1,029,984 |
| 재산세 | 감면 건수 | 239 | 123 | 123 | 97 | 95 | 135.4 |
| | 감면 금액 | 998,238 | 1,157,774 | 1,232,607 | 1,086,825 | 1,066,482 | 1,108,385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학교 내·외에 민간투자를 활용한 저렴한 기숙사 확충 및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 조항은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Ⅸ)의원안에 따라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79.4억원(연평균 2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141],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학교 등 기숙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39.8억원(연평균 2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42].

### (2)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의 감면 연장

개정안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안 제42조제2항).

---

14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4.)
14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 --- |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br>③·④ (생 략)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br>----------<br>----------<br>----------<br>----------<br>----------<br>----------<br>----------<br>----------2029년----------<br>----------<br>----------<br>------.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장비 등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6,700만원, 연평균 재산세는 2,500만원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2 | 33 | 33 | 27 | 38 | 32.6 |
| | 감면 금액 | 82,753 | 72,238 | 52,426 | 38,106 | 88,292 | 66,763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28 | 133 | 135 | 132 | 136 | 132.8 |
| | 감면 금액 | 26,227 | 25,988 | 27,679 | 24,658 | 22,162 | 25,343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교육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세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학생들의 실험·실습용 항공기와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억원(연평균 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43].

14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27. 평생교육단체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연장[윤준병(Ⅳ, 2203225), 정성국의원안 제43조제3항]

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성국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윤준병(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 현 행 | 정성국의원안 |
|---|---|
|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②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
|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 ③ ----------2027년 12월 31일---------- |

| | |
|---|---|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br>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br>④ (생 략) | ----------<br>----------<br>----------<br>----------<br>----------.<br>1.·2. (현행과 같음)<br>**※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43③)**<br>**- 윤준병(Ⅳ)의원안 : 5년(~2029년)**<br>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제3항의 감면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8조[144]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45] 등이 있음.

144)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145) **「평생교육법」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평생교육단체가 안정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풍요로는 삶을 향유하고, 직업능력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8,100만원, 연평균 재산세는 4,600만원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1 | 5 | 2 | 1 | 2 |
| | 감면 금액 | - | 40,000 | 288,255 | 65,684 | 13,543 | 81,496 |
| 재산세 | 감면 건수 | - | 25 | 14 | 14 | 28 | 16 |
| | 감면 금액 | - | 111,365 | 109,918 | 2,387 | 8,168 | 46,368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Ⅳ)의원안, 정성국의원안에 따라 평생교육단체가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최근 5년간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적용기한이 3년 또는 5년 연장되더라도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되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146]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됨[147].

14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147) 정성국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23.),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28.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연장

[윤준병(Ⅳ, 2203225)의원안 제44조제1항제2호·제2항·제4항, 정성국의원안 제44조제1항제2호·제2항]

### (1)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성국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윤준병(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148]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br>1. (생 략)<br>2.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2029년 12월 31일----------<br>---------- |

| | |
|---|---|
|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br>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br>--------.<br>가.·나. (현행과 같음)<br><br>**※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44①)**<br>**- 정성국의원안 : 3년(~2027년)**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 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음.

평생교육시설은 2023년 기준 4,663개 기관이 약 1,757만명의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20만개를 제공하고 있음.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현황(2023년 기준)]

(단위: 개, 명)

| 구분 | 시설유형 | 근거 (평생교육법) | 운영현황 | | | | |
|---|---|---|---|---|---|---|---|
| | | | 기관 | 프로그램 | 학습자 | 교원 | 사무원 |
| 학력 인정 ('24.4) |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 제31조 | 41 | - | 17,633 | 862 | 152 |
| |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 제32조 | 8 | 6 | 371 | 1 | 9 |
| |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 제33조 | 영남 사이버 | 8개 학과 | 943 | 49 | 14 |
| | | | 세계 사이버 | 14개 학과 | 1,828 | 127 | 31 |
| 학력 미인정 ('23.1) |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 | 제31조 | 95 | - | 4,644 | 552 | 180 |
|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제33조 (시행령 제48조) | 1,237 | 94,047 | 15,146,472 | 18,337 | 7,096 |
|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5조 | 377 | 67,192 | 811,738 | 16,822 | 1,649 |
|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6조 | 408 | 3,203 | 108,092 | 2,621 | 1,159 |
|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7조 | 1,528 | 9,137 | 347,581 | 6,612 | 4,453 |
|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 제38조 | 539 | 7,505 | 462,769 | 5,453 | 2,338 |
|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제30조 | 428 | 21,155 | 668,521 | 14,082 | 1,987 |

자료: 행정안전부,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

개정안을 통해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평생교육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국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으며 문화적 측면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평생교육시설에 사용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연간 5,435만원~5억 8,814만원이 감면되었고, 재산세는 8,263만원~1억 7,251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12 | 12 | 10 | 4 |
| | 감면 금액 | - | 588,140 | 582,984 | 233,728 | 54,348 |
| 재산세 | 감면 건수 | - | 144 | 177 | 177 | 140 |
| | 감면 금액 | - | 82,632 | 172,511 | 162,451 | 122,247 |

자료: 행정안전부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활성화 지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성국의원안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4억원(연평균 4.7

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149],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가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2.7억원(연평균 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50].

### (2) 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정성국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윤준병(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br>----------<br>----------<br>----------<br>----------<br>----------<br>----------2029년 12월 31일----------.<br>**※ 전공대학이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 |

14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23.)
15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 |
|---|---|
| | 득세, 재산세 경감(§44②)<br>- 정성국의원안 : 3년(~2027년) |
|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br>가. ~ 다. (생 략)[151]<br>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br>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 | 1. ~ 3. (현행과 같음) |

| | |
|---|---|
| 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전공대학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여 운영되는 것임.

전공대학이 평생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와 평생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을 감면함으로써 전공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② (생 략)
1. (생 략)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23년 4월 기준 전공대학은 3곳이 설치되어 있고, 3곳의 전공대학에서 21,140명의 재학생이 학습을 하고 있음.

**[전공대학 평생교육시설의 현황(2023. 4. 기준)]**

(단위: 개, 명)

| 전공대학명(위치) | 계열 | 전공수 | 재학생수 |
|---|---|---|---|
| 국제예술대학교 (서울 논현동) | 예체능 | 2 | 622 |
| 백석예술대학교 (서울 방배동) | 예체능 | 6 | 4,914 |
| | 인문사회 | 7 | 1,534 |
| | 자연과학 | 1 | 526 |
| | 소계 | 14 | 6,974 |
| 정화예술대학교 (서울 명동) | 예체능 | 10 | 3,196 |
| | 인문사회 | 1 | 8 |
| | 자연과학 | 1 | 81 |
| | 소계 | 12 | 3,285 |
| 계 | | 54 | 21,140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공대학이 2023년 감면받은 취득세는 13억 8,300만원, 재산세는 7억 9,3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700만원, 주민세 사업소분은 약 1,300만원, 주민세 종업원분은 1억 1,700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등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 | - | - | 3 |
| | 감면 금액 | - | - | - | - | 1,383,244 |
| 재산세 | 감면 건수 | - | - | - | - | 260 |
| | 감면 금액 | - | - | - | - | 793,005 |
| 지역자원 시설세 | 감면 건수 | - | - | - | - | 86 |
| | 감면 금액 | - | - | - | - | 26,773 |
| 등록면허세 | 감면 건수 | - | - | - | - | - |
| | 감면 금액 | - | - | - | - | - |
| 주민세 사업소분 | 감면 건수 | - | - | - | - | 2 |
| | 감면 금액 | - | - | - | - | 12.668 |
| 주민세 종업원분 | 감면 건수 | - | - | - | - | 17 |
| | 감면 금액 | - | - | - | - | 116,953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활성화 지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성국의원안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1.5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152], 윤준병의원안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2.5억원(연평균 1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53].

### (3)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개정안은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br>④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br>④ ----------<br>----------<br>----------<br>----------<br>------2029년 12월 31일------<br>----------<br>----------<br>---------- |

15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23.)
15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 |
|---|---|
|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br>----------<br>-------2029년 12월 31일-----<br>----------.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공공직업훈련시설[154]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공단, 근로복지공단)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고용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로서 국민이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직업훈련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총 92개가 운영중임. 직업훈련시설에는 폴리텍대학 40개소(고용부), 교도소·소년원 38개소(법무부), 직업능력개발원 5개소(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술교육원 7개소(서울·경기·부산) 등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공공직업훈련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해당 시설에서 국민들이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15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2023년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1억 6,000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 | - | - | - |
| | 감면 금액 | - | - | - | - | - |
| 재산세 | 감면 건수 | - | - | - | - | 27 |
| | 감면 금액 | - | - | - | - | 159,628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할 경우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

지만 제도가 시행된 2021년 이후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실적이 없어 이전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시, 적용기한이 5년 연장되더라도 예상되는 세수효과가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추계되어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155]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됨[156].

155)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국회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이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156) 정성국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23.),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29. 산림교육체육시설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면제 특례 신설(인요한의원안 제44조의3 신설)

개정안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 현 행 | 인요한의원안 |
| --- | --- |
| <신 설> | 제44조의3(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감면) 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이 조에서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3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 | |
|---|---|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br>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br>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br>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개정안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감면의 대상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임..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157]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

157)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사 등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산림 또는 유아교육 분야의 대학 또는 산림교육을 위한 비영리단체 등이 지정자격이 있으며, 현재 61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61개 기관 중 숲해설가 양성기관은 32개,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은 19개,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은 10개임[158].

유아숲 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지조건, 규모, 인력을 충족해야 등록이 될 수 있고 현재 전국에 464개소가 있음[159]. 이 중 국립은 85개, 공립은 362개 사립은 17개가 있음.

산림교육센터는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을 실시하고,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총 23개소가 있고[160],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161]에 따라 설립된 법

---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숲해설가**: 국민이 산림문화·휴양(「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휴양을 말한다)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다. 숲길등산지도사: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교육하는 사람
3.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58)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교육 > 산림교육자료실 > 산림교육 시설 및 단체 > 유아숲체험원 조성현황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1200&mn=AR02_04_05_02

159)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교육 > 산림교육전문가/프로그램

160) 산림청 홈페이지 > 분야별 산림정보 > 산림교육 > 산림교육자료실 > 산림교육 시설 및 단체 > 산림교육센터 조성현황

161)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한국숲사랑청소년단)** ① 청소년에게 산림에 대

인으로 청소년 산림교육·산림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함.

[산림교육체험시설 현황 및 지정요건]

| 구분 | 대상 | 지정현황 | 비고 |
|---|---|---|---|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 전문가 | 61개 | 숲해설가 양성기관: 32개<br>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 19개<br>숲길등산지도사 양성기관: 10개 |
| **유아숲 체험원** | 유아 | 464개 | 국립: 85개<br>공립: 362<br>사립: 17개 |
| **산림교육센터** | 일반인 | 23개 | |
| **한국숲사랑청소년단** | 청소년 | 1개 | |

자료: 산림청 홈페이지의 내용 정리

개정안을 통해 산림교육체험시설에 대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 조항이 신설되면 해당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유아, 청소년, 일반인이 숲을 가까이 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자,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2024년 예산에는 세부사업 '산림교육치유활성화'(1743-302)에 유아숲 체험원 신규조성(8억 8,800만원), 안전정

---

한 올바른 이해와 산림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을 설립한다.
②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비(15억 5,000만원),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17억 4,500만원)[162] 등이 포함되어 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제7호[163]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산림교육체험시설은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인의 체험·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신설은 산림 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하 '산림교육체험시설'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할 경우 지방세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산림교육체험시설의 부동산 규모 및 가액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164]

---

162) 산림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에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지원 예산 4억 2,300만원이 있음.

16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16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11. 5.)

## 30.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이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정성국의원안 제45조제1항, 제2항)

### (1) 학술단체에 대한 감면 연장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 현 행 | 정성국의원안 |
|---|---|
|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165]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 ----------<br>----------.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6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학술단체는 학술 연구의 촉진과 발전을 목적으로 조직된 학자, 연구자 및 후원자의 단체로서 각종 학회나 연구집단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학회, 대학부설연구소 및 일반기관 등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총칭함[166].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10,532개의 학술단체(학회, 대학부설연구소 및 일반기관)이 있음. 이 중 2,640개(25%)가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음.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166)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이란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탐구하여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생산·발전된 지식을 발표하며 전달하는 학문의 모든 분야 및 과정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4. "**학술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그 밖에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중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단체
5. "연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社內大學)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원
다. 제2호가목 및 다목의 부설연구소 및 제3호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라.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3조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2조에 따라 학술활동 또는 예술창작활동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 및 예술가
마.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수 중인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바. 대학·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외국의 대학·연구기관에 소속된 교원 및 연구원
사.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인정한 사람

[학술단체 현황(2024.3.23.기준)]

(단위: 개)

| 구분 | 인문사회분야 | | | | | 과학기술분야 | | | | | 기타 | 계 |
|---|---|---|---|---|---|---|---|---|---|---|---|---|
| | 인문 | 사회과학 | 예술체육 | 복합학 | 계 | 자연과학 | 공학 | 의약학 | 농수해양 | 계 | | |
| 학회 | 844 | 1,509 | 330 | 297 | 2,980 | 208 | 320 | 603 | 99 | 1,230 | 3 | 4,213 |
| 대학부설연구소 | 817 | 1,571 | 383 | 234 | 3,005 | 671 | 1628 | 644 | 192 | 3,135 | 0 | 6,140 |
| 일반기관 | 20 | 78 | 6 | 11 | 115 | 9 | 4 | 3 | 1 | 17 | 47 | 179 |
| 계 | 1,681 | 3,158 | 719 | 542 | 6,100 | 888 | 1,952 | 1,250 | 292 | 4,382 | 50 | 10,532 |

자료: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통계정보>기관(학술지)통계

학술단체의 사업에는 연구 진행,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자료 수집 및 국제학술교류 등이 있음.

개정안을 통해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학술단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술연구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28억 9천만원이 감면되었고, 연평균 재산세는 57억 2천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04 | 56 | 70 | 64 | 53 | 69 |
| | 감면 금액 | 5,008,017 | 1,923,917 | 3,709,954 | 2,095,695 | 1,639,345 | 2,875,385 |
| 재산세 | 감면 건수 | 3,648 | 1,228 | 1,242 | 1,183 | 1,233 | 1707 |
| | 감면 금액 | 9,967,576 | 4,740,217 | 5,035,583 | 4,650,858 | 4,204,296 | 5,719,706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학술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되고,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성국의원안에 따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222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67].

### (2)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연장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16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23.)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 현 행 | 정성국의원안 |
| --- | --- |
|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br>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br>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br>③ (생 략) |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1.·2. (현행과 같음)<br>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의 감면대상인 장학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면서, 학생 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168].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의 장학법인은 49개가 있고, 시·도 교육감 소관의 장학법인은 2,919개임.

장학법인은 기본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장학법인의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지급될 장학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장학법인이 안정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장학사업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제1호에 따라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평균 취득세 3억 8천만원, 연평균 재산세 3억 8천만원이 감면되었고, 제2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평균 취득세 25억 1천

168)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646면, 삼일인포마인, 2022

만원, 연평균 재산세 42억 9천만원이 감면되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재산세 경감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장학사업 직접사용 1호 | 취득세 | 감면건수 | - | 4 | 6 | 9 | 5 | 5 |
| | | 감면금액 | - | 152,236 | 1,236,144 | 68,077 | 451,126 | 381,517 |
| | 재산세 | 감면건수 | - | 609 | 792 | 812 | 825 | 608 |
| | | 감면금액 | - | 509,380 | 423,822 | 461,133 | 498,836 | 378,634 |
| 임대부동산 2호 | 취득세 | 감면건수 | - | 45 | 66 | 39 | 29 | 36 |
| | | 감면금액 | - | 2,113,242 | 6,669,584 | 2,082,381 | 1,687,325 | 2,510,506 |
| | 재산세 | 감면건수 | - | 2,069 | 2,235 | 2,434 | 2,450 | 1,838 |
| | | 감면금액 | - | 5,032,328 | 5,425,196 | 5,646,330 | 5,327,558 | 4,286,282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장학법인의 우수한 지역 인재 육성 및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 등록금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장학법인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336억원(연평균 11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69].

## 31.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연장[서영교(Ⅷ,2201624), 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제47조의4제3항]

개정안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Ⅷ)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윤준병(Ⅳ)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제3항).

| 현 행 | 서영교(Ⅷ)의원안 |
|---|---|
|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 ② (생 략)<br>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17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에 대한 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 ----------<br>----------<br>----------.<br>**※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47조의4③)**<br>**- 윤준병의원안 : 5년(~2029년)** |

16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23.)

| 부 칙 |
|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제3항의 감면 요건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171]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여 내진 안전성을 증진하고,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토안전관리원이 인증기관임.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대상은 생활속에서 접하고 이용하는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공공·민간, 기존·신규시설물을 모두 포함함. 인증 절차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한 이후 인증기관에 심사를 신청하고, 인증서·명판을 취득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절차]




자료: 행정안전부

17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17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시설물(이하 “지진안전인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현황은 357건임. 이 중 업무시설은 124건, 주택 57건, 노유자시설 45건, 의료시설 28건, 교육시설 26건, 기타 87건임. 연도별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에 42건, 2020년 109건, 2021년 90건, 2022년 70건, 2023년 56건이 인증됨. 인증된 건물 중 공공 건물은 120건, 민간건축물은 247건임.

**[건물 종류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현황]**

| 구분 | 업무시설 | 주택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시설 | 기타 | 합계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124건 | 57건 | 45건 | 28건 | 26건 | 87건 | 367건 |

자료: 행정안전부

**[건물 종류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현황]**

|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합계 |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42 | 109 | 90 | 70 | 56 | 367건 |

자료: 행정안전부

개정안을 통해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축건물 중에서 지진안전 인증건의 수가 증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행정안전부는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의 60%를 지원하고 있고,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은 12억 9,600만원임. 이와 관련하

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172]에서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취득세 감면액을 살펴보면, 2021년 2천만원, 2022년 5천만원이 감면되어 평균적으로 3천만원이 감면됨.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지진에 안전한지 여부 확인과 취약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인증제 도입(2019년, 공공 2013년)의 초기인 점,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의 유인을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고,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Ⅷ)의원안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0.9억원(연평균 0.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173],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

17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17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연평균 0.3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74].

17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3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김선교의원안 제57조의2)

### (1) 법인 간 합병시 취득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1항).

| 현 행 | 김선교의원안 |
|---|---|
|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175]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176]에 해당하 |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2027년 12월 31일----<br>----------<br>----------<br>----------<br>----------<br>----------<br>----------<br>----------<br>----------<br>----------<br>---------- |

| | |
|---|---|
|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17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br>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178]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br>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179]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br>----------<br>------. ----------<br>----------<br>----------<br>----------<br>----------<br>----------<br>----------.<br>1.·2.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75) 참고로, 2015. 12. 29.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적격합병의 요건과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법인의 합병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과 관련된 특례요건이나 사후관리규정이 모호하여 합병기준에 대한 적용혼선이 발생했기 때문임(출처: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76면, 삼일인포마인, 2022)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8. 12. 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176)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1.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유물·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177)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기업 간의 합병은 2개 이상의 기업이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정성 확보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지만 취득의 요건에 해당되는 합병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임[1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결합(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기업이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업과 결합하는 경우 등)의 수를 집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동향보고」을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결

---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178)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179)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삭제 <2023. 3. 14.>
2. 골프장: (생 략)
3. 고급주택: (생 략)
4. 고급오락장: (생 략)
5. 고급선박: (생 략)

180)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76면, 삼일인포마인, 2022

합[181] 심사건수는 평균 647.88건임. 기업결합 심사가 700건을 초과한 시기는 2000년(703건), 2004년(749건), 2006년(744건), 2007년(857건), 2018년(702건), 2019년(766건), 2020년(865건), 2021년(1,113건[182]), 2022년(1,027건)이며, 이 중 2021년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많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모두 700건 이상임[183].

[기업결합 심사건수]

| 연도 | 1997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건수 | 418 | 486 | 557 | 703 | 644 | 602 | 589 | 749 | 658 |
| 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건수 | 744 | 857 | 550 | 413 | 499 | 543 | 651 | 585 | 571 |
| 연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건수 | 699 | 646 | 668 | 702 | 766 | 865 | 1,113 | 1,027 | 188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나라지표

181) 기업결합의 유형에는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기업간 결합), 수직결합(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결합), 혼합결합(수평 또는 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이 있음.
e-나라지표 기업결합 동향(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74#)

182) 2021년 기업결합 건수 1,113건 중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54건(64.5조원)이고,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 결합은 159건(금액 284.5조원)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3. 30. 보도자료 "2021년 기업결합 신고 역대 최고치(1,113건)기록 - 전기차·신재생에너지·폐기물 등 친환경 인수합병, 사무투자 합자회사 설립 활발 -

18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안을 통해 합병 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수·합병 시 발생하는 세금부담의 완화로 기업간 인수·합병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184].

한편, 2023년 3월 14일 법 개정 전의 (구)「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은 무상취득의 유형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세율 3.5%가 적용되었으나[185], 2023년 3월 14일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11조제5항[186]은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유상승계로 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취득세의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427억원이 감면되었음.

---

184) 참고로, 금융위원회가 2023년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인수·합병은 규모·범위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경영효율화에 기여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및 사업 다각화를 촉진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185) 정승영, “합병 및 분할에 대한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방안” 18면,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동흔, 최선재, 「2022 핵심실무 지방세」 개정21판 627면, 조세통람

186)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 나. (생 략)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 6. (생 략)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973 | 1,294 | 6,959 | 1,225 | 1,629 | 2,616 |
| | 감면 금액 | 50,232,829 | 33,586,052 | 34,942,765 | 46,665,276 | 47,986,774 | 42,682,739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합병 등 법인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합 하여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5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296억원(연평균 4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187].

18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6.)

### (2) 현물출자 받은 재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한 감면 연장

개정안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제1호),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재산(제2호),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제3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취득재산(제5호), 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 재산(제7호)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3항).

| 현 행 | 김선교의원안 |
|---|---|
|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br>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br>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br>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br>③ ----------2027년 12월 31일----------. 1. ~ 7. (현행과 같음) |

호[188](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189]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19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191](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192]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193]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삭제 <2021. 12. 28.>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194]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 | |
|---|---|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br>6. 삭제 <2018. 12. 24.><br>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88)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

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189)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0)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지 아니한다.

191) **「법인세법」**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192)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는 「국유재산법」 제60조[195]에 따라 정부가 정부출자기업에 현물출자한 재산을 정부출자

---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193)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 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94)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 ⑦ (생 략)

195)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기업이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으로 정부출자기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함[196]. 감면의 대상인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별표 1] 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32개의 기관을 규정하고 있음[197].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2호는 법인의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사업분야별로 전문화하여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 대한 세제지원임[198].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는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법인의 재산을 현물출자로 받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감면으로, 2014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으나 2014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임[199].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5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2014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

---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6)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94면, 삼일인포마인, 2022

197)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부출자기업체”란 정부가 출자하였거나 출자할 기업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를 말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198)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798면, 삼일인포마인, 2022

199)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809면, 삼일인포마인, 2022

법」 제12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었으나 2014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했고, 이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규정임[2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7호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는 201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되었으나 2015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201].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정부가 현물출자한 재산을 취득한 정부출자기업, 법인의 분할로 재산을 취득한 기업,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기업, 상법상 회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기업의 취득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현물출자, 법인 분할, 중소기업 간 통합, 조직 변경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의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에 21억 6천만원, 2022년 4억 2천만원, 2023년 2억 9천만원이 감면됨.

200)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819면, 삼일인포마인, 2022
201)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834면·835면, 삼일인포마인, 20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 | 31 | 1 | 1 |
| | 감면 금액 | - | - | 2,055,387 | 424,691 | 288,019 |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2호(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1,587억원의 취득세가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912 | 2,719 | 1,366 | 1,090 | 1,154 | 2,048 |
| | 감면 금액 | 202,515,186 | 120,769,711 | 115,757,077 | 203,322,943 | 151,367,594 | 158,746,502 |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208억원의 취득세가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5 | 73 | 30 | 60 | 55 | 56 |
| | 감면 금액 | 6,599,635 | 34,099,197 | 4,076,940 | 34,888,534 | 24,432,479 | 20,819,357 |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5호(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취득재산)의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연평균 54억원의 취득세가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5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41 | 71 | 74 | 22 | 5 | 43 |
| | 감면 금액 | 2,181,327 | 4,926,411 | 17,734,463 | 2,295,860 | 63,434 | 5,440,299 |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7호(공공기관의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시 취득 재산)의 감면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에 360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 | 5 | - | - | - |
| | 감면 금액 | 116 | 3,638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합병 등 법인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57조의2제3항에 따라 현물출자 등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5,558억원(연평균 1,8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02].

20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6.)

## 33. 해운항만 등의 지원을 위한 특례 연장[위성곤의원안 제64조제1항, 윤준병(Ⅰ,2203081)의원안 제64조제1항·제2항·제3항]

### (1)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연장

개정안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위성곤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윤준병(Ⅰ)의원안 제64조제1항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 현 행 | 위성곤의원안 |
|---|---|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br>----------<br>----------2027년 12월 31일----------<br>----------<br>----------<br>-----, ----------<br>----------<br>----------2027년 12월 31일----------. -------<br>----------<br>----------<br>----------.<br>**※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해 취득하는** |

| | |
|---|---|
| | 선박 및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64①)<br>- 윤준병(Ⅰ)의원안 : 5년(~2029년)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의 적용 대상인 국제선박은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상선으로 「국제선박등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선박을 의미함[203].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경감 규정은 1999년 도입되었는데, 이는 자국 선박의 해외 치적을 방지하고, 국적선대 확충을 통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임[204].

해양수산부의 국적선박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제선박 등록 건수는 2004년 474건에서 2024년 9월 기준 1,365척(국적선 687척,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678척)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적선박 등록현황 ]**

|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
| 국적선 | 349 | 388 | 443 | 529 | 590 | 545 | 564 |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 | 125 | 138 | 148 | 156 | 220 | 290 | 312 |
| 합계 | 474 | 526 | 591 | 685 | 810 | 835 | 876 |

203)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7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선박”이란 국제항행(國際航行)을 하는 상선(商船)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204)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2면·23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참고로, 전통적으로 해운업은 이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편의치적 제도가 자리 잡았으나, 주요 해운국들은 국가안보 및 자국 해운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함. 편의치적 제도는 해운정책, 노동, 세금 및 기타 비용 등과 관련된 국가의 여러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의 국가에서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 명의로 선박 소유권을 귀속시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관행을 의미함(김진권·홍성화, 2012)

|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국적선 | 554 | 545 | 587 | 590 | 590 | 594 | 542 |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 | 382 | 447 | 487 | 528 | 576 | 535 | 543 |
| 합계 | 936 | 992 | 1,074 | 1,118 | 1,170 | 1,113 | 1,085 |
|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9 |
| 국적선 | 568 | 581 | 583 | 623 | 662 | 683 | 687 |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 | 548 | 557 | 587 | 626 | 655 | 647 | 678 |
| 합계 | 1,116 | 1,138 | 1,170 | 1,249 | 1,317 | 1,330 | 1,365 |

자료: 해양수산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방세특례연구원의 2023년 연구자료[205]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선박 수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외치적 선박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순톤수 기준으로는 해외치적 비중이 2014년 77.2%에서 83.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나라 지배 상선 중 대형 선박의 해외치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대한민국 지배 상선 중 국적선 비중 추이]**

(단위: 척, 천 DWT, %)

| 연도 | 선박수 | | | | 톤수 | | | |
|---|---|---|---|---|---|---|---|---|
| | 국적선 | 외국적선 | 합계 | 외국적선 비중 | 국적선 | 외국적선 | 합계 | 외국적선 비중 |
| 2014 | 777 | 779 | 1,561 | 49,9 | 17,566 | 59,385 | 76,959 | 77.2 |
| 2015 | 787 | 801 | 1,597 | 50.2 | 17,198 | 61,866 | 79,083 | 78.2 |
| 2016 | 784 | 831 | 1,624 | 51.2 | 16,403 | 62,000 | 78,422 | 79.1 |
| 2017 | 778 | 863 | 1,655 | 52.1 | 14,513 | 66,089 | 80,871 | 81.7 |
| 2018 | 761 | 857 | 1,625 | 52.7 | 13,357 | 63,728 | 77,103 | 82.7 |
| 2019 | 770 | 879 | 1,656 | 53.1 | 12,391 | 64,434 | 76,841 | 83.9 |

205)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27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 | | | | | | | | |
|---|---|---|---|---|---|---|---|---|
| 2020 | 784 | 836 | 1,626 | 51.4 | 14,389 | 66,166 | 80,571 | 82.1 |
| 2021 | 796 | 836 | 1,641 | 50.9 | 15,076 | 71,099 | 86,209 | 82.5 |
| 2022 | 812 | 861 | 1,682 | 51.2 | 14,845 | 77,515 | 92,394 | 83.9 |

자료: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66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는 5년간 60건, 90억원이 경감되었고, 재산세는 5년간 24건, 2,686만원이 경감되었음.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7 | 16 | 17 | 5 | 5 | 60 |
| | 감면 금액 | 888,132 | 2,108,499 | 3,476,076 | 1,586,503 | 983,047 | 9,042,257 |
| 재산세 | 감면 건수 | 8 | 7 | 4 | 2 | 3 | 24 |
| | 감면 금액 | 6,897 | 7,392 | 3,663 | 1,880 | 7,023 | 26,855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1항과 관련되는 특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제2항[206]에 따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 면제의 근거를 정하고 있음. 동 특례 조항을 구체화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207]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제선박등록 및 제주특구등록 현황]**

| 연도 | 국제선박등록(척) | | | 제주특구등록(척) | | | |
|---|---|---|---|---|---|---|---|
| | 국적선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 | 계(A) | 국적선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BBC/HP | 계(B) | 비율 (B/A) |
| 2004 | 349 | 125 | 474 | 330 | 116 | 446 | 94 |
| 2005 | 388 | 138 | 526 | 371 | 138 | 509 | 96.7 |
| 2006 | 443 | 148 | 591 | 435 | 148 | 583 | 98.6 |

20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선박등록특구의 지정)**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무역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에 따른 무역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17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이하 "제주선박등록특구"라 한다)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제주선박등록특구의 선적항 등록 조건부 선박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은 선박을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그 취득일 이전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고 계속하여 국제선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 | | | | | |
|---|---|---|---|---|---|---|---|
| 2007 | 529 | 156 | 685 | 512 | 156 | 668 | 97.5 |
| 2008 | 590 | 220 | 810 | 575 | 224 | 799 | 97.9 |
| 2009 | 545 | 290 | 835 | 519 | 290 | 809 | 96.8 |
| 2010 | 564 | 312 | 876 | 540 | 312 | 852 | 97.2 |
| 2011 | 554 | 382 | 936 | 533 | 382 | 915 | 93.4 |
| 2012 | 545 | 447 | 992 | 514 | 447 | 961 | 96.9 |
| 2013 | 587 | 487 | 1,074 | 564 | 487 | 1,051 | 97.9 |
| 2014 | 590 | 528 | 1,118 | 572 | 528 | 1,100 | 98.4 |
| 2015 | 594 | 576 | 1,170 | 594 | 557 | 1,151 | 98.4 |
| 2016 | 578 | 535 | 1,113 | 573 | 527 | 1,100 | 98.8 |
| 2017 | 542 | 543 | 1,085 | 526 | 543 | 1,069 | 98.5 |
| 2018 | 568 | 548 | 1,116 | 556 | 548 | 1,104 | 98.9 |
| 2019 | 581 | 557 | 1,138 | 567 | 557 | 1,124 | 98.8 |
| 2020 | 583 | 587 | 1,170 | 569 | 587 | 1,156 | 98.8 |
| 2021 | 623 | 626 | 1,249 | 613 | 626 | 1,239 | 99.2 |
| 2022 | 662 | 655 | 1,317 | 647 | 655 | 1,302 | 98.9 |
| 2023 | 683 | 647 | 1,330 | 668 | 647 | 1,315 | 99 |
| 2024.9. | 687 | 678 | 1,365 | 664 | 685 | 1,349 | 99 |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국제선박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한 국적선의 해외이적 방지와 국적선사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에 공감하며,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성곤의원안에 따라 국제선박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54.4억원(연평균 18.1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08],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국제선박

20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6.)

등록을 위한 선박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9.7억원(연평균 17.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09].

### (2)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특례(윤준병(Ⅰ)의원안 제64조제2항)

개정안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211]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 현 행 | 윤준병(Ⅰ)의원안 |
|---|---|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생 략) |
|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 ② ----------<br>----------<br>----------<br>----------<br>----------<br>----------2029년----------<br>----------<br>----------<br>----------<br>---------- |

209)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2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② (생 략)

| | |
|---|---|
|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br>----------<br>----------<br>----------<br>----------<br>----------<br>----------. -------<br>----------<br>----------<br>----------. |
| 1.·2. (생 략)[210] | 1.·2. (현행과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먼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박은 「해운법」 제24조[212]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213]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한 내항화물 운송용 선박을 의미함.

이와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 연구보고서[214]에 따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경우 선사의 영세성 및 수익성 저하에 따라 선박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임. 구체적으로 2023년 기준 내항화물운송선 중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은 총 1,320척(954,924톤)으로 전체 내항화물운송선 1,921척(2,060,704톤)의 68.7%(척수 기준), 46.34%(총톤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운행 중인 노후 선박을 국제사회의 해운분야 환경규제에 부합하는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높으나 자본금 100억원 이상의 대기업군 선사는 22개로 전체 사업자의 2.7% 수준임[215].

**[ 선령별 내항운송선 현황(2023년 기준) ]**

| 선령 | 척수(척) | 척수 비율(%) | 총 톤수(G/T) | 총 톤수 비율(%) |
|---|---|---|---|---|
| 0~5년 | 121 | 6.3 | 224,593 | 10.9 |
| 5~10년 | 141 | 7.3 | 193,763 | 9.4 |
| 10~15년 | 150 | 7.8 | 310,382 | 15.1 |
| 15~20년 | 189 | 9.8 | 377,042 | 18.3 |

212)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213) **「해운법」 제33조(사업의 등록)** ①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④ (생 략)

214)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66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215) 참고로, 3000TEU급 선박을 신조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400억원임

(출처: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66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 | | | | |
|---|---|---|---|---|
| 20~25년 | 204 | 10.6 | 326,857 | 15.9 |
| 25년 이상 | 1,116 | 58.1 | 628,067 | 30.5 |
| 합계 | 1,921 | 100 | 2,060,704 | 100 |

자료: 한국해운조합(2023), “2023년도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업체”,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67면 <표Ⅳ-4>에서 재인용

개정안을 통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선령이 높은 내항운송선을 대체하는 새로운 내항운송선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2항의 적용대상인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은 「해운법」 제4조[216]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217]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원양어업선박(취득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218]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 중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선박을 의미함.

---

216) **「해운법」 제4조(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② ~ ④ (생 략)

217)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 ① (생 략)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218)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① 원양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⑫ (생 략)

외항운송선의 선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은 202척(4,890,058톤)으로 전체 외항선 1,094척(52,616,324톤)의 18.4%(척수 기준), 9.3%(총톤수 기준)을 차지하고 있음.

**[ 선령별 외항운송선 현황(2022년 기준) ]**

| 선령 | 척수(척) | 척수 비율(%) | 총 톤수(G/T) | 총 톤수 비율(%) |
|---|---|---|---|---|
| 0~5년 | 210 | 19.2 | 18,490,497 | 35.1 |
| 5~10년 | 233 | 21.3 | 12,737,753 | 24.2 |
| 10~15년 | 320 | 29.3 | 12,968,983 | 24.6 |
| 15~20년 | 129 | 11.8 | 3,529,034 | 6.7 |
| 20~25년 | 107 | 9.8 | 3,292,237 | 6.3 |
| 25년 이상 | 95 | 8.7 | 1,597,821 | 3.0 |
| 합계 | 1,094 | 100 | 52,616,325 | 100 |

자료: 한국해운협회, “2022 해사통계”,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67면 <표Ⅳ-4>에서 재인용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3년 연구보고서[219]에 따르면, 2021년 6월에 발효된 온실가스 규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외항선박에 대해 현존에너지효율지수(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및 탄소집약도지수(Carbon Intensity Indicator)의 규제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고 있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운행하고 있는 국적 외항선 649척 중 현존에너지효율지수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선박이 470척, 탄소집약도지수 D등급(다소 열위), E등급(열위)에 해당하는 선박이 234척으로 조사됨.

219) 오나래, 김수빈,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70면·71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3

개정안을 통해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외국항로 전용 선박을 운영하는 외항 운송사업자 등이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선박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는 연평균 27억 6천만원이 감면되었고, 재산세는 연평균 9억 4천만원이 감면되었음.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89 | 229 | 245 | 204 | 185 | 210 |
| | 감면 금액 | 2,248,420 | 2,094,299 | 2,498,466 | 2,213,601 | 4,767,561 | 2,764,469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448 | 1,402 | 1,325 | 1,275 | 1,246 | 1,339 |
| | 감면 금액 | 950,584 | 1,051,701 | 944,813 | 911,226 | 862,477 | 944,160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지출의 주기적 평가를 위해 일몰기한은 3년이 원칙으로 유사대상 간 형평성을 위해 원칙에 따른 일몰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한 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

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2억원(연평균 3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20].

### (3) 연안항로에 취항하는 천연가스 연료 화물용 선박에 대한 특례

(윤준병(Ⅰ)의원안 제64조제3항)

개정안은 제64조제3항은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해 대통령령[221]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3항).

| 현 행 | 윤준병(Ⅰ)의원안 |
|---|---|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br>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br>③ ----------<br>----------<br>----------<br>----------<br>-2029년----------<br>----------<br>----------<br>----------<br>----------<br>----------<br>----------. |

22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22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2항

| |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3항의 적용대상인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은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한 내항화물 운송용 선박을 의미함.

개정안을 통해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내항화물운송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내항화물운송사업자들이 천연가스 연료 선박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는 연평균 1억 4천만원이 감면되었음.

---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8 | 12 | 8 | 8 | 7 |
| | 감면 금액 | - | 133,147 | 187,411 | 152,636 | 226,713 | 139,981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제4항[222]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감면대상인 LNG 선박)은 정비하는 등 지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Ⅰ)의원안에 따라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8억원(연평균 1.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23].

---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22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3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 연장

(배준영의원안 제65조)

개정안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경감 및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또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224]으로 정하는 금액(5조원)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 동안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 행 | 배준영의원안 |
|---|---|
|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 |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br>----------<br>----------<br>----------<br>----------<br>----------2027년----------<br>----------<br>----------<br>---------- |

| | |
|---|---|
| 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br>----------<br>----------<br>----------<br>----------. -<br>----------<br>----------<br>----------<br>----------<br>----------<br>-2027년----------.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의 적용대상인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2024년 8월 기준 12개[대형항공사(FSC[225]) 2개사, 저비용항공사(LCC[226] ) 10개사]이고, 소형 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11개사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는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227]으로 사업용 항공기에 대한 지원 규정은

2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225) 대형항공사 (FSC: Full Service Carrier)

226) 저비용항공사 (LCS: Low Cost Carrier)

227)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40면, 삼일인포마인, 2022

1987년 처음 신설됨.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관련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운송 순위는 톤킬로미터 기준으로 9위임. 그리고 항공사 서비스 평가기관인 스카이트랙스(Skytrax)의 2024년 세계 최고 100개 항공사 자료에 대한항공은 세계 11위로 조사됨.

[ 우리나라 항공운송 순위 (국제민간항공기구) ]

| 구분 | | 2018년 | | 2019년 | | 2020년 | | 2021년 | | 2022년 | |
|---|---|---|---|---|---|---|---|---|---|---|---|
| | | 순위 | 실적 | 순위 | 실적 | 순위 | 실적 | 순위 | 실적 | 순위 | 실적 |
| 톤킬로미터 | | | | | | | | | | | |
| | 국내+국제선 | 6 | 28,698 | 7 | 28,941 | 5 | 16,536 | 8 | 17,697 | 9 | 20,332 |
| | 국제선 | 6 | 27,481 | 7 | 27,694 | 5 | 15,700 | 6 | 16,395 | 9 | 18,919 |
| 여객킬로미터 | | | | | | | | | | | |
| | 국내+국제선 | 13 | 178,239 | 13 | 189,826 | 19 | 41,115 | 23 | 22,638 | 21 | 67,824 |
| | 국제선 | 8 | 166,232 | 7 | 177,224 | 13 | 33,059 | 26 | 9,921 | 15 | 53,986 |
| 화물톤킬로미터 | | | | | | | | | | | |
| | 국내+국제선 | 5 | 11,591 | 5 | 10,664 | 4 | 12,457 | 4 | 15,370 | 4 | 13,741 |
| | 국제선 | 5 | 11,466 | 5 | 10,623 | 4 | 12,427 | 3 | 15,340 | 3 | 13,712 |

자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Annual Report, Air Transport Bureau
2021년 2022년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의 항공통계 자료에서 재인용
2018년~2020년 자료는 문필주, 김진아 “항공운송사업의 재무 실태 및 지방세부담 분석”(한국지방세연구원, 2023)에서 재인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항공운송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228]되는 상황에서 항공사는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국제경쟁

228)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쟁사인 중동·유럽 등 외국항공사도 기존의 대규모 기단을 기반으로

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투자[229]를 계획 중임.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악화된 항공사의 재무상황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의 항공사 세금 부담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항공사가 신규 항공기를 취득하는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투자를 지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연평균 100억원, 재산세는 연평균 30억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43 | 12 | 22 | 31 | 39 | 29 |
| | 감면 금액 | 13,237,131 | 882,553 | 672,588 | 12,393,602 | 22,922,632 | 10,021,701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99 | 150 | 123 | 173 | 149 | 159 |

항공기를 지속도입하고 사업을 확대 중임(예: 260여대를 보유한 에미레이트 항공은 300대 이상 추가 주문, 250여대를 보유한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100여대 이상 추가 주문)

229)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대 이상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임

| | | | | | | | |
|---|---|---|---|---|---|---|---|
| | 감면금액 | 1,847,299 | 1,072,491 | 1,102,561 | 6,168,760 | 4,968,305 | 3,031,883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취득·보유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통한 국내 항공사 경쟁력 강화 취지에 공감하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배준영의원안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696.8억원(연평균 23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30].

23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8. 16.)

## 35.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서영교(Ⅵ,2201547), 윤준병(Ⅱ,2203146), 조인철, 한병도(Ⅱ,2203655)의원안 제66조제3항·제4항, 박용갑의원안 제66조제4항)

### (1)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Ⅵ)·한병도(Ⅱ)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조인철의원안은 2028년까지 4년, 윤준병(Ⅱ)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66조제3항).

| 현 행 | 서영교(Ⅵ), 한병도(Ⅱ)의원안 |
|---|---|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231]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 ③ ----------. |
|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1. ----------2027년 12월 31일----------. |
|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 2. ----------2027년 12월 31일--- |

| | |
|---|---|
|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 ----------. |
| |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66③)<br>- 조인철의원안 : 4년(~2028년)<br>- 윤준병(Ⅱ)의원안 : 5년(~2029년) |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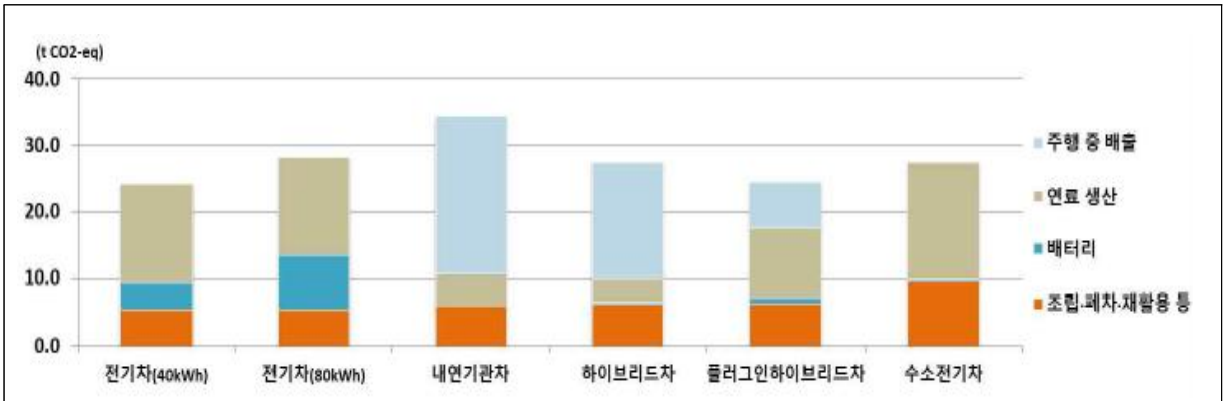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40만원 공제)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자동차의 총 수명(연료생산, 배터리제조, 주행)을 고려하면 하이브리드자동차도 전기자동차와 유사한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실현 가능한 것을 근거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병행보급 필요성을 제시함. 동 계획에서는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목표를 2025년 283

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만대(신차 판매 51%), 2030년 785만대(신차판매 83%)로 설정함.

[차종별 생애 이산화탄소 배출량(중형승용차, 10년 사용시)]




| 구분 | 합계 | 연료생산+주행 | | 자동차 제조, 폐기, 재활용 | |
|---|---|---|---|---|---|
| | | 연료생산 | 주행중 배출 | 배터리 (NMC111기준) | 조립·폐차·재활용 등 |
| 전기차(40kWh) | 22.8~24.2 | 14.8 | - | 2.6~4.0 | 5.4 |
| 전기차(80kWh) | 25.4~28.2 | 14.8 | - | 5.2~8.0 | 5.4 |
| 내연기관차 | 34.3 | 4.6 | 23.7 | - | 6.0 |
| 하이브리드차 | 27.5 | 3.4 | 17.6 | 0.3 | 6.2 |
|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 24.5 | 10.2 | 7.1 | 0.8 | 6.4 |
| 수소전기차 | 27.5 | 17.7 | - | 0.3 | 9.5 |

주: 배터리 배출량은 공정효율에 따라 상이, 전력생산 배출량은 2018년 전세계 평균 발전원별 발전량 기준, 수소연료는 개진 기준(2018년 화석연료 발전 의존도: (세계) 석탄 38%, 석유 2.9%, 가스 23.0%, (한국) 석탄 43%, 석유 2.2%, 가스 26.4%)

자료: Global EV Outlook 2020(IEA),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2면에서 재인용

[친환경차 중 하이브리드자동차 2025년, 2030년 누적보급 목표]

| 구분 | 2020년 | 2025년 | 2030년 |
|---|---|---|---|
| 하이브리드 자동차 | 67.4만대 | 150만대 | 400만대 |

자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19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약 188만대가 등록되었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목표가 150만대를 이미 달성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대)

| 연료 | 용도 |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 2023년 12월 | 2024년 9월 |
|---|---|---|---|---|---|
| 하이브리드 (휘발유 전기) | 비사업용 | 803,578 | 1,016,775 | 1,337,042 | 1,621,309 |
| | 사업용 | 67,128 | 101,831 | 141,059 | 186,625 |
| | 소계 | 870,706 | 1,118,606 | 1,478,101 | 1,807,934 |
| 하이브리드 (경유 전기) | 비사업용 | 20,569 | 35,040 | 47,605 | 54,987 |
| | 사업용 | 1,348 | 2,398 | 3,086 | 3,471 |
| | 소계 | 21,917 | 37,438 | 50,691 | 58,458 |
| 하이브리드 (LPG 전기) | 비사업용 | 15,168 | 14,025 | 12,506 | 11,304 |
| | 사업용 | 129 | 139 | 549 | 661 |
| | 소계 | 15,297 | 14,164 | 13,055 | 11,965 |
| 하이브리드 (CNG 전기) | 비사업용 | 1 | 1 | 1 | - |
| | 사업용 | 319 | 298 | 284 | 258 |
| | 소계 | 320 | 299 | 285 | 258 |
| 합계 | | 908,240 | 1,170,507 | 1,542,132 | 1,878,615 |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개정안을 통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 2030년 목표로 설정한 400만대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

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건수는 100만건이고, 감면금액은 5,985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28,629 | 153,817 | 181,359 | 230,448 | 310,680 | 1,004,933 |
| | 감면 금액 | 163,869,393 | 132,591,232 | 72,495,533 | 91,346,240 | 138,163,213 | 598,465,611 |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 여부, 정부 보급 목표와 업황, 국세 지원 추세 및 친환경차에 대한 국제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의 하이브리드차종에 대한 재설계안]**

| | |
|---|---|
| **하이브리드차**<br>☞ **감면종료** | ■**업황 지속 성장** : 최근 5년 간 연평균 40.5% 성장<br>■**세제지원 축소에도 판매량 계속 증가** : ('19)10.4만대 → ('23)39.2만대<br>■**국제적 추세 고려** : 전기·수소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중심 보조금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Ⅵ)의원안 및 한병도(Ⅱ)의원안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7,580억원(연평균 2,5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32], 조인철의원안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1조 1,580억원(연평균 2,52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233], 윤준병(Ⅱ)의원안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조 2,132억원(연평균 4,42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34].

### (2)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안 제66조제4항)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박용갑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년, 서영교(Ⅵ), 한병도(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조인철의원안은 일몰기한을 4년, 윤준병(Ⅱ)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안 제66조제4항).

| 현 행 | 서영교(Ⅵ), 한병도(Ⅱ)의원안 |
|---|---|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232) 서영교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한병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233) 조인철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234)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 | |
|---|---|
| ① ~② (생 략) |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생 략) | ③ (생 략) |
|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235]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④ ----------2027년 12월 31일----------.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66④) - 박용갑의원안 : 2년(~2026년) - 조인철의원안 : 4년(~2028년) - 윤준병(Ⅱ)의원안 : 5년(~2029년)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

23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을 정하고 있음.

정부가 2021년 2월에 발표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전기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로 정하고 있고, 수소차의 보급 목표를 2025년 20만대, 2030년 85만대로 정하고 있음.

**[ 친환경차 중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2025년, 2030년 누적보급 목표 ]**

| 구분 | 2020년 | 2025년 | 2030년 |
|---|---|---|---|
| **전기자동차** | 13.5만대 | 113만대 | 300만대 |
| **수소자동차** | 1.1만대 | 20만대 | 85만대 |

자료: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19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전기차는 약 65만대이고, 수소차는 약 4만대임. 전기차와 수소차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목표인 113만대와 20만대를 2024년 9월 기준으로 달성하지는 못함.

**[전기차, 수소차 등록 현황]**

(단위: 대)

| 연료 | 용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9월 |
|---|---|---|---|---|---|
| 전기 | **비사업용** | 180,692 | 297,505 | 426,731 | 515,879 |
| | **사업용** | 50,751 | 92,350 | 117,169 | 131,567 |
| | **합계** | 231,443 | 389,855 | 543,900 | 647,446 |

| | | | | | |
|---|---|---|---|---|---|
| 수소 | 비사업용 | 18,835 | 28,690 | 32,841 | 35,039 |
| | 사업용 | 569 | 933 | 1,417 | 1,940 |
| | 합계 | 19,404 | 29,623 | 34,258 | 36,979 |

자료: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보고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의 2025년 및 2030년 목표로 설정한 대수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감면규모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546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 제66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8,313 | 52,645 | 110,743 | 181,853 | 181,943 | 113,099 |
| | 감면 금액 | 52,212,644 | 71,039,818 | 151,207,753 | 250,228,515 | 248,256,140 | 154,588,974 |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개정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및 수소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24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공고한 대수는 전기자동차 134,490대(전기승용차 95,592대, 전기화물차 37,000대, 전기승합차 1,898대)와 수소자동차 6,849대임. 전기자동차 대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50만원에서 1,1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수소자동차에 대해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임[236].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감면목적 달성 여부, 정부 보급 목표와 업황, 국세 지원 추세 등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수소자동차는 현행대로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의 전기차종에 대한 재설계안]**

| | |
|---|---|
| **전기차**<br>☞ **2년(~'26) 연장 후 감면한도 축소('27) (140만원→100만원)** | ■**업황 지속 성장** : 최근 5년 간 연평균 50% 성장<br>■**세제지원 축소에도 판매량 계속 증가** : ('19)3.9만대 → ('23)16.8만대<br>■**최근 시장수요 급감 고려** : 전년比 전기차 내수판매 22.6% 감소('23) |
| ※ **수소차는 현행대로 3년 연장**('27.12.31.) | |

자료: 행정안전부

236) 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항목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PaymentH2CheckAction.do
무공해차 통합누리집(한국환경공단, 환경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구매 및 지원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 구매보조금 지원 항목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BuySubsidySupprtAction.do#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용갑의원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경우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년간 총 8,045억원(연평균 4,02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37], 서영교의원안 및 한병도의원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1조 3,558억원(연평균 4,5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38], 조인철의원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8년까지 4년간 총 2조 385억원(연평균 5,0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며[239], 윤준병의원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조 8,859억원(연평균 5,77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40].

237) 박용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238) 서영교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한병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239) 조인철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240)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 36. 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박용갑의원안 제66조의3 신설)

개정안은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경유 외의 자동차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100만원 면제 또는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 현 행 | 박용갑의원안 |
|---|---|
| <신 설> | 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화물차”라 한다)를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하며,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 |

| | |
|---|---|
| | 지 취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단,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
| 부 칙<br>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노후경유화물차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제1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본인의 명의로 새로운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 바 있었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와 개정안 제66조의3 비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2 | 개정안 제66조의3 |
|---|---|
|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 | 제66조의3(노후경유화물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

| | |
|---|---|
| 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화물차”라 한다)를 2024년 10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하며,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단, 노후경유화물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 구매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17년 외에도 2009년에도 시행하여 지방세 3,601억원을 감면함.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세제지원 연혁]

| 구 분 | 2009년 세제지원 | | 2017년 세제지원 | |
|---|---|---|---|---|
| | 국세 | 지방세 | 국세 | 지방세 |
| 대상 | 1999.12.31.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 | 2006.12.31.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교체 후 신차 구매 시 | |
| | | | 승용 | 승합, 화물 |
| 감면율 | 개소세 70% (상한 150만원) | 취득·등록세 70% (상한 100만원) | 개소세 70% (상한 143만원) | 취득세 50% (상한 100만원) |
| 기간 | 2009.5.~12. (8개월) | | 2016.12.5. ~2017.6. | 2017.1.~6. |
| 감면액 | 3,552억원 | 3,510억원 | 722억원 | 91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환경부는 배출가스 4등급·5등급의 경유자동차 등의 폐차시 기본보조금(50~100%)과 차량구매시 추가보조금(30~200%)으로 지급하여 차량 잔존가치 지원잔존가격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 분 | |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 지원율 | | |
|---|---|---|---|---|---|---|---|
| | | | 5등급 | 4등급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 4·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 |
|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 |
|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 |

| | | | | | |
|---|---|---|---|---|---|
| | ③덤프트럭,<br>콘크리트믹서트럭,<br>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 100% | 200%(신차)<br><br>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 |
| | 33톤 이상 | 7,900 | | |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 |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 |
| | 18톤 이상 | 12,000 | | | |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등급별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는 2024년 9월 기준 5등급은 약 22만대, 4등급은 85만대 수준임.

개정안을 통해 노후 경유차(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제7호[241]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2024년 총 18만대를 대상으로 환경부가 약 2,600억원을 국비 지원 중이고, 노후 경유차 폐차 후 신차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과거 2009년,

24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2017년에 시행하여 총 3,601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적극 추진하기 위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고,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를 설정 했으므로, 이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박용갑의원안에 따라 노후경유화물차를 폐기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차 구입 및 신규등록시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하는 경우 취득세는 2025년 179.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42].

24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 37.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한병도(Ⅱ,2203655)의원안 제67조제1항, 제2항]

### (1)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안은 경형[배기량 1천시시 미만(경형전기자동차의 경우 길이, 너비, 높이 기준만 적용)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승용자동차·승합차·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1항·제2항).

| 현 행 | 한병도(Ⅱ)의원안 |
|---|---|
|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243]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br>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br>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br>----------<br>----------<br>----------<br>----------<br>----------<br>----------2027년---<br>----------. -----<br>----------<br>----------<br>----------.<br>1.·2. (현행과 같음) |

| | |
|---|---|
|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 |
|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② ----------<br>----------<br>----------<br>----------<br>----------<br>----------<br>----------<br>----------2027년----------.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는 에너지절약형 자동차인 경형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임[244]. 경형자동차는 차량 주행에 에너지를 덜 소비하여 친환경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4년 10월 자동차기준 등록자료 통계에 따르면,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는 200만대로 등록된 자동차 2,623만대 중 약 200만대로 7.6%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중대형자동차와

2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44)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66면, 삼일인포마인, 2022

비교하여 경형자동차의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보임[245].

개정안을 통해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차량 구매자들이 경형자동차를 구매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경형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심층평가 자료에 따르면, 가구소득과 경형자동차 보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사됨[246].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958억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72,499 | 368,119 | 363,443 | 375,083 | 379,045 | 371,638 |
| | 감면 금액 | 91,276,304 | 84,114,041 | 82,387,653 | 111,580,584 | 109,759,395 | 95,823,595 |

자료: 행정안전부

245) 연합뉴스 2024년 11월 6일 기사, "'불황에 경차 인기'도 옛말…올해 연간 판매 10만대 못넘을 듯" (전략) … 올해 연간 경차 판매량은 10만대를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연간 경차 판매량이 10만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142200003
한국경제신문 2018년 12월 24일 기사, "'서민의 발' 경차가 사라지고 있다…"상품성 높여도 소용없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12246523g

246)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형자동차 보유비중은 가구소득이 300만원~399만원인 가구에서 23.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뒤를 이어 가구소득이 100만원~199만원인 가구에서 20.24%, 200만원~299만원 15.48%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과 경형자동차 보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두 번째 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보유하는 비율이 10.32%로 자동차를 2대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첫 번째 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보유하는 비율 2.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소위 세컨드카를 경형자동차로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4배인 것으로 나타남.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취득세는 40억 5천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25,293 | 24,392 | 22,391 | 15,806 | 12,766 | 20,130 |
| | 감면 금액 | 5,733,713 | 5,235,126 | 4,596,040 | 2,860,596 | 1,835,482 | 4,052,191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은 지원 목적·기간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2,988억원(연평균 94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47].

### (2)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개정안은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24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에도 불구하고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 현 행 | 한병도(Ⅱ)의원안 |
|---|---|
|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br>③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248]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량으로 한정한다. |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br>③ ----------<br>----------<br>----------<br>----------<br>----------<br>-2027년----------<br>----------<br>----------. ----<br>----------<br>----------<br>----------<br>-----.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의미함[249].

24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24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전방조종자동차 특례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면, 2001년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었던 자동차들이 승용자동차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했고, 2007년 이후부터는 현행 승용자동차세 세율로 과세가 전환되었음. 전방조종자동차의 경우 대부분 서민 생계형 자동차인 특성과 해당 자동차가 생산이 단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7년도까지 신규로 등록된 경우에만 폐차시까지 승합자동차 중 소형 일반버스 세율(대당 65,000원)을 적용하도록 2008년에 개정됨[250].

개정안을 통해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2027년까지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방조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소형 일반버스의 세율을 적용받는 전방조종자동차는 2023년 기준 550건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소형일반버스 세율 적용 건수]**

(단위: 건)

|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 건수** | 1,641 | 1,226 | 926 | 677 | 550 |

자료: 행정안전부

---

전방조종자동차의 구체적인 예로는 봉고, 베스타, 타우너, 프레지오, 그레이스가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생산이 단종됨(출처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67면, 삼일인포마인, 2022)

250)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67면, 삼일인포마인, 2022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전방조종형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원 목적·기간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3억원(연평균 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51].

251)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7.)

## 38.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연장 등

(모경종의원안 제68조제1항,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 (1)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 건설기기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항).

| 현 행 | 모경종의원안 |
|---|---|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br>1.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br>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한 자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br>----------<br>----------.<br>1.·2. (현행과 같음) |

|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는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통한 영세한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매매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임[252].

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매매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등을 보유하여 향후 판매 시 명의 이전이 수월해지는 측면이 있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는 경우 중고차의 가격 상승으로 중고차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개정안을 통해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중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자[253]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중고자동차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52)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72면, 삼일인포마인, 2022
253) 참고로 2024년 2분기 기준 자동차 매매업 종사자는 33,504명임.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자・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096억원이고, 자동차세 감면액은 연평균 576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234,094 | 1,357,590 | 1,410,235 | 1,414,279 | 1,402,633 | 1,363,766 |
| | 감면 금액 | 887,001,266 | 984,260,550 | 1,128,555,316 | 1,240,972,684 | 1,239,579,318 | 1,096,073,827 |
| 자동차세 | 감면 건수 | 1,516,256 | 1,776,342 | 1,825,567 | 1,881,976 | 1,796,064 | 1,759,241 |
| | 감면 금액 | 53,684,463 | 58,238,948 | 57,964,570 | 62,458,920 | 55,470,725 | 57,653,525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 제68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통해 영세한 중고자동차·건설기계 등 수요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 (2)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취득세 최소납부세제 적용기준 상향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의 최소납부의 예외 요건을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으로 인상하려는 것임(안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 현 행 | 모경종의원안 |
| --- | --- |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br>----------<br>----------<br>----------<br>----------<br>----------<br>----------<br>----------<br>----------<br>----------<br>----------<br>----------<br>-------.----------<br>----------<br>----------. |
|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 | 1. ----------<br>----------<br>----------<br>----------<br>----------<br>----------<br>----------<br>----------<br>----------<br>---------- |

| | |
|---|---|
|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가. --------200만원(제68조제1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 300만원)----- |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 나. (현행과 같음) |
|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2. (현행과 같음)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제1호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취득세·재산세 산출세액이 각각 200만원, 50만원 초과 시에는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최소납부세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개세주의·과세형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됨.

개정안과 같이 최소납부 적용기준 세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경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 7%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가액은 2,857만원(200만원÷0.07)에서 4,285만원(300만원÷0.07)으로 상향됨.

개정안을 통해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최소납부세액의 적용기준을 상향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등은 4,285만원 미만의 중고자동차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85%의 감면율을 적용한 세금의 납부의무도 없어지므로, 2,857만원에서 4,285만원 사이의 가격에 해당하는 중고자동차 거래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의2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예외를 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가 적용되는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제177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 체계를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제177의2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금액에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최소납부세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그 외에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 중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고매매상에 대해 최소납부 적용을 완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도 매매용 중고자동차 중 최소납부세제 적용 차량이 10% (143만대 중 14만대)에 불과한 점, 적용기준 상향 시 감면 혜택이 고가차량에 집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3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취득세 감면 연장[윤준병(Ⅱ,2203146)의원안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 (1) 여객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안 제70조제1항).

| 현 행 | 윤준병(Ⅱ)의원안 |
|---|---|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br>1.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br>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br>----------<br>----------<br>----------<br>----------<br>----------<br>----------<br>----------<br>----------<br>----------2029년----------<br>----------.<br>1. · 2.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은 서민대중교통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임[254].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버스통계편람(2023)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버스운송사업자는 544개가 있으며, 버스 44,284대를 보유하고 있음. 이 중 시내버스는 379개사, 농어촌버스 88개사, 시외버스 66개사, 고속버스 11개사가 있음.

**[버스운송사업 현황]**

(단위: 개, 대)

| |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시외버스 | 고속버스 | 합계 |
| --- | --- | --- | --- | --- | --- |
| **업체수** | 379 | 88 | 66 | 11 | 544 |
| **보유대수** | 35,560 | 2,082 | 5,066 | 1,576 | 44,284 |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255], 버스통계편람(2023) https://www.bus.or.kr/

다음으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5월 기준 전국에 개인택시는 95,416대가 등록되어 있고, 일반택시는 35,426대가 등록되어 총 13만대가 등록되어 있음.

개정안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54) 구본풍, 현기수, 이광영,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2022년판) 1090면, 삼일인포마인, 2022
255)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https://www.bus.or.kr/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버스 및 택시 업계가 새로운 자동차를 도입할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상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80억 8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44,796 | 37,936 | 35,661 | 33,960 | 32,195 | 36,910 |
| | 감면 금액 | 23,579,551 | 16,568,632 | 15,144,013 | 14,616,743 | 20,487,678 | 18,079,323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수송수단별 공공성, 지원 기간 및 정부정책 기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준병(Ⅱ)의원안에 따라 여객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67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56].

256)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 (2)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안 제70조제3항).

| 현 행 | 윤준병(Ⅱ)의원안 |
|---|---|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② (생 략)<br>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② (생 략)<br>③ ----------<br>----------<br>----------<br>----------<br>----------<br>----------<br>----------<br>----------<br>----------2029년----------<br>----------.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천연가스 버스는 압축된 천연가스 또는 액화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로, 기초 상태인 압축 천연가스(CNG)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없고, 소음 발생도 적으며, 일반 경유버스와 비교해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

수준임[257].

천연가스 버스는 도심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02년부터 보급이 시작되었고, 이후 대기개선 효과를 거두면서 활발하게 보급되었으나[258], 2018년 이후 전기버스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버스이 보급대수는 감소하고 있음[259].

**[노선버스 등록현황 추이]**

(단위: 대)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 CNG버스 | 27,085 | 27,282 | 27,238 | 26,669 | 26,982 | 27,382 | 26,989 | 26,556 | 25,797 | 24,598 |
| 경유버스 | 17,055 | 17,003 | 17,497 | 18,101 | 17,855 | 17,412 | 17,148 | 16,573 | 15,796 | 15,515 |
| 수소버스 | - | - | - | - | - | 2 | 10 | 65 | 104 | 252 |
| 전기버스 | - | - | 9 | 14 | 71 | 166 | 612 | 1,250 | 2,133 | 3,944 |

자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스신문 2024년 1월 4일 기사 “대기환경 개선 1등 공신 ‘천연가스車’ 토사구팽되나”에서 재인용

개정안을 통해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버스운송사업자들이 천연가스 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

257) 일진사, 「자동차 용어사전」, 201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659460&cid=42330&categoryId=42330
258) 서울특별시의 경우 천연가스 버스 1대당 1,850만 원까지 지원함 (출처: 서울정책아카이브)
https://www.seoulsolution.kr/ko/content/%EC%B2%9C%EC%97%B0%EA%B0%80%EC%8A%A4%EC%9E%90%EB%8F%99%EC%B0%A8%EB%B3%B4%EA%B8%89
259) 가스신문 2024년 1월 4일 기사 “대기환경 개선 1등 공신 ‘천연가스車’ 토사구팽되나”
동 기사에서는 전기·수소차 일변도인 정부 정책방향 전환하고, 경유버스 대폐차가 우선이며, 외국산 저가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재검토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https://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603

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06억 5천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3,464 | 3,230 | 1,948 | 1,891 | 1,392 | 2,385 |
| | 감면 금액 | 16,761,208 | 14,919,338 | 7,569,615 | 7,982,075 | 6,001,528 | 10,646,753 |

자료: 행정안전부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수송수단별 공공성, 지원 기간 및 정부정책 기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감면은 정책 환경 변화,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년 단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73억원(연평균 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60].

26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 (3)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개정안 제70조제4항).

| 현 행 | 윤준병(Ⅱ)의원안 |
|---|---|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③ (생 략)<br>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② (생 략)<br>④ ----------<br>----------<br>----------<br>----------<br>----------<br>----------<br>----------<br>----------<br>----------<br>----------<br>----------<br>----------<br>---------2029년----------<br>----------.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전기버스는 버스 형태의 전기 자동차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

스가 발생되지 않고[261], 수소버스는 버스 형태의 수소 자동차로 운전 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음.

개정안을 통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전기버스,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262] 등에 따라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도입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방세 특례를 중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263].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161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910 | 1,163 | 2,000 | 2,521 | 1,319 |
| | 감면 금액 | - | 10,930,892 | 14,075,462 | 23,610,354 | 31,914,099 | 16,106,161 |

261)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82177&cid=43667&categoryId=43667

26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6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자료: 행정안전부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버스 등 대중교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수송수단별 공공성, 지원 기간 및 정부정책 기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세 감면은 정책 환경 변화,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3년 단위의 일몰 기한을 설정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전기·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5,821억원(연평균 1,1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64].

26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3.)

## 4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서영교(Ⅱ, 2201333), 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제74조의2)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법 제74조의2제1항)[265], 경감(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가목·나목)[266] 및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Ⅱ)의원안은 2027년까지 3년, 윤준병(Ⅳ)의원안은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 현 행 | 서영교(Ⅱ)의원안 |
|---|---|
|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267]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26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제1항 :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 이하인 부분에 대해 취득세 면제

26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제3항 가목, 나목: 부동산의 소유자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의 75% 또는 50% 감경

| | |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268]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269]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270]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2027년 12월 31일----------.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종전가액 이하 부분) 취득세 면제(§74의2①)<br>- 윤준병의원안 : 5년(~2029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
|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③ ----------2027년 12월 31일----------. ----------<br>**※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경감 및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1가구 1주택자, 종전가액 초과 부분) 취득세 경감(§74의2③)**<br>**- 윤준병의원안 : 5년(~2029년)** |
|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br>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 1. ~ 3. (현행과 같음) |

| | | |
|---|---|---|
|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br>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br>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br>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 | | |

| | |
|---|---|
| 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6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26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의 요건) ①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주민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 공고가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날(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수의 합이 혁신지구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빈집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공사중단 건축물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안전등급이 D(미흡) 또는 E(불량)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의3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2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나 법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해당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269)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으로 보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40조의11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270)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
1.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그가 소유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할 때에는 보상금 총액이 높은 자에게 우선하여 건축물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건축물 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제55조의4에 따른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역량과 국비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2월 4일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포함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조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등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인 2021년 9월 21일부터 3년까지[271]였으나, 2024년 9월 20일 법률 개정으로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됨[272].

그리고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근거 규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사용 등) 등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되었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는 2021년 12월 28일에 신설되었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

271)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8311호, 2021. 7.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이하 생략)

272)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20451호, 2024. 9. 20.) 부칙**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의2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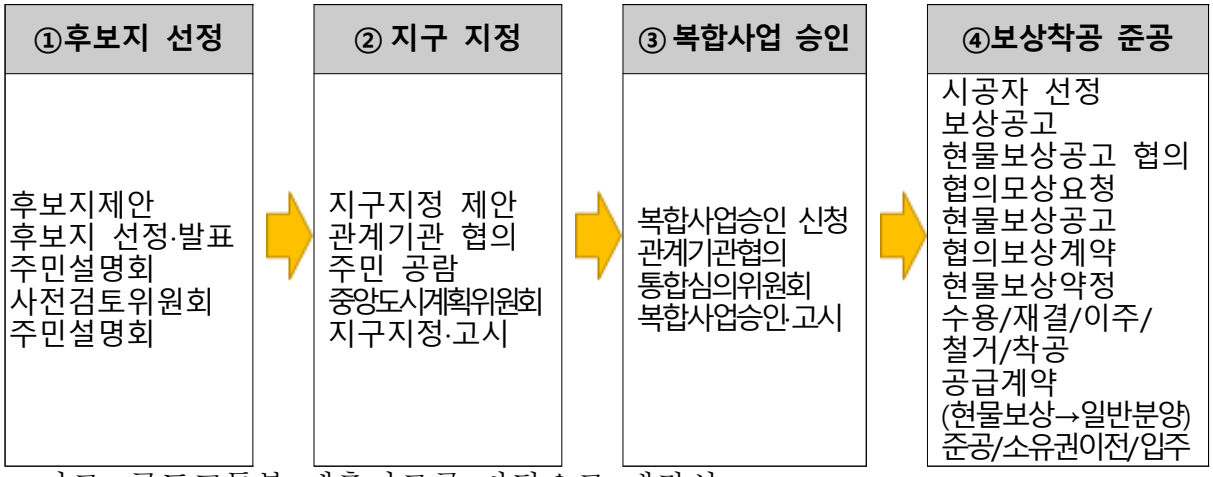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취득세 감면 현황]

| 연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
|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건수 | - | - | - |
|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건수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노후화된 도심의 역세권·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총 55곳(88,662호)를 발굴했고, 후보지 중 16개소(서울 9곳, 경기·인천 6곳, 부산 1곳, 총 23,460호)에 대해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 4곳(서울 3곳, 경기 1곳, 총 3,079호)에 대해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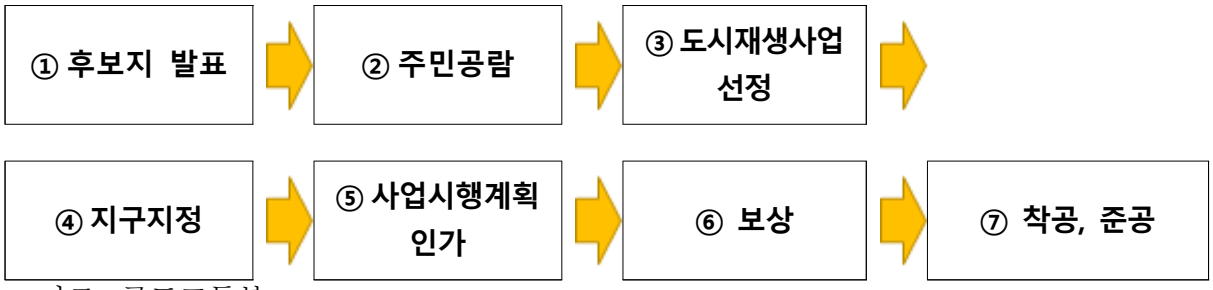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30일 기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 보상계획이 구체화된 곳은 10개소, 현물보상 대상자는 4,257명으로 계획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승인이 완료된 4곳(현물보상 대상자: 1,264명)에 대해서는 2024년에 현물보상이 실시될 예정이고,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 중에는 4곳(현물보상 대상자: 2,534명)은 2025년, 1곳(현물보상 대상자: 399명)은 2026년, 다른 1곳(현물보상 대상자: 60명)은 2027년에 현물보상이 실시될 계획임.

다음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추진 현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후보지 발표 2곳, 도시재생사업 선정 1곳, 지구지정 1곳 등 총 4곳에서 추진중임.

**[주거재생혁신지구 복합사업의 추진 절차]**




자료: 국토교통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현물계획 보상이 구체화된 곳은 2곳, 현물보상 대상자는 405명으로 계획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구지정이 완료된 1곳(현물보상 대상자: 158명)에 대해서는 2026년,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1곳(현물보상 대상자: 247명)은 2027년에 현물보상이 실시될 예정임.

개정안을 통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현물보상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을 것이라는 예상 및 신뢰를 유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당초 계획한 노후 도심 지역에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의 대상은 “취득하는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해석되므로, 법률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74조의2제3항제3호의 취득세 경감대상이 “취득하는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국민 주거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따라 현물보상

으로 취득하거나, 사업 시행 결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273]

273) 서영교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7. 23.),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10. 4.)

## 41.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서영교(Ⅶ,2201575)·윤준병(Ⅳ,2203225)·조승환·한병도(Ⅲ,2203674)의원안 제75조의3제1항)

서영교(Ⅶ), 윤준병(Ⅳ), 조승환, 한병도(Ⅲ)의원안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사업전환을 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Ⅶ), 한병도(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Ⅳ)의원안은 5년 연장하며, 조승환의원안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현 행 | 서영교(Ⅶ), 한병도(Ⅲ)의원안 |
|---|---|
|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274]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 |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 ---------- ---------- ---------- ---------- ---------- ---------- |

| | |
|---|---|
| 은 법 제8조[275]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 ----------2027년 12월 31일----------<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br>----------<br>----------<br>----------<br>----------<br>----------<br>----------<br>----------<br>----------<br>--------. |
| | **※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75의3①)**<br>**- 윤준병의원 : 5년(~2029년)**<br>**- 조승환의원 : 6년(~2030년)** |
| 1.「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276]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277]으로 정하는 지역<br>2.「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278]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 | 1. ~ 4. (현행과 같음) |

| | |
|---|---|
| 역<br>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279]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br>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280]<br>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27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75)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업전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나.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중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
다.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품·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①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전환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의 필요성
2. 새로 운영하거나 추가하려는 업종, 새로 추가하는 제품·서비스 또는 새로운 제공방식에 대한 계획
3. 사업전환의 내용과 실시기간
4. 사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조정과 능력개발
5. 사업전환에 필요한 재원과 그 조달계획
6. 사업전환으로 달성하려는 매출액 등 목표수준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76)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27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정지·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78)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279)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은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된 산업의 침체, 대규모 기업의 도산, 구조조정, 사업의 전환, 축소, 폐업 등으로 지역의 경제가 악화되고, 고용이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음.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전환은 기업 차원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새로이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을 늘리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것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에 지방세 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8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향후에도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심화하고, 국제 공급망이 변화하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는 것과 함께 기존의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경감 사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없었고, 재산세 경감 사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회씩 있었고, 재산세 경감액은 4년 동안 200만원임.

[2019년~2023년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 | - | - | - |
| | 감면 금액 | - | - | - | - | - |
| 재산세 | 감면 건수 | - | 1 | 1 | 1 | 1 |
| | 감면 금액 | - | 342 | 140 | 147 | 1,468 |

자료: 행정안전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에 따른 최근 5년간 감면 실적이 저조한 데, 그 원인은 감면을 받기 위한 3가지 요건(①위기지역[281]에 위치, ②특정 업종 영위하는 중소기업, ③업종전환 승인[282])을 모두

281) 위기지역 지정 및 운용 현황(출처: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비교적 많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임.

개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의 달성도(감면 실적)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를 재설계를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임.

| 구분 | 지역별 지정 및 운용기간 |
|---|---|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2018.4.～2024.6.)<br>전남 목포시·영암군(2018.5.～2022.12.)<br>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2018.4.～2022.12.) |
| 고용재난지역 | 과거 지정 및 운용 사례 없음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 울산 동구,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남 거제시·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 (2018.5.～2023.5.), 전북 군산(2018.4.～2023.4.) |
| 인구감소지역 |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군위군,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 강원 고성군·삼척시·양구군·양양군·영월군·정선군·철원군·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북 괴산군·단양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제천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논산시·보령시·부여군·서천군·예산군·청양군·태안군, 전북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전남 강진군·고흥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보성군·신안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함평군·해남군·화순군 경북 고령군·문경시·봉화군·상주시·성주군·안동시·영덕군·영양군·영주시·영천시·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 경남 거창군·고성군·남해군·밀양시·산청군·의령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2021.10.～) |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행정안전부 고시(인구감소지역)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82)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사업전환계획 승인 기업은 375개사로 2022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사업전환 융자는 541개사에 2,500억원을 지원했음. 사업전환을 종료한 기업은 전환 전 대비 평균 매출액 39.0%, 고용 37.2%, 수출 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자금지원 실적]**

(단위 : 개사, 억원)

| 구분 |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사업전환 승인기업 | | 107 | 100 | 226 | 114 | 310 | 375 |
| 사업전환 자금(융자) | 기업수 | 262 | 260 | 371 | 213 | 406 | 541 |
| | 지원금액 | 1,300 | 1,100 | 1,570 | 1,000 | 2,500 | 2,5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고용 안정 및 조속한 경제회복을 지원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지원대상 대부분이 지방에 소재한 지역으로 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한병도(Ⅲ)의원안에 따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0.006억원(연평균 0.0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83],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0.01억원(연평균 0.00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84].

.

283) 한병도(Ⅲ)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9. 24.)
284) 윤준병(Ⅳ)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10. 4.)

## 42.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조승환의원안 제75조의5)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동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면제·경감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 현 행 | 조승환의원안 |
|---|---|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285]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286]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br>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br>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br>----------<br>----------<br>----------.<br>1. 2030년 12월 31일----------<br>---------.<br>2. ----------<br>----------<br>----------2030년 12월 31일 |

| | |
|---|---|
| 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br>----------<br>----------<br>----------<br>----------<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8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취득세 46억 8,500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 | - | - | 78 |
| | 감면 금액 | - | - | - | - | 4,685,086 |

자료: 행정안전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의 경우에는 경기도 10건, 충청남도 9건, 전북특별자치도 9건, 경상북도 7건, 경상남도 37건 등의 감면 실적이 있었음.

---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8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② 법 제7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023년 광역지방자치단체별 감면 현황]

| 연도 | 감면건수(건) | 감면금액(천원) |
|---|---|---|
| 서울특별시 | - | - |
| 부산광역시 | 1 | 48,961 |
| 대구광역시 | - | - |
| 인천광역시 | - | - |
| 광주광역시 | - | - |
| 대전광역시 | - | - |
| 울산광역시 | - |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경기도 | 10 | 307,628 |
| 강원특별자치도 | 3 | 44,278 |
| 충청북도 | 1 | 7,640 |
| 충청남도 | 9 | 668,045 |
| 전북특별자치도 | 9 | 443,709 |
| 전라남도 | 1 | 66,844 |
| 경상북도 | 7 | 358,291 |
| 경상남도 | 37 | 2,739,690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제1항의 일몰기한은 2025년이므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025년까지 감면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유사 대상과의 형평성 및 지방세 감면의 주기적 평가를 통한 재설계 필요성을 고려 일몰기한은 3년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그리고 인구

감소지역 창업·사업장신설에 대한 감면은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2025년 말에 감면 제도의 효과성 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43. 안전조치 등을 이행한 빈집 및 철거명령을 이행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신성범의원안 제75조의3제1항)

개정안은 안전조치 등을 이행한 빈집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2027년까지 경감하고, 철거명령을 이행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6).

| 현 행 | 신성범의원안 |
|---|---|
| <신 설> | 제75조의6(빈집 정비에 대한 감면)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빈집으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빈집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 |

| | |
|---|---|
| | 항에 따른 개축·수리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빈집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br>1. 해당 빈집이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일 것<br>2. 해당 빈집을 수익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br>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으로서 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빈집에 대하여 해당 빈집의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철거 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 |

| | |
|---|---|
| | 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빈집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br>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br>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접 사용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권을 사용(지상권 설정 해제 요구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br>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접 사용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함으로써 직접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br>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촌빈집 실태조사 결과 농촌에 약 6만 5천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농촌 빈집 실태조사(2021년~2023년)]**

(단위: 개)

| 시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부산 | 30 | 21 | 32 |
| 대구 | 530 | 528 | 1,108 |
| 인천 | 587 | 470 | 522 |
| 광주 | - | - | - |
| 대전 | - | 17 | - |
| 울산 | 821 | 743 | 528 |
| 세종 | 371 | 647 | 653 |
| 경기 | 2,448 | 2,481 | 2,410 |
| 강원 | 3,380 | 3,886 | 4,363 |
| 충북 | 2,030 | 3,466 | 3,135 |
| 충남 | 3,986 | 3,901 | 4,771 |
| 전북 | 9,434 | 9,904 | 10,092 |
| 전남 | 17,648 | 16,310 | 15,138 |
| 경북 | 13,774 | 13,886 | 12,043 |
| 경남 | 9,416 | 9,106 | 9,589 |
| 제주 | 748 | 658 | 635 |
| **합계** | 65,203 | 66,024 | 65,01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빈집실태조사 결과 취합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287]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1월 2일에 신설된 「농어촌정비법」 제133조제1항[288]은 같은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

287)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리는 제외한다)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 명령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88) **「농어촌정비법」 제13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치 명령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92건 중 빈집 소유자가 조치명령에 따라 철거한 건수는 19건으로 조치명령 이행률은 20.7%로 조사되었음[289].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빈집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빈집의 안전관리 및 빈집의 철거명령 이행에 대한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빈집 철거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감면 신설·확대는 기존 지원 정책의 효과성,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3년간 예상되는 철거비용(1,144억원)은, 재산세 부담 예상액(38억원)의 약 30배 수준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빈집 자진철거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경감보다 철거비용에 대한 지원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개축·수리 등 조치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경우 빈집의 재산세 50%를 감면할 경우 재산세수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빈집 소유자가 안전조치,

28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정부제출 의안번호: 2121023)

개조·수리 등 조치 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재산세 과세 규모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290].

29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9. 30.)

## 44. 지방 이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Ⅴ,2201455), 윤준병(Ⅳ,2203225), 임미애, 한병도(Ⅲ,2203674)의원안 제79조제1항·제2항]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291]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면제·경감 및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부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서영교(Ⅴ), 임미애, 한병도(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있으며, 윤준병(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79조제1항·제2항).

| 현 행 | 서영교(Ⅴ), 임미애, 한병도(Ⅲ)의원안 |
|---|---|
|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292]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 ---------- ---------- ---------- ---------- |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부동산을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거나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를 경감받음.

| | |
|---|---|
|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br>----------<br>----------<br>----------<br>----------<br>------- 2027년 12월 31일-----<br>----------<br>----------<br>----------<br>----------<br>----------. -<br>----------<br>----------<br>----------.<br>**※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79①)**<br>**- 윤준병의원 : 5년(~2029년)** |
| 1.·2. (생 략)[293]<br>②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br>③ (생 략) | 1.·2.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 2027년 12월 31일----------<br>-----.<br>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서영교(Ⅴ), 윤준병(Ⅳ), 임미애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한병도(Ⅲ)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9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

과밀억제권역[294]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구체적인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등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등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가 포함됨.

개정안을 통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면, 향후 3년 동안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에 본점 및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인센티브로 기능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의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및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 감면 금액은 연평균 92억원임.

---

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9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9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건수·금액(2019년~2023년)]

(단위: 건, 천원)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
| 취득세 면제건수 | 44 | 62 | 82 | 72 | 31 | 291 |
| 취득세 면제금액 | 1,172,635 | 2,020,536 | 2,237,893 | 2,726,168 | 1,085,798 | 9,243,030 |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건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34건으로 비중이 80%로 높음. 경기도 중에서는 김포시(47건) 파주시(45건), 화성시(39건), 남양주시(37건), 용인시(32건) 등이 많은 감면실적을 보이고 있음.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면제 건수(2019년~2023년)]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비율 |
|---|---|---|---|---|---|---|---|
| 합계 | 44 | 62 | 82 | 72 | 31 | 291 | 100% |
| 서울특별시 | - | - | - | - | - | 0 | 0%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0 | 0% |
| 대구광역시 | - | 1 | - | - | - | 1 | 0.3% |
| 인천광역시 | - | - | 1 | 1 | - | 2 | 0.7%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0 | 0%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0 | 0%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0 | 0% |
| 세종특별자치시 | 6 | 6 | 7 | 8 | - | 27 | 9.3% |
| 경기도 | 36 | 50 | 65 | 54 | 29 | 234 | 80.4%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2 | 2 | - | 4 | 1.4% |

| | | | | | | | |
|---|---|---|---|---|---|---|---|
| 충청북도 | 1 | 4 | 4 | 1 | 1 | 11 | 3.8% |
| 충청남도 | - | - | 3 | 5 | 1 | 9 | 3.1%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1 | - | 1 | 0.3% |
| 전라남도 | 1 | - | - | - | - | 1 | 0.3% |
| 경상북도 | - | - | | 1 | - | 1 | 0.3% |
| 경상남도 | - | - | | 1 | - | 1 | 0.3% |
| 제주특별자치도 | - | 1 | - | - | - | 1 | 0.3% |

자료: 행정안전부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취득세 면제 건수(2019년~2023년)]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
| 경기도 합계 | 36 | 50 | 65 | 54 | 29 | 234 |
| 수원시 | - | - | - | - | - | - |
| 성남시 | - | - | - | - | 2 | 2 |
| 의정부시 | - | - | - | - | - | - |
| 안양시 | - | - | - | - | - | - |
| 부천시 | - | - | - | - | - | - |
| 광명시 | - | - | - | - | - | - |
| 평택시 | - | 1 | - | - | - | 1 |
| 동두천시 | - | - | - | 1 | - | 1 |
| 안산시 | 1 | - | 2 | - | 2 | 5 |
| 고양시 | - | - | - | - | - | - |
| 과천시 | - | - | - | - | - | - |
| 구리시 | - | - | - | - | - | - |
| 남양주시 | 6 | 5 | 11 | 13 | 2 | 37 |
| 오산시 | - | - | 1 | - | - | 1 |
| 시흥시 | - | - | - | 1 | - | 1 |
| 군포시 | - | - | - | - | - | - |
| 의왕시 | - | - | - | - | - | - |
| 하남시 | - | - | - | - | - | - |
| 용인시 | 1 | 20 | 3 | 5 | 3 | 32 |
| 파주시 | 6 | 5 | 19 | 10 | 5 | 45 |
| 이천시 | - | - | - | - | - | - |
| 안성시 | - | - | - | - | - | - |

| | | | | | | |
|---|---|---|---|---|---|---|
| 김포시 | 7 | 11 | 15 | 12 | 2 | 47 |
| 화성시 | 12 | 3 | 7 | 9 | 8 | 39 |
| 광주시 | 2 | 3 | 2 | 1 | 1 | 9 |
| 양주시 | - | 2 | 4 | 2 | 2 | 10 |
| 포천시 | 1 | - | 1 | - | - | 2 |
| 여주시 | - | - | - | - | 2 | 2 |
| 연천군 | - | - | - | - | - | - |
| 가평군 | - | - | - | - | - | - |
| 양평군 | - | - | - | - | - | - |

자료: 행정안전부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Ⅴ)의원안, 임미애의원안, 한병도(Ⅲ)의원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 166.4억원(연평균 5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95],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본점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22.2억원(연평균 6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296].

295) 서영교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임미애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4.), 한병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4.)
296) 서영교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45. 지방 이전 공장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서영교(Ⅴ,2201455), 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임미애, 한병도(Ⅲ,2203674)의원안 제80조제1항]

개정안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면제·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서영교(Ⅴ), 임미애, 한병도(Ⅲ)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윤준병(Ⅳ)의원안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함(안 제80조제1항).

| 현 행 | 서영교(Ⅴ), 임미애, 한병도(Ⅲ)의원안 |
|---|---|
|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br>----------<br>----------<br>----------<br>----------<br>----------<br>----------<br>----------2027년 12월 31일<br>----------<br>----------<br>----------<br>----------<br>----------.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br>----------<br>----------.<br>**※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80①)**<br>**- 윤준병의원 : 5년(~2029년)** |
| 1.·2. (생 략)[297] | 1.·2.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서영교(Ⅴ), 윤준병(Ⅳ), 임미애의원안]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한병도(Ⅲ)의원안]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안에서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 부분임[298].

개정안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이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

29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생 략)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9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고 인구의 분산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현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연평균 22억 7,900만원, 재산세는 연평균 7억 6,800만원이 감면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68 | 66 | 63 | 44 | 27 | 54 |
| | 감면 금액 | 2,889,068 | 2,027,518 | 2,538,973 | 2,162,318 | 1,777,108 | 2,278,997 |
| 재산세 | 감면 건수 | 686 | 716 | 744 | 744 | 677 | 713 |
| | 감면 금액 | 787,567 | 817,677 | 806,859 | 779,893 | 650,054 | 768,410 |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건수를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5건, 경기도 244건, 충청북도 6건, 충청남도 14건의 감면 실적이 있었음.

| 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합계 | 비율 |
|---|---|---|---|---|---|---|---|
| 합계 | 68 | 66 | 63 | 44 | 27 | 268 | 100% |
| 서울특별시 | - | - | - | - | - | - | 0%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0% |
| 대구광역시 | - | - | - | - | - | - | 0% |
| 인천광역시 | 2 | 2 | 1 | - | - | 5 | 1.9% |
| 광주광역시 | - | - | - | - | - | - | 0% |
| 대전광역시 | - | - | - | - | - | - | 0%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0%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0% |
| 경기도 | 61 | 57 | 61 | 41 | 24 | 244 | 91.0% |
| 강원특별자치도 | - | - | - | - | - | - | 0% |
| 충청북도 | 1 | 3 | 1 | - | 1 | 6 | 2.2% |
| 충청남도 | 4 | 4 | 1 | 3 | 2 | 14 | 5.2% |
| 전북특별자치도 | - | - | - | - | - | - | 0% |
| 전라남도 | - | - | - | - | - | - | 0% |
| 경상북도 | - | - | - | - | - | - | 0% |
| 경상남도 | - | - | - | - | - | - | 0%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0%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취득세 면제 건수(2019년~2023년)]**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력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사항으로 정부안과 병

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서영교(Ⅴ)의원안, 임미애의원안 및 한병도(Ⅲ)의원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간 총 91.3억원(연평균 3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299], 윤준병(Ⅳ)의원안에 따라 법인이 대도시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152억원(연평균 30.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00].

299) 서영교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7. 23.), 임미애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4.), 한병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4.)
300) 윤준병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46.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연장[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제83조제1항·제2항]

### (1)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시정정비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1항).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 |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br>----------<br>----------<br>----------2029년------<br>----------<br>----------<br>----------<br>----------<br>----------<br>----------<br>---------- |

| | |
|---|---|
| 터 적용한다. | ----------. |
|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br>----------<br>----------<br>----------<br>----------<br>----------<br>---------2029년----------<br>----------<br>----------<br>----------<br>----------<br>----------<br>---.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짐[301].

3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시장정비사업"이란 제4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3조 및 제65조를 포함

시장정비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시장정비사업조합, 토지 등 소유자, 시장정비사업법인 등이 포함됨[302].

개정안을 통해 시장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59억 3천만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2억 2천만원임.

---

한다)을 **준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3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이나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이라 한다)

4. 시장·군수·구청장(제41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사업시행자 등)** ① 시장정비사업은 **제33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13 | - | 222 | 9 | 6 | 50 |
| | 감면 금액 | 1,534,695 | - | 3,407,558 | 8,281,566 | 16,448,788 | 5,934,521 |
| 재산세 | 감면 건수 | 202 | 203 | 173 | 51 | 88 | 143 |
| | 감면 금액 | 176,111 | 211,628 | 269,341 | 280,568 | 175,343 | 222,598 |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시장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5항제1호[303]에 따라 대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50%인 등 감면 방식 및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제도의 감면 방식 및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0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영세상인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능을 고려하는 경우 지방세제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만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취득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시행자는 대부분 조합원 주도로 추진되어 재개발 사업과 유사(취득세 50%)하며, 분양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점 등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83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8.2억원(연평균 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04].

### (2) 입점상인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개정안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재산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

304)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30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305]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③ (생 략) |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br>② ----------<br>----------<br>----------<br>----------<br>----------<br>----------<br>---------2029년----------<br>----------<br>----------<br>----------<br>----------<br>----------.<br>③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시장정비사업획에 입점 상인에 대한 점포의 우선 분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06] 입점 상인은 점포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음. 개정안을 통해 입점 상인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입점 상인이 안정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영업을

3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시장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역시 시장정비사업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개정안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이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2억 4,000만원이고,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2,800만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 | 11 | 117 | 2 | 26 |
| | 감면 금액 | - | - | 65,547 | 482,883 | 673,370 | 244,360 |
| 재산세 | 감면 건수 | 103 | 35 | 346 | 431 | 627 | 308 |
| | 감면 금액 | 9,221 | 1,895 | 29,431 | 35,212 | 67,163 | 28,584 |

자료: 행정안전부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영세상인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 기능을 고려하는 경우 지방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입점상인은 소상공인 지원의 취지에서 입점 이후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일정기간 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 제83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8.2억원(연평균 5.6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07].

307)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47. 수도권 외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조경태의원안 제83조의2 신설)

개정안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와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 현 행 | 조경태의원안 |
|---|---|
| <신 설> | 제83조의2(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비수도권지역등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br>② 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br>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주택을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 부 칙 |
|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br>② 제8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수도권지역등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308]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 81개를 지정함[309].

정부가 2023년 12월 19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로 생

30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9)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차관보 > 지방소멸대응 > 인구감소지역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를 포함하고 있음.

정부가 2024년 4월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및 방문인구 등 확대를 위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함. 세컨드 홈 활성화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임[310].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의 구입 및 생활인구의 증가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구입 수요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임[311].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312]를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

310) 최진섭,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2024, 한국지방세연구원

311) 유사한 취지에서 최진섭(2024)은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농촌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이 촉진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사업으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단지 사업은 재원문제로 인해 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므로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에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질 좋은 농촌 전원주택단지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최진섭, "인구감소지역 세제·재정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2024, 한국지방세연구원

31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1.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

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최대 50%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의 경우 비수도권 등에 주택 취득시 주택 수, 주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100%), 재산세(50%)를 감면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입 감소가 크며, 추가적인 감면 신설·확대는 기존 감면의 효과성,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313]

---

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313) 조경태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9. 20.)

## 48. 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정 시 과세표준 특례(김은혜의원안 제84조의2 신설)

개정안은 「주택법」 제2조제25호[314]의 리모델링[315]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리모델링주택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 현 행 | 김은혜의원안 |
|---|---|
| <신 설> | 제84조의2(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리모델링주택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리모델링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현행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316]에 따르면, 재건축사업[317] 등으로 철거·멸실[318]된 주택의 경우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멸실일부터 6개월까지

---

31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15) 참고로, 「건축법」상 리모델링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3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철거·멸실되기 전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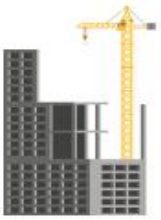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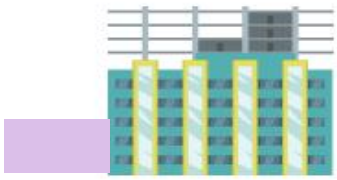
3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이하 생략)

318) "철거"의 사전적 정의는 "건물, 시설 따위를 무너뜨려 없애거나 걷어치우는 것"을 의미하고, "멸실"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이나 가옥 따위가 재난에 의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파손됨"을 의미함. 현행 법령에서 철거의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멸실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319].

그런데,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이 철거·멸실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어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철거·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와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320].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비교]**

| | | |
|---|---|---|
| 개념 |  <br>**재건축**<br>노후된 아파트를 허물고 완전히 다시 짓는 방식 |  <br>**리모델링**<br>노후된 아파트의 기존 구조(뼈대)를 활용하여 고쳐 짓는 방식 |
| 재산세 측면 | 건물이 철거된 이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 주택의 철거 없이 공사가 진행되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

※ 자료: 매거진H, 리모델링 세금 상식②-조합편 및 테라펀딩 공식블로그 내용을 통합해 수정 (https://www.magazineh.com/knowledge/12578/, https://m.blog.naver.com/terafunding/221728024938)

---

**「건축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319)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320)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공사 기간 내 소유주(거주민)의 이주가 불가피하며, 재산권 행사가 어려우므로 재건축과 같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것임. 신민규,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현안 정리Ⅱ", 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 포커스

이에 개정안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리모델링주택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토지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재산세는 재산 보유 그 자체를 담세력으로 보아 매년 과세하는 조세로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철거·멸실되지 않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재산세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대법원은 재산세의 경우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라고 판시한 바 있음[321].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①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등)을 주택에서 토지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세 특례(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과세표준 공제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② 철거·멸실되지 않은 리모델링 중인 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321)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재산세의 성격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③ 빈집이나 대수선 등으로 미거주 중인 주택도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④ 재산세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이 토지가 주택보다 높고, 토지는 1세대 1주택자 혜택도 받을 수 없어 주택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의 발생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하는 재산세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610억원(연평균 9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22].

322)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31.)

## 49.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윤준병(Ⅳ,2203225)의원안 제85조의2제1항]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경감,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현 행 | 윤준병(Ⅳ)의원안 |
|---|---|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br>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br>----------<br>----------<br>----------<br>----------2029년 12월 31일----------.<br><br>1. ~ 4. (현행과 같음) |

| | |
|---|---|
| (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br>2. 삭제<br>3.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br>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부 칙** | |

| |
|---|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비율은 46%,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170.4%, 기타공사의 부채비율은 62.5%로 높은 수준이고,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방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경제적 측면을 보다 고려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음.

**[지방공사·공단 부채비율]**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 소계 | 89.6% | 94.9% | 93.3% | 101.3% | 108.4% |
| 도시철도공사 | 28.3% | 40.7% | 40.9% | 42.0% | 46.0% |
| 도시개발공사 | 159.4% | 154.9% | 151.1% | 164.1% | 170.4% |
| 기타공사 | 52.9% | 41.6% | 47.0% | 52.4% | 62.5% |
| 지방공단 | 55.3% | 50.8% | 55.9% | 59.9% | 68.6% |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323)]

개정안을 통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지방공사가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875억원임.

323) 출처 : https://www.cleaneye.go.kr/user/fanRatioStat.do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취득세 | 감면 건수 | - | 4,342 | 4,677 | 5,397 | 4,934 | 3,870 |
| | 감면 금액 | - | 94,959,709 | 134,673,743 | 102,356,510 | 105,727,238 | 87,543,440 |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은 연평균 28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재산세 | 감면 건수 | - | 1,949 | 2,336 | 2,229 | 2,223 | 1,747 |
| | 감면 금액 | - | 3,251,976 | 3,288,526 | 3,545,542 | 4,006,387 | 2,818,486 |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액은 연평균 180억원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 구분 |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잠정) | 평균 |
|---|---|---|---|---|---|---|---|
| 재산세 | 감면 건수 | 961 | 387 | 438 | 430 | 457 | 535 |
| | 감면 금액 | 19,957,882 | 9,614,976 | 40,810,298 | 10,716,450 | 9,093,785 | 18,038,678 |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1항의 일몰기한은 2025년으로 2025년까지 지방세감면 특례를 운영한 뒤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및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공사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유사 감면 대상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3항, 같은 법 제76조제2항[324]과의 형평성, 재산세 저율과세(0.2%) 적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추후 정부안과 병합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경우 지방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265억원(연평균 1,05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325].

---

32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5)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10. 4.)

## 50. 개인지방소득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요건인 자산 상실 비율을 소상공인은 10%로 완화(이수진의원안 제96조제1항)

개정안은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자산 상실 비율인 20% 이상을 소상공인의 경우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 현 행 | 이수진의원안 |
|---|---|
|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 |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br>----------<br>----------<br>----------<br>----------<br>----------100분의 20 이상(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br>----------<br>----------<br>----------<br>----------<br>----------<br>----------<br>----------<br>----------<br>----------<br>----------<br>----------<br>----------. ---------- |

| | |
|---|---|
| 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br>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br>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br>② ~ ⑧ (생 략) | ----------.<br>1. · 2. (현행과 같음)<br><br><br><br><br><br><br>② ~ ⑧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위한 감면 및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6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우 10%에서 20% 사이의 재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손실 부분만큼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비율에 대한 예외규정을 정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규정하는 것이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7조의2에서 「소득

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개인소득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지만 자산상실비율 구간별 재해로 인해 자산이 상실된 소상공인 현황, 해당 소상공인의 자산총액 및 상실된 자산가액 등에 대한 자료와 함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재해의 유형·빈도·강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326].

326) 이수진의원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9. 13.)

## 51.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특례에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추가(임광현의원안 제97조의4제3항)

개정안은 지방소득세 산출 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교육비 항목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 현 행 | 임광현의원안 |
|---|---|
|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br>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br>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br>----------<br>----------<br>----------<br>----------<br>----------<br>----------<br>----------.<br>----------<br>----------<br>----.<br>1. ----------<br>---------- |

| | |
|---|---|
|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제2호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br>----------.<br>----------<br>----------<br>----------<br>----------<br>----------<br>----------<br>----------. |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 가.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 |
|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br>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br>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 다. ~ 마.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

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 | |
|---|---|
|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br>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br>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br>나. ~ 라. (생 략)<br>3. (생 략)<br>④ ~ ⑪ (생 략) | 2. ----------<br>----------<br>----<br>가. ----------라목까지의----------<br>나. ~ 라. (현행과 같음)<br>3. (현행과 같음)<br>④ ~ ⑪ (현행과 같음)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대안교육기관 교육비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제3항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특정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327]에

3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지급한 교육비를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시키려는 것으로, 현행법[328]제97조의4제3항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각 목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3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② (생 략)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거나 제2호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개정안과 현행법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비교]

| 현행법 | | 개정안 | |
|---|---|---|---|
| 목 | 교육비 지출 대상 | 목 | 교육비 지출 대상 |
| 가 | - 유치원<br>-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br>-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br>(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br>- 대학 등 | 가 | (현행과 같음) |
| | <신 설> | **나** | **- 대안교육기관** |
| 나 | - 평생교육시설<br>- 전공대학<br>- 원격대학 중 학위취득과정<br>- 독학학위 학위취득과정 | 다 | (현행과 같음) |
| 다 | - 국외교육기관 | 라 | (현행과 같음) |
| 라 | - 어린이집<br>- 학원·체육시설<br>(초등학교 취학 전) | 마 | (현행과 같음) |

대안교육시설은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민간에서 별도의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12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해당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현재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를 지출한 거주자의 세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대안교육기관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적성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에도「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대안학교[329] 및 특성화학교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한다면 감면 대상 간의 형평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330]

다만, 임광현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4109)[331]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 별도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도입할 실익이 적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현행법 제167조의2[332]에서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

329) 인가된 대안학교에 한하는 것으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330) 다만, 대안학교 및 특성화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이고, 대안교육시설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331)「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의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를 소득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내용인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33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과 이 법 제180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3장(지방소득세 특례)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임광현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인바 개정안 심사 시 해당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공제·감면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 국세 개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의원 대표발의, 2024. 9. 20. 의안번호: 2204109)의 개정 시 개인지방소득세도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임.

---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③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 52. 수도권 밖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신설(임미애의원안 제124조의2 신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지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설지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4조의2 신설).

| 현 행 | 임미애의원안 |
|---|---|
| <신 설> | 제124조의2(수도권 밖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밖에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지사”라 한다)를 신설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지사의 부지를 보유하 |

| | |
|---|---|
| | 고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지사신설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신설된 지사(이하 이 조에서 “신설지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설지사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사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광역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광역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br>1.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 |

| | |
|---|---|
| | 닐 것<br>2. 신설지사의 근무인원 수가 본사의 근무인원 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br>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br>1. 지사를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2.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 동안 신설지사의 근무인원 수가 본사의 근무인원 수에 미달하는 경우<br>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 본다. |

| | |
|---|---|
|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br>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과 신설지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br>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기간 및 근무인원 수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br>제2조(수도권 밖에서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법인소득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수도권 밖에 지점 등을 신설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수도권 밖 지역의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는 2013년에 재정보전 대책으로 범정부 합의를 거쳐 독립세로 전환, 공제·감면을 정비한 사항임을 고려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법인의 법인의 수도권 밖 지사 설립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지방세 수의 감소가 예상되나 자료의 부재로 객관적인 추계를 할 수 없음[333].

333)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회답일 : 2024. 9. 24.)

## 53. 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 특례 마련

(백혜련의원안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 신설)

### (1) 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 특례(안 제167조의5)

개정안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징수 곤란 체납액의 분납 허가 근거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2)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9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9조의14제2항제2호에 따라 분납 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 행 | 백혜련의원안 |
|---|---|
| <신 설> | 제167조의5(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

| | |
|---|---|
| |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br>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br>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br>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를 준용한다.<br>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 |
|---|---|
| |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부 칙<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안의 특례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항[334]에 따른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335]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임. 채무조정 제도의 절차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감면, 이자율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채무조정안을 만들면,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336]하는 경우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하게 됨. 누적 3개월 이상 미납을 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중단됨[337].

---

33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335) 신용회복위원회는 2002. 10. 1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융회사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자율협의체로 출범했고, 2003년 11월 1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했으며, 2016년 3월 22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2016년 9월 23일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함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소개> 미션·비전)

336)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절차]




자료: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337)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개인채무조정 > 제도개요 >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절차 항목
개인채무조정제도란? https://ccrs.or.kr/debt/system/description/info.do
개인채무조정 절차 https://ccrs.or.kr/debt/system/procedure/info.do

개인 채무조정 절차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회사 외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채권에 대해 조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채무조정안 변제계획에 금융회사의 채권 외에 세금 체납액 등이 고려되지 않을 수 있음. 채무조정 이후에도 채무자의 세금 체납이 지속되어, 세금 강제징수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 책임재산의 감소로 개인채무조정안에 따른 변제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음.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2)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이 신청일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 등에는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의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의 체납액 및 가산세 납부의 부담을 덜고, 금융회사와 사이에 합의한 채무조정안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체납액을 납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2)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체납액 징수 특례를 부여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대상이 된 금융회사의 채권을 국세 또는 지방세 채권보다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가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을 금융회사 미수 채권과 함께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2)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과정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자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징수특례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함에 따라, 국세 개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4. 8. 2.)의 개정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에 따라 조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 및 해당 거주자가 적용받은 조세특례 현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확정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징수곤란 체납액 및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현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338]

338)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8. 26.)

### (2) 채무조정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특례 (안 제176조의6)

개정안은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현 행 | 백혜련의원안 |
|---|---|
| <신 설> | 제167조의6(채무조정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은 제외하며, 이하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br>1.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

| | |
|---|---|
| |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br>2.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br>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br>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br>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허가<br>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br>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

| | | |
|---|---|---|
| | |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br>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없다.<br>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신청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br>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br>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

| | |
|---|---|
| |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br>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br>1. 신청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br>2. 신청일 현재 강제징수가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br>3. 신청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br>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br>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부 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변제계획안에 따라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에 더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음.

개정안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납부의 부담을 완화하고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용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임.

한편, 개정안 제167조의6에 따라 채무조정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 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채무조정 변제계획안에 포함된 금융회사의 채권을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지방세 채권에 우선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개정안을 통해 특례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외의 지방세 체납액 납부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절차에서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현재 징수특례를 적용 중인 영세개인사업자(「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339])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한 경우

33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

개인지방소득세에 한정하여 징수특례를 적용 중인데,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만 모든 세목에 대해 징수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고, 현재도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등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 징수유예 결정기간(최대 1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분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와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에 따른 지방세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에 따라 조세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 및 해당 거주자가 적용받은 조세특례 현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확정자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징수곤란 체납액 및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현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할납부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었음.[340]

| 문 의 처 |
| --- |
| 02)6788-5338 |

---

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 ④ (생 략)

340)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회답일: 2024. 8. 26.)